

월간

재정포럼

2015. July_Vol.229

7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행동경제학과 경제정책/ 안동현

현안분석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 이은경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 최승문

정책토론포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벨기에, 특정한 법률적 조직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제도 발표 외

CONTENTS

권두칼럼

행동경제학과 경제정책 · 안동현 02

현안분석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 · 이은경 08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

· 최승문 21

정책토론포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38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벨기에, 특정한 법률적 조직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제도

발표 외 51

정책흐름

2015년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회 확정 82

공공기관 2분기까지 9,500여 명 채용 8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및 경영애로 최대한 지원 86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93

국세청, 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 강력 추진 95

이슈&포커스

“법인세 지금 올리면 세수만 감소, 기업은 투자 안 한다” 외 102



행동경제학과 경제정책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고전경제학은 경제주체인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합리성(rationality)의 정의는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에서조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교과서에는 개인의 합리성을 ‘측정가능한 목적함수(measurable objective)를 극대화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문제는 ‘측정가능한 목적함수’가 만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이나에 있다. 소비자 이론의 예에서 효용함수를 목적함수로 설정할 경우 단조성, 완비성, 이행성 등의 공리(axiom)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공리가 위배되는 수많은 예가 존재한다. 더불어 Hicks와 Allen이 1934년 보여주었던 복수의 효용함수가 동일한 선호체계(preference ordering)를 나타내기 때문에 효용함수의 존재는 합리성의 필요조건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1938년 Samuelson의 시현된 선호이론(revealed preference theory)을 통해 수요함수로부터 역으로 선호체계를 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호체계에 대한 조건마저 더욱 완화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미시경제학을 위주로 개인의 합리성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에 대해 통일된 정의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합리성’의 정의

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합리성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일관성(consistency)’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동학파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조차 만족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오늘의 100만원과 1년 후 105만원 중 전자를 선호한다고 하자. 동일한 사람에게 10년 후 100만원과 11년 후 105만원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고 질문하면 상당수의 응답자가 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만약 시간상의 선호도가 불변이라면 앞의 예에서 현재의 100만원을 선택했다면 뒤의 예에서도 10년 후 100만원을 선택했어야 한다. 즉 5만원을 1년의 기간 동안 할인하는 할인율이 현재든 미래든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선호의 불변은 고전적 동태이론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가정으로 이를

지수할인(exponential discounting) 모형이라고 한다. 즉, 내일의 현금을 오늘의 현금으로 환산하는 할인율과 10년 더하기 하루 후의 현금을 10년 후 현금가치로 환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은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 보듯 실험을 해보니 실제로는 이런 기본 가정이 위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오늘의 나와 현재 내가 생각하는 '10년 후의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인가.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앞의 사례로 돌아가면 내가 그리는 10년 후의 나는 '오늘의 100만원보다는 내일의 105만원을 더 좋아하는 나'다. 즉, 오늘 시점에서 나는 10년 후에는 시간선호 현상이 변한다고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 막상 선택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오늘과 같이 '오늘의 100만원을 내일의 105만원보다 더 선호'하게 된다. 즉 오늘의 나와 10년 후 오늘의 나는 동일한 선택을 한다. 시간선호에 일관성이 있으며 불변이다.

종합하면 오늘 기대하는 10년 후의 나는 사후적으로 현재의 나와 동일한 선택을 하지만 오늘 시점에서는 사전적으로 10년 후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오늘'이란 현재 시점에 대해 사람들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현재편향성 (present-biased)'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선호현상을 반영한 모형을 '쌍곡할인(hyperbolic discounting) 모형'이라고 부른다.

인지 왜곡이 주는 경제학적 의미

이러한 인지의 왜곡은 경제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준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금연을 아무리 권고해도 별 효력이 없다. 흡연으로 인해 당장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고 문제는 먼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이다. 30~40년 후의 '나'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폐암에 걸리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나'이다. 그러나 막상 30~40년이 지나 그날이 오늘이 되어 폐암에 걸리면 후회하게 된다.

대부분의 정부가 연금을 강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만약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프랑코 모딜리아니(Franco Modigliani)의 '일생 사이클 이론(life cycle theory)'에 따라 일생 동안의 소득 흐름을 추정해 소비 흐름을 가져가야 한다. 소득이 높은 중장년기에 자발적 저축을 통해 소득이 없거나 낮은 노년기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저축률의 연령별 패턴을 보면 일생 사이클 이론과 맞지 않는다. 중장년층 상당수가 저축을 하지 않고 과소비를 하게 되어 노년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가 저축

.....
**오늘 기대하는
 10년 후의
 나는 사후적으로
 현재의 나와 동일한
 선택을 하지만
 오늘 시점에서는
 사전적으로 10년 후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부과식 연금제도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타인 사이에 이해상충
문제를 발생시킨다.**

.....

을 강제하여 노인 빈곤율을 낮추자는 것이 연금정책이다. 즉 연금정책은 경제 주체의 현재편향성을 조정해서 빈곤율을 낮추고 이에 따른 재정지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본래의 연금정책은 자기가 저축한 돈을 노년에 자신이 받아가는 제도로 적립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분계리 문제와 포트폴리오 선택, 그리고 부의 재분배를 고려하다 보니 일정 부분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인 부과식을 혼용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도 부분적립식이다. 부과식은 현재 내가 낸 보험료로 현재 노인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원래 현재편향성을 보정하기 위한 도입된 연금제도는 경우에 따라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미래에 내가 받을 연금은 자식세대 타인의 보험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연금지급률을 높일 인센티브가 있다. 만약 인구구조나 경제성장률이 불변이라면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균형을 이루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종합하면 원래의 적립식 연금제도가 현재 내가 예측하는 사전적 미래의 나와 사후의 내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면 부과식 연금제도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타인(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 있는) 사이에 이해상충 문제를 발생시킨다.

올해 초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났다.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와 여당이 부랴부랴 소급 환급으로 선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논리에 따르면 과거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나오는 착시 현상이라고 한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러한 대란이 일어난 이유로 두 가지 행동경제학적 문제를 들 수 있다.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연말정산 대란

첫째, 앞서 언급한 현재편향성으로 연말 전 세금을 덜 내는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는 연말의 '나'와 막상 연말이 됐을 때 세금정산을 하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 즉 현재 세금으로 인한 현금지출을 기피하듯 연말정산 때가 되면 동일한 정도로 현금지출을 기피한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연말정산 시 세금을 낼 때의 나는 현금지출을 덜 기피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조금씩 덜 내는 이득보다 한꺼번에 많이 내는 손실에 더 심리적 타격을 입는다. 조금씩 나눠 얻는 이득은 '심리적 회계(mental accounting)'라는 심리현상에 따라 분산돼 인식되는 반면 한꺼번에 입는 손실은 '손실회피

(loss aversion)’ 현상까지 겹쳐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히 인간의 비합리성이라고 치부하니 문제가 꼬인다. 행동학파의 주장처럼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 현상 그 자체다.

납세자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이런 비합리성을 고려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합리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KIP**

.....
**납세자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이런 비합리성을 고려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합리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hange	Mid	End
	0.007	6.1293	
	0.005	1.2386	
		0.4823	
		8.8393	
		2.6432	
		1.2827	
	-0.0029	618.813	
	-0.0004	7.9738	
	-1.3000	229.5	
	0.0082		



| 현안분석 |

-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
이은경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
최승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

I. 서론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에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분야별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야별 정부지출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육, 보건, 국방 등 분야별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재분배 효과가 큰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가 높을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부가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선호가 변동할 수 있다. 국가 경제가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경제성장 관련 분야에 재원을 많이 투입하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 이외 다른 항목들, 예를 들면 환경이나 문화 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개인의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이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문에서는 분야별 정부지출 중에서도 특히 재분배 효과가 강한 재정지출(교육, 보건, 복지지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사용한 자료는 ISSP(2006)이고 관심 변수는 8개 분야의 재정지출(환경, 보건, 치안, 교육, 국방, 연금, 실업수당, 문화예술)에 대해 매우 증가, 좀 더 증가, 유지, 좀 더 감소, 매우 감소를 원하는지 응답한 변수이다. 각 항목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매우 증가와 좀 더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1, 유지/좀 더 감소/매우 감소를 응답한 경우 0을 부여하여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였다. 설명 변수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여부, 가구소득, 종교 등을 포함하였다. 예상하건대 고령자는 보건이나 연금지출에 대한 선호가 높고, 실업자는 실업·고용지출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자녀가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eklee@kipf.re.kr)

있는 자는 교육지출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분야별 정부지출의 현황을 OECD 데이터와 재정통계를 사용하여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제Ⅳ장은 위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하였고 제Ⅴ장은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Ⅱ. 현황

[그림 1]은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30%로 OECD 평균인 45%보다 15%p나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정부지출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하였다.

[그림 2]는 2011년 기준, COFOG function에 의한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economic affairs), 교육, 보건 분야에 상당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 OECD 국가들은 복지(social protection)와 보건지출 비중이 가장 크다. OECD 평균 복지와 보건지출 비중은 각각 35.6%와 14.5%이고, 한국은 경제 관련 지출과 교육지출이 20.1%와 15.5%로 상위 1, 2위를 차지한다. 한국에서 보건지출(건강보험 포함) 비중은 15.2%로 세 번째로 높고, OECD는 교육지출 비중이 12.5%로 세 번째로 높다.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분야는 OECD와 한국 모두 공공행정 분야 지출이다.

분야별 지출 비중을 통해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은 아직 성장 위주의 단계에 있어 경제 관련 지출 비중이 높지만 OECD 선진국들은 복지에 대한 지출이 높다.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13.1%에 불과해 OECD 평균(35.6%)에 크게 뒤쳐질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현재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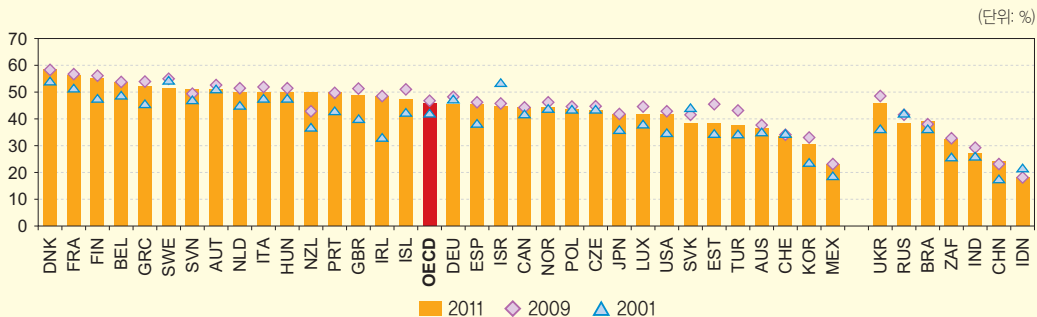
“
**보건지출과 교육지출은 이미 한국과 OECD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향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보건지출 비중은
 더욱 증가하고 교육지출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출 수준은 낮지만 앞으로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보건지출과 교육지출은 이미 한국과 OECD 공히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향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보건지출 비중은 더욱 증가하고 교육지출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 보건지출은 건강보험 지출을 포함한다.

[그림 3]은 2001년과 2011년 사이,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의 변화를 나타낸다. 지난 10년 사이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한국과 OECD 국가들 모두 복지지출과 보건지출이다. 한국은 보건지출이 4.2%p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OECD는 복지지출의 증가폭이 3.2%p로 가장 컸다. 두 번째로 증가폭이 큰 분야는 OECD는 보건지출, 한국은 복지지출이다. 반대로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별 지출은 한국은 경제 관련 지출(3.2%p)이고 OECD는 일반행정지출(-1.1%)이다. 한국에서는 교육지출(2.2%p)과 국방지출(1.9%p)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교육지출이 감소하고 보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는 앞서 예측한 대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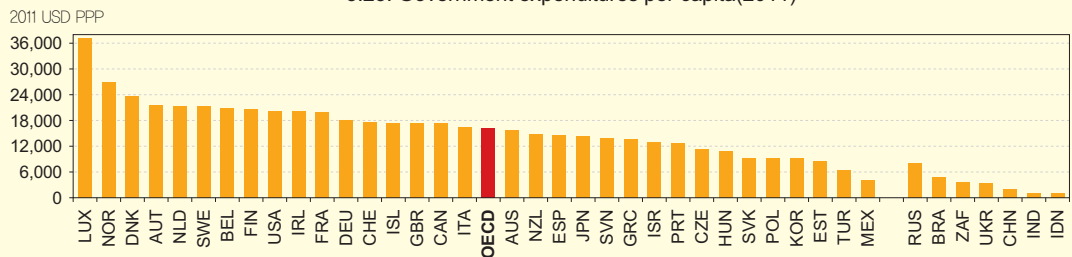
[그림 1]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2001, 2009, 2011년 비교)

3.22.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DP(2001, 2009 and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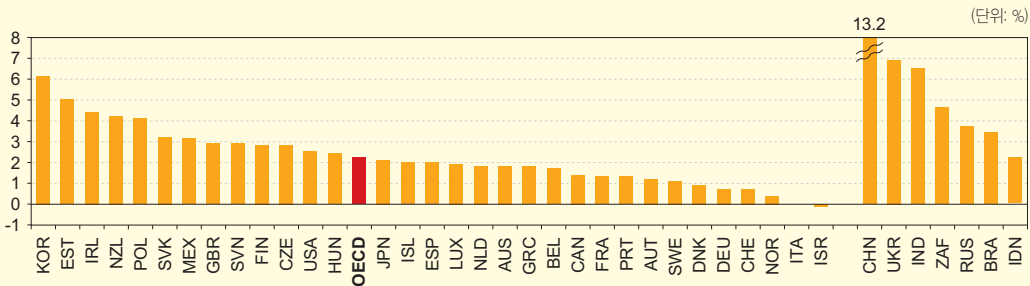
Source: Data for OECD member countries: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Data for the other major economies (excluding the Russian Feder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 Economic Outlook, April 2013, IMF, Washington, D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709>

3.23. Government expenditures per capita(2011)



Source: Data for OECD member countries: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Data for the other major economies (excluding the Russian Feder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 Economic Outlook, April 2013, IMF, Washington, D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728>

3.24.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real government expenditures per capita(from 2001 to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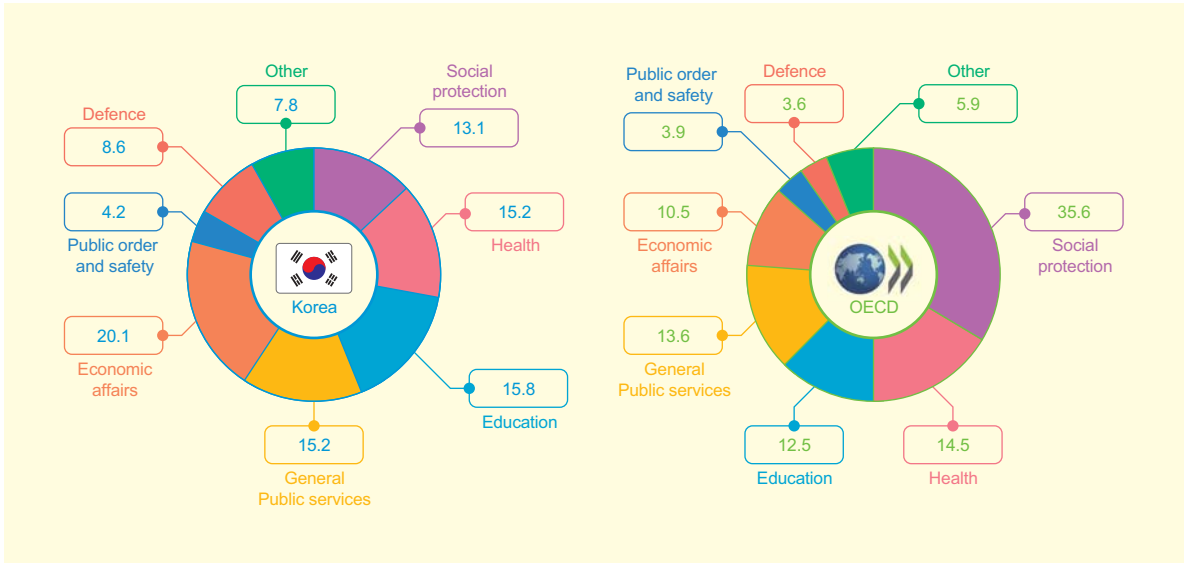


Source: Data for OECD member countries: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Data for the other major economies (excluding the Russian Feder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 Economic Outlook, April 2013, IMF, Washington, D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747>

출처: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3*, 표 3.22, p. 75.

[그림 2] 정부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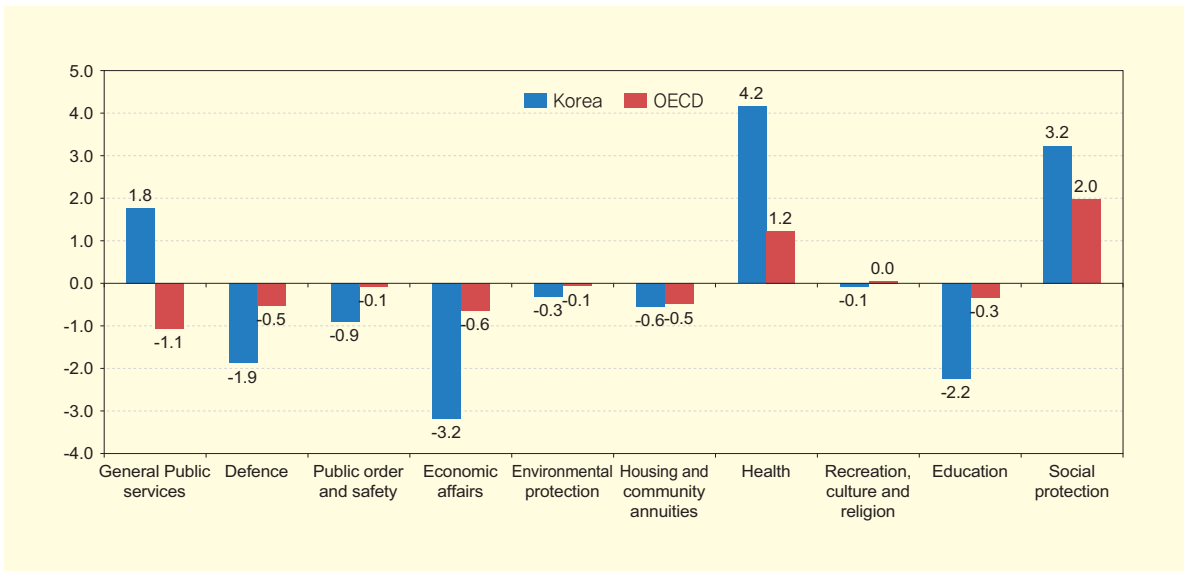
(단위: %)



출처: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3*, country fact sheet, Korea
http://www.oecd.org/gov/GAAG2013_CFS_KOR.pdf

[그림 3] 2001년과 2011년 간 부문별 정부지출 구성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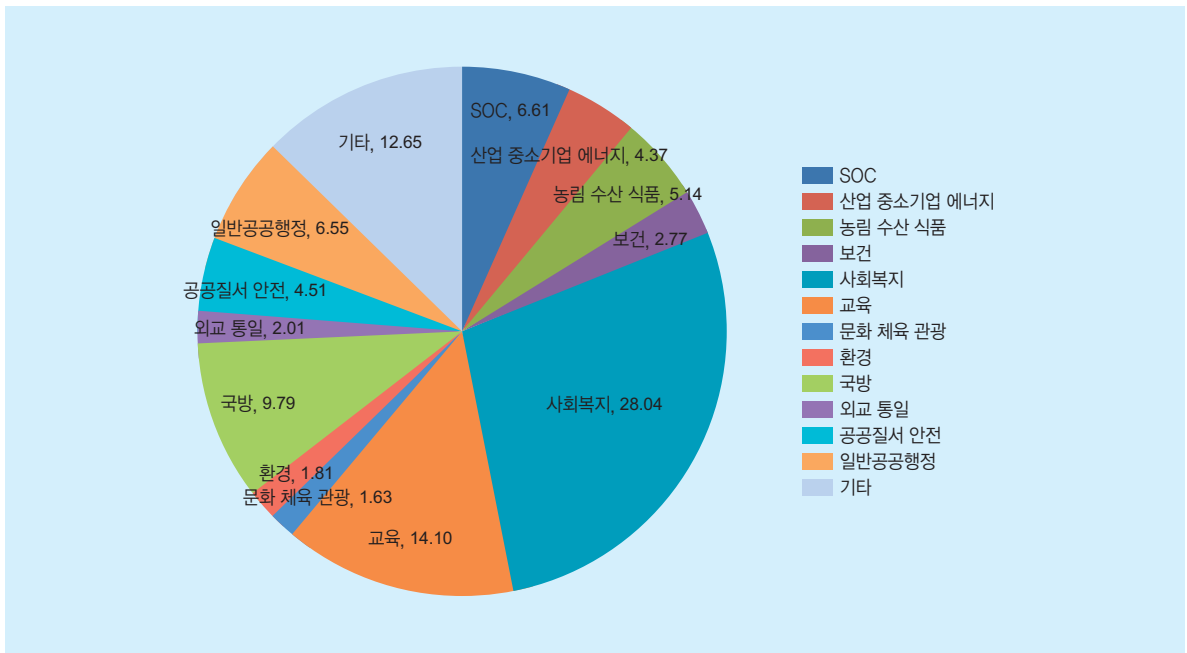
출처: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3*, 표 3.26, p. 9.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이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출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 4]에서 보여주는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에서 제시한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은 앞서 소개한 OECD 통계와 많이 다르다. 2015년 기준, 사회복지지출(28.0%)과 보건지출(2.8%)을 합한 보건복지지출은 30.8%으로 분야별 정부지출 가운데 가장 높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분야는 교육지출(14.1%), 세 번째는 통신, 과학기술, 예비비를 합한 기타지출(12.7%)이다.

[그림 5]에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보건복지지출은 2007년부터 변함없이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인데, 2007년 26%에서 2015년 3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타 분야(통신, 과학기술, 예비비)는 2007년 5%에서 2015년 13%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공공행정 지출은 2007년 18%에서 2015년 7%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농림 수산 식품 분야의 지출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외교통일은 비중이 작지만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국방은 계속 10% 수준에서 변함이 없고, 공공질서 안전, 환경, 문화 체육 관광은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와 산

[그림 4]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2015년)

(단위: %)



주: 1. 기타지출은 통신, 과학기술, 예비비의 합(박승준·윤용준(2013)의 분류체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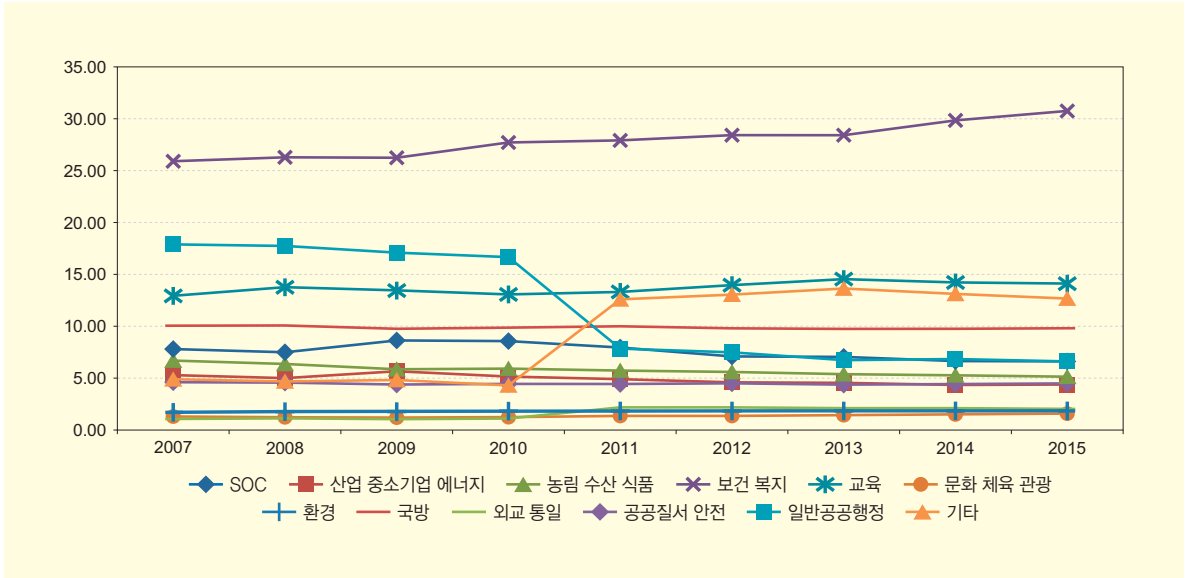
2. SOC는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의 합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재정통계, 한눈에 보는 재정, 분야별 예산 현황

<http://www.openiscaldata.go.kr/portal/theme/themeProfile2.do>

[그림 5]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 추이(2007~2015년)

(단위: %)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재정통계, 한눈에 보는 재정, 분야별 예산 현황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theme/themeProfile2.do>

업·중소기업·에너지 지출은 2009년 잠시 증가하였으나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분야별 정부지출의 추세를 요약하면 보건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 관련 분야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

III. 선행연구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개인의 선호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여러 가지 분야별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는 주로 재분배와 관련된 지출 혹은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에 포커스가 맞추어졌다.

Sorensen(2013)은 연령이 복지지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3가지 주요 복지지출(교육, 보건, 연금 지출)에 대한 태도가 나이에 따라 변

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데이터는 ISSP 1985, 1990, 1996, 2006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22개국 8만여명의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각 복지지출에 대한 5가지 태도(매우증가, 증가, 유지, 감소, 매우감소)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는데, 모든 국가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세 가지 복지지출에 대한 증가를 원하였고, 평균적으로 보건지출 증가를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교육지출, 그리고 연금지출 증가를 선호하였다. 연령대별로 세분하면, 예상대로 고령자들은 연금지출과 보건지출 증가를 더 선호하고, 젊은이들은 교육지출 증가를 더 선호하였다.

Hayo & Neumeier(2014)는 독일의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6개 분야(사회보장, 공공안전, 교육, 인프라, 경제발전, 국방)의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에 대한 대중의 선호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2013년 14세 이상 독일 시민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설계하여 독일

정부가 상기 6개 분야 중 어떤 분야에 지출을 늘리고, 어떤 분야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지 질문하였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 혹은 감소를 원한다고 응답하면, 지출 증가를 위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지출 감소를 통해 남은 재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질문하였다. 두 가지 상황 모두 3개의 옵션 중 중복 선택이 가능한데, 지출 증가는 세금 증가, 부채발행, 다른 분야의 재정지출 감소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지출 감소를 통해 남은 재원은 세금 감소, 공공부채 감축, 다른 분야의 지출 증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응답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공공예산 제약식을 반영한 응답을 유도하게 되어 more for less paradox(세금은 적게 내고 재정지출은 늘리자는 응답)를 피할 수 있다. 18%의 응답자만 재정지출 증가를 위해 세금 증가 혹은 부채 증가를 선호하였고, 국방지출을 제외하고는 재정지출 감소를 선호하지 않았다.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 혹은 개인의 선호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계량 모형을 추정하였는데, 재정지출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소득, 정치인에 대한 신뢰, 경제적 지식, 시간과 정당 선호도로 분석되었다.

Alesina & Giuliano(2011)는 분야별 재정지출 중 재분배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방대한 선행연구를 소개하였으며, 이론적 모델 구축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였다. 연구대상은 미국이고 데이터는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재분배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0에서 5까지 스케일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OLS 모형을 추정하였고 설명변수는 연령, 연령², 성별, 인종, 혼인상태, 경제활동 여부, 교육수준, 가구소득, 정치적 성향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흑인이 백인에 비해, 실업

자가 취업자에 비해,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재분배를 선호하지만, 교육수준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재분배에 대한 선호는 감소한다. 동 연구에서는 기본 모형에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태도, 종교, 가족구성, fairness에 대한 태도 등을 차례로 포함시키면서 분석모형을 확대하였다. 또한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분석하기 위해 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비슷한 형태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동 연구의 결론은 재분배에 대한 선호는 개인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징인 연령, 인종, 성별, 교육수준, 소득 등에도 영향을 받지만, 사회의 역사와 문화, 정치적 성향, fairness에 대한 인식 등 사회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가장 큰 영감을 준 페이퍼는 Haussen(2014)이다. 여기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ISSP 자료를 사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의 선호 결정요인을 연구하였는데, 특히 성별 격차에 포커스를 두었다. 연구대상 국가는 독일이며, ISSP 1996과 2006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6개 분야별 재정지출(환경, 보건, 교육, 국방, 연금, 실업수당)을 훨씬 더 늘린다/좀 더 늘린다/현상 유지/조금 줄인다/훨씬 더 줄인다는 1에서 5까지의 숫자이며 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여성, 중위소득 대비 개인소득(상대소득), 연령(구간더미), 고용(풀타임, 파트타임, 은퇴, 실업), 교육(대졸이상, 고졸, 중졸, 초졸 이하), 혼인/이혼/싱글, 자녀 여부, 도시거주 여부, state dummy, year dummy, east/west dummy를 포함하였다. 동 연구의 관심변수인 여성 변수는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특별한 선호가 없고, 상대소득이 높을수록(중위소득에서 편차가 크지 않을수록, 즉 부유할수록) 교육지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보건, 연금, 실업, 국방지출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기혼자는 교육 및 실업지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연금지출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으면 실업지출에 대한 수요가 적고, 은퇴자는 연금지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방, 실업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교육지출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IV.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 2006년(Role of Government IV)이다. ISSP는 1985년부터 매년 다양한 사회과학 주제에 대해 조사하는 국제 데이터인데, 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은 1985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1990년, 1996년, 2006년에 2~4차 조사를 시행하였고, 2016년에 5차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베이는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 및 재정지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치성향,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설문하였다. ISSP 데이터에 한국은 2006년에 처음 포함되었기 때문에 ISSP 2006년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2006년 한국의 표본 수는 1,605개이고, 포함된 다른 국가들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대만, 일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등이 있다.

ISSP 2006에서 우리가 관심있게 살펴볼 항목은 분야별 정부지출의 증감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ISSP 2006은 8개 분야(환경, 보건, 치안, 교육, 국방, 연금, 실업수당,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출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 다소 더 늘려야 한다, 지금만큼 그대로 유지한다, 다소 더 줄여야 한다, 훨씬 더 줄여야 한다 중 하나의 대답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훨씬 더 늘려야 한다’라고 응답하는 경우 세금인

“
ISSP는 1985년부터
매년 다양한 사회과학 주제에 대해
조사하는 국제 데이터인데,
정부의 역할은 1985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1990년, 1996년,
2006년에 2~4차 조사를 시행하였고,
2016년에 5차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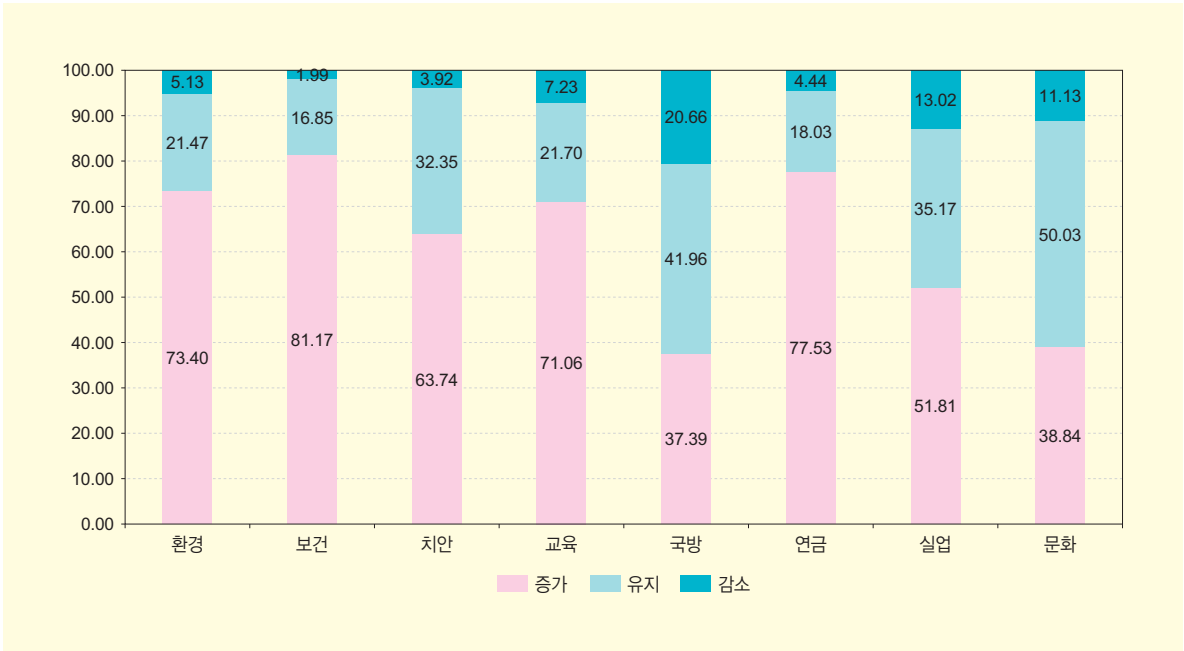
상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재정지출을 (다소 혹은 훨씬) 더 늘려야 한다, 즉 증가시켜야 한다고 응답하는 경우를 1, 현상유지와 (다소 혹은 훨씬) 더 줄여야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 0을 부여하여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는 연령, 성별(여성=1), 혼인상태(기혼=1), 교육수준(대학재학 이상=1), 경제활동 참여 여부(일하고 있음=1), 상대소득(가구월소득/중위소득), 자녀 여부(자녀있음=1), 정치적 성향(보수적=1), 종교(종교 있음=1)와 지역더미변수이다.

먼저 [그림 6]에서는 2006년 ISSP 자료로 분야별 재정지출을 증가/매우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그룹(증가 그룹), 현상 유지를 원하는 그룹 및 감소/매우 감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그룹(비증가 그룹)으로 구분하여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2006년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분야(70% 이상)는 보건, 환경, 교육 분야이고, 재정지출 증가 수요가 낮은 분야(40% 미만)는 국방과 문화예술 분야이다. 보건지출 증가를 원하는 비중은 81%로 가장 높고, 국방지출 증가를 원하는 비중은 37%로 가장 낮다.

다음으로 <표 1>에서는 기초통계량을 제시한다. 종속변수인 각 분야별 재정지출이 훨씬 증가/좀 더 증가해야 한다(이후 ‘증가’로 표시)는 비중을 살펴보

[그림 6] 분야별 재정지출 선호(ISSP 2006)

(단위: %)



도록 한다. 환경 분야의 지출 증가를 원하는 비중은 74%, 보건지출이 증가해야 한다는 비중은 81%, 치안 관련 지출을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64%, 교육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1%, 국방지출 증가를 원하는 사람은 37%, 연금지출 증가를 원하는 비중은 78%, 실업수당 및 고용 관련 지출 증가를 원하는 비중은 52%, 문화예술 분야의 지출 증가를 원하는 비중은 39%이다. 표본의 평균 연령은 42세, 여성 54%, 기혼자 68%, 대학재학 이상이 51%, 자녀 있음 47%, 경제활동하고 있음이 63%, 상대가구 소득 비중은 1.15%,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이 36%, 종교(개신교, 불교, 카톨릭 등)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0%이다.

〈표 1〉 기초통계량

2006년 ISSP(N=1413)					
변수	설명	Mean	S.d	Min	Max
age	연령	41.64	14.28	18	92
female	여성	0.54	0.50	0	1
married	기혼	0.68	0.47	0	1
edu_abovehigh	대학재학 이상	0.51	0.50	0	1
working	현재 경제활동 하고 있음	0.63	0.63	0	1
rel_hhinc	상대 가구소득	1.15	1.22	0	25.5
children ¹⁾	자녀 여부	0.47	0.50	0	1
politics_right ²⁾	정치적 성향(보수적)	0.36	0.48	0	1
relig	종교있음	0.60	0.49	0	1
spendmore_environ	지출증가_환경	0.74	0.44	0	1
spendmore_health	지출증가_보건	0.81	0.39	0	1
spendmore_law	지출증가_치안	0.64	0.48	0	1
spendmore_edu	지출증가_교육	0.71	0.45	0	1
spendmore_defense	지출증가_국방	0.37	0.48	0	1
spendmore_pension	지출증가_연금	0.78	0.42	0	1
spendmore_unemploy	지출증가_실업	0.52	0.50	0	1
spendmore_culture	지출증가_문화	0.39	0.49	0	1

주: 1) 자녀 여부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만 표기되어 과소추정되었음
 2) 정치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약간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수적이라고 정의

〈표 2〉는 2006년 ISSP 데이터로 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결과(한계효과)이다. 8개의 종속변수는 각 분야별 지출을 좀 더 혹은 매우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정의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건이나 연금지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국방지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문화예술지출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령이 1세 증가하면 국방지출 증가를 원하는 확률이 0.5% 증가하고, 문화예술지출 증가를 원하는 확률이 0.3% 감소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방지출 증가를 원하는 확률이 10.7%p 낮다. 기혼자는 비혼자(싱글/별거/사별/이혼)에 비해 교육지출 증가를 원하는 확률이 6.0%p 높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국방지출 증가를 원하는 확률이 5.4%p 낮고, 연금지출 증가를 원할 확률이 4.5%p, 문화예술 지출 증가를 원하는 확률이 6.5%p 낮다.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환경, 보건, 교육, 문화예술지출 증가를 원하는 확률이 각각 16.5%p, 6.0%p, 8.2%p, 9.5%p 높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를 원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고등교육자는 비교적 재정지출의 수요가 낮은 분야인 문화예술지출에 대한 선호 역시 높다는 것이다. 중위 소득 대비 본인소득, 즉 상대소득이 높으면 보건지출 및 실업·고용지출 수요가 감소하였다. 상대소득이 1단위 상승하면 보건지출 증가를 원할 확률은 1.5% 감소

소하고, 실업 및 고용 관련 지출 증가를 원할 확률은 2.5% 감소하였다. 예측 가능하게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교육지출 증가를 원하는 확률이 11.4%p 높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자는 중도 혹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보건지출 증가를 원하는 확률이 5.0%p 낮고, 국방지출 증가를 원하는 확률은 5.2%p 높다. 종교 여부는 분야별 재정지출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의 분야별 지출 중 특히 재분배 기능이 강한 복지, 보건, 교육 부문 지출에 대한 선호 그룹을 살펴 보도록 한다. 보건지출은 고등교육자, 상대소득이 낮

은 사람,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지 아닌 자가 선호하고 있다. 교육지출은 대학재학 이상인 사람과 기혼자, 자녀가 있는 자가 선호한다. 복지지출의 대표적 항목인 연금지출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프로빗 모형의 한계효과(ISSP 2006)

	환경	보건	치안	교육	국방	연금	실업	문화
age	-0.001 (0.001)	0.001 (0.001)	0 (0.001)	0 (0.001)	0.005*** (0.001)	0.001 (0.001)	0 (0.001)	-0.003** (0.001)
female	0.005 (0.025)	-0.021 (0.022)	-0.014 (0.028)	0.005 (0.026)	-0.107*** (0.028)	-0.002 (0.024)	0.005 (0.029)	0.012 (0.028)
married	0.013 (0.032)	0.043 (0.030)	0.008 (0.036)	0.060* (0.034)	0.002 (0.036)	-0.04 (0.030)	-0.059 (0.038)	0.057 (0.037)
working	-0.003 (0.026)	0.028 (0.023)	0.003 (0.029)	0.012 (0.027)	-0.054* (0.030)	-0.045* (0.024)	0.003 (0.030)	-0.065** (0.029)
edu_abovehigh	0.165*** (0.027)	0.060** (0.025)	-0.005 (0.030)	0.082*** (0.029)	-0.022 (0.031)	-0.018 (0.026)	-0.043 (0.032)	0.095*** (0.031)
rel_hhinc	-0.016 (0.010)	-0.015* (0.009)	-0.006 (0.011)	-0.004 (0.010)	0 (0.011)	0.005 (0.010)	-0.025* (0.013)	0.009 (0.011)
children	0.025 (0.028)	0.004 (0.025)	0.02 (0.031)	0.114*** (0.029)	-0.015 (0.032)	-0.005 (0.027)	-0.042 (0.033)	-0.039 (0.032)
politics_right	-0.008 (0.025)	-0.050** (0.022)	-0.01 (0.027)	-0.019 (0.026)	0.052* (0.028)	0.002 (0.023)	-0.013 (0.028)	-0.022 (0.027)
relig	-0.035 (0.024)	-0.019 (0.022)	-0.008 (0.027)	0.037 (0.025)	0.003 (0.027)	0.008 (0.023)	0 (0.028)	-0.017 (0.027)
Region Dummy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Obs.	1,413	1,413	1,413	1,413	1,413	1,413	1,413	1,413
log likelihood	-758.0	-669.9	-913.3	-814.9	-891.4	-736.6	-957.6	-922.6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정부지출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어떤 분야의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가 높은지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가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의 수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성장이나 국방지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복지과 보건 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향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건 및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6년 ISSP 자료에서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가 높은 분야(70% 이상)는 보건, 환경, 교육 분야이고, 선호가 낮은 분야(40% 미만)는 국방과 문화예술 분야이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의 지출에 대한 선호는 높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호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문화예술지출에 대한 선호가 낮는데, 이는 향후 소득이 더 증가하고 복지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만족된다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에서 ISSP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개인의 다양한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이 분야별 재정지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고령자는 국방지출 증가 및 문화예술지출 감소를 선호하고, 기혼자는 교육지출 증가를 선호하였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연금, 문화예술, 국방지출 감소를 선호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 보건, 교육, 문화예술지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출 증가를 선호하였다. 상대소득이 높으면 보건 및 실업·고용 관련지출 감소를 선호하였고,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지출 증가를 선호하였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보건지출 감소 및 국방지출 증가를 선호하였다.

재분배 기능이 강한 지출을 선호하는 그룹의 특성

“
**실증분석을 통해 분야별 재정지출의
 선호 결정요인이 다양하며
 특정 그룹에 따라 선호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

을 정리하면, 교육수준이 높고, 상대소득이 낮으며, 정치적으로 덜 보수적인 사람이 보건지출 증가를 선호하고, 교육수준이 높고,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가 있는 사람은 교육지출 증가를 선호하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연금지출 증가를 선호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분야별 재정지출의 선호 결정요인이 다양하며 특정 그룹에 따라 선호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하며 또한 다양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분야별 재정지출 중 국가가 정책적 타깃으로 설정한 그룹이 실제로 해당 지출에 대한 선호가 높은지, 즉 개인의 선호와 정책적 타깃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실업수당 및 고용 관련 지출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데, 실업자가 실제로 고용 관련 지출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연금지출과 같은 다른 분야의 지출을 선호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계가 넓은 패널 데이터가 있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경우, 어떤 분야의 정부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미래사회 대비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lesina, Alberto and Paola Giuliano,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Handbook of Social Economics*, Volume 1A, Elsevier, 2011.
- Haussen, Tina, "Is there a gender gap in preferences for public spending?," University of Jena, IIPF 2014 presentation paper, 2014.
- Hayo, B. and Neumeier, F., "Public Preferences for Government Spending Priorities: Survey Evidence from Germany," *MAGKS Joint Discussion Paper Series No. 57-2014*, 2014.
- Sorensen, Rune J., "Does aging affect preferences for welfare spending? A study of people's spending preferences in 22 countries, 1985~2006,"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9, pp. 259-271.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

I. 서론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sungmunc@kipt.re.kr)

어떤 사회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며,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가 진보하기도 하며 퇴보하기도 한다.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이 겪은 대표적인 갈등으로는 영호남 간의 지역 갈등, 그리고 개발독재세력과 민주화세력 간의 이념 갈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한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되기도 전에 최근 새로운 갈등의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행복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소득 및 자산의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어 빈부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가재정의 악화와 동시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대간 갈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빈부간, 세대간 갈등은 투표, 여론조사, 집회·시위,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해외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민인구의 증가도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이민자의 숫자나 갈등의 표출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민인구의 빠른 증가 속도와 기존 단일민족 문화의 배타성을 고려했을 때 이민인구의 증가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정치·사회·경제적 경로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경제적 경로 중 하나인 복지선호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즉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의 변화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소득분포, 특히 소득불평등도가 정부 재분배정책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Meltzer와 Richard의 이론연구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Meltzer and Richard, 1981). 그들의 모형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가 심해질수록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아지게 되며, 중위투표자정리(median-voter theorem)에 의해 중위투표자는 더 높은 세율과 더 큰 재분배정책을 선호하게 된

“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국가 전체의 경제, 사회, 인구적인 특성이
 국민들의 평균적인 복지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

다. 이후 행해진 여러 실증연구에서 유권자집단의 소득불평등도가 커질수록 정부지출의 규모가 커진다는 다양한 증거가 발견되었다.¹⁾

복지선호도 또는 재분배선호도에 관한 최근 실증 연구는 대부분 개개인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즉 개인의 소득, 성별, 나이, 인종, 학력 등이 재분배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예를 들어 Alesina와 Giuliano의 논문에서는 미국 및 세계 여러 국가에 대한 기존 연구의 요약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결과도 제시하고 있다(Alesina and Giuliano, 2015). 주된 결론은 남성보다 여성, 기혼자보다 미혼자, 백인보다 흑인의 재분배선호도가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선호도가 낮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재분배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선호도가 낮아지는 것은 고학력자일수록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경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선호도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와 달리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복지선호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국가 전체의 경제, 사회, 인구적인 특성이 국민들의 평균적인 복지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연구에 사용한 자료 및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며, 제3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

가. 연구에 사용된 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복지선호도에 대한 변수 및 경제·사회 변수를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우선 복지선호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사용하였다.²⁾ 세계가치관조사는 1981년에 시작되어 현재 6차 조사까지 완성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및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다. <표 1>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의 wave별 조사 기간, 국가 수, 그리고 한국의 조사년도와 표본 수를 나타내고 있다.

1) 상세한 설명과 예는 최승문(2014) 참고
 2) <http://www.worldvaluessurvey.org>

〈표 1〉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현황

(단위: 개)

wave	연도	국가 수	한국 조사년도	한국 표본 수
1차	1981~1984	10	1982	970
2차	1990~1994	18	1990	1,251
3차	1995~1999	57	1996	1,249
4차	2000~2004	41	2001	1,200
5차	2005~2009	58	2005	1,200
6차	2010~2014	60	2010	1,200

세계가치관조사의 설문문항 중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문항은 소득재분배 또는 복지와 관련된 문항이다. 〈표 2〉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의 질문 중 소득재분배 또는 복지와 관련된 질문 두 문항을 한국어 설문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2〉의 첫 번째 문항은 정부정책과 상관없는 소득분배 자체에 대해 묻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소득재분배 또는 복지에 관한 질문은 아니기에, 본 연구에서는 〈표 2〉의 두 번째 문항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하였다.³⁾ 다만 세계가치관조사의 지수는 숫자가 커질수록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적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11에서 해당 지수를 뺀 값을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로 사용하였다.⁴⁾ 즉 숫자가 커질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도 커지도록 재조정된 것이다.

〈표 2〉 세계가치관조사의 소득(재)분배 또는 복지 관련 질문

왼쪽 표현	응답(가장 근접한 숫자 택1)	오른쪽 표현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나야 한다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주: 1~10까지의 숫자 중 응답자의 생각에 가장 근접한 숫자에 체크(즉 왼쪽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 1, 오른쪽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 10)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지니(Gini)계수 및 최상위소득비중(top income shares)을 사용하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분포의 전체적인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소득분배가 완벽하게 균등하면 0의 값을 가지며 소득불평등도가 커질수록 지니계수도 커지게 된다. 최상위소득비중은 소득 상위 10%, 1%, 0.1% 등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최상위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World Bank의 자료를 사용하였고,⁵⁾ 최상위소득비중은 Alvaredo, Atkinson, Piketty, and Saez가 운영하는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의 자료를 사용하였다.⁶⁾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고령화와 함께 이민인구 증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령화를 나타내는 지수로는 World Bank의 노년부양비(Old Age Dependency Ratio)⁷⁾ 자료를 사용하였으며⁸⁾, 이민자·외국인 인구의 경우 OECD 자료를 사용하였다.⁹⁾

3) 6차 wave부터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라는 요소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요소인지 아닌지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지만, 이전 wave와 비교가 불가능하며 질문에 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음
 4) 따라서 설문지상에서 왼쪽 표현과 오른쪽 표현의 위치를 서로 바꾼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5)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GINI/>
 6) <http://topincomes.parisschoolofeconomics.eu/>
 7)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8)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DPND.OL>
 9) <http://www.oecd.org/els/mig/keystat.htm>

그 밖에 1인당 GDP, 실업률, 일반정부 총부채(ge-
neral government gross debt) 등의 경제변수들은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를 사용
하였다.¹⁰⁾

나. 소득분포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

앞서 설명한 대로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
는 변수로는 Gini계수와 최상위소득비중 자료를 이용
하였다. <표 3>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Gini
계수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전소득의 불평
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세
전소득의 불평등도와 세후소득의 불평등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조세 및 재분배 정책의 역할이 상대적으

로 작다고 할 수 있다. 유럽 국가의 경우 세전소득의
불평등도는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세후소득의 불평등
도는 우리나라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표
4>는 최상위소득비중을 나타낸다. 최상위소득비중은
세전/세후, 자본이득(capital gains)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본
이득을 포함하지 않은 세전 소득의 집중도를 사용하
였다. <표 4>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4.9%, 상위 1%가 전체소득
의 12.2%, 상위 0.1%가 전체소득의 4.4%를 차지했
다. 이는 미국보다는 낮지만 일본, 프랑스, 스웨덴보
다 높은 수치이며, 장기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
로 보인다.¹¹⁾

<표 3> 주요국의 연도별 Gini계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세전소득	0.330	0.340	0.344	0.345	0.341	0.342	0.338
	세후소득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미국	세전소득			0.486	0.499	0.499	0.508	0.506
	세후소득	0.384	0.376	0.378	0.379	0.380	0.389	0.389
일본	세전소득	0.462			0.488			
	세후소득	0.329			0.336			
영국	세전소득	0.503	0.504	0.508	0.519	0.523	0.525	
	세후소득	0.339	0.341	0.342	0.345	0.341	0.344	
독일	세전소득			0.494	0.493	0.492	0.506	
	세후소득	0.290	0.295	0.287	0.288	0.286	0.293	
프랑스	세전소득			0.483	0.493	0.505	0.512	
	세후소득	0.293	0.292	0.293	0.293	0.303	0.309	
스웨덴	세전소득			0.426	0.444	0.441	0.435	
	세후소득			0.259	0.269	0.269	0.273	

주: Gini계수는 자료에 따라 0에서 1 사이 값을 사용하거나 또는 100을 곱해 0에서 100 사이 값을 사용하기도 함
출처: OECD Inequality and Poverty Data

10)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1/weodata/index.aspx>

11) 최상위소득집중도의 경우 국가별로 사용한 자료의 특성, 연구자의 방법론, 소득에 포함시킨 항목, 성인인구의 나이 기준, 통계에 포함시킨 가구구성 등에 차
이가 있어 국가별 수치를 있는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 주요국의 연도별 최상위소득집중도

(단위: %)

국가	상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10%	41.91	42.39	42.86	42.6	43.3	44.22	44.87
	1%	10.78	11.28	11.37	11.33	11.76	12.25	12.23
	0.1%	3.6	4	4	3.96	4.19	4.43	4.35
미국	10%	45.5	45.67	45.96	45.47	46.35	46.63	47.76
	1%	18.06	18.33	17.89	16.68	17.45	17.47	18.88
	0.1%	7.92	8.16	7.82	7.04	7.52	7.38	8.36
일본	10%	40.81	41.03	40.94	40.32	40.5		
	1%	9.62	9.64	9.71	9.56	9.51		
	0.1%	2.6	2.62	2.63	2.55	2.52		
영국	10%	41.99	42.61		41.53	38.08	39.15	39.13
	1%	14.82	15.44		15.42	12.55	12.93	12.7
	0.1%	5.55	6.05		6.46	4.66	4.8	4.6
독일	10%	37.58	38.57	39.52				
	1%	12.32	12.93	13.89				
	0.1%	5.11	5.35	5.94				
프랑스	10%	32.81	33.12	32.6	31.86	32.29	32.52	32.34
	1%	8.94	9.09	8.51	7.78	8.11	9.27	8.94
	0.1%	2.65					3.23	2.9
스웨덴	10%	27.3	27.76	28.07	27.93	28.27	28.33	27.9
	1%	6.61	6.91	7.09	6.72	6.91	7.02	7.13
	0.1%	2.21	2.28	2.39	2.12	2.22	2.19	2.37

출처: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이 심해질 경우 국민들, 특히 투표결과의 향방을 결정할 중위투표자가 더 많은 재분배 또는 복지를 원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가설을 확인해보기 위해 Gini계수 및 최상위소득비중으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로는 앞서 언급한 세계가치관조사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세계가치관조사의 가

장 최근 조사인 6차 조사의 경우 설문기간이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이지만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연도의 Gini계수와 최상위소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많아 6차 조사를 사용할 경우 복지정책 선호도와 소득불평등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세계가치관조사 5차 조사의 국가별 평균치를 사용하였다.¹²⁾ Gini계수 및 소득상위 0.1%가 전

1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가치관조사 문항의 경우 1~10까지 숫자 중 복지정책을 선호할수록 낮은 숫자를 고르게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11-세계가치관 조사에 나온 수치)를 복지선호도로 사용하였다. 즉 숫자가 클수록 복지선호도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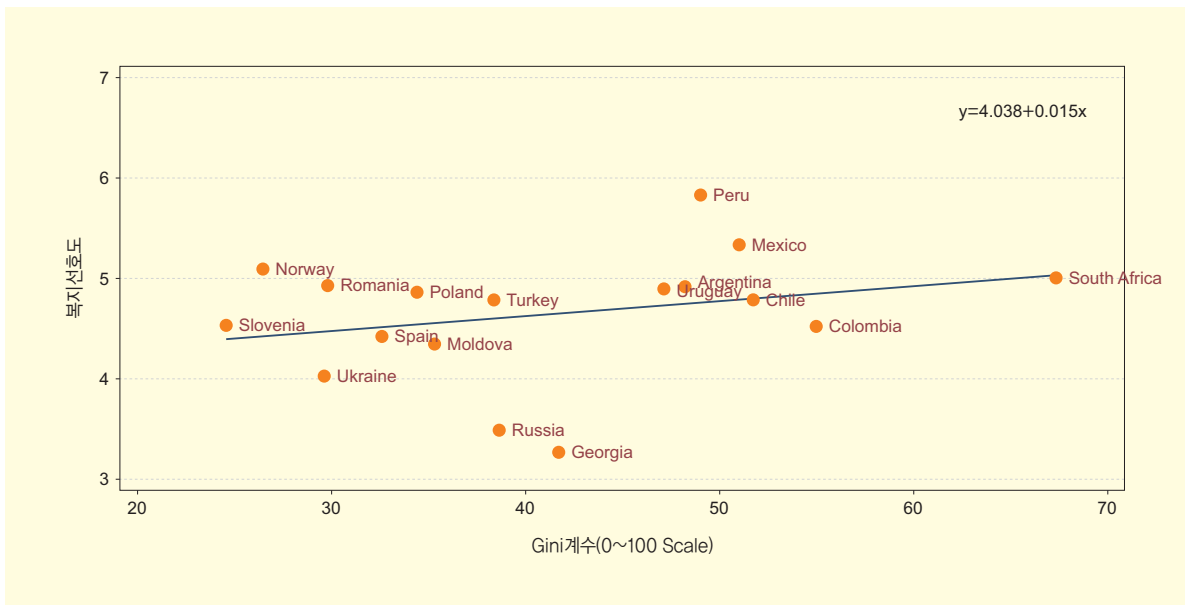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세계가치관 조사 5차 조사가 행해진 연도(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2005년)의 통계를 사용하였다.

[그림 1]은 Gini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와 국민들의 복지선호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국민들의 평균적인 복지선호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Gini계수가 10만큼 높아지면 1~10 사이에서 측정된 복지선호도가 0.15만큼 높아졌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균적인 복지선호도가 4에서 6 사이에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0.15만큼의 변화가 아주 적은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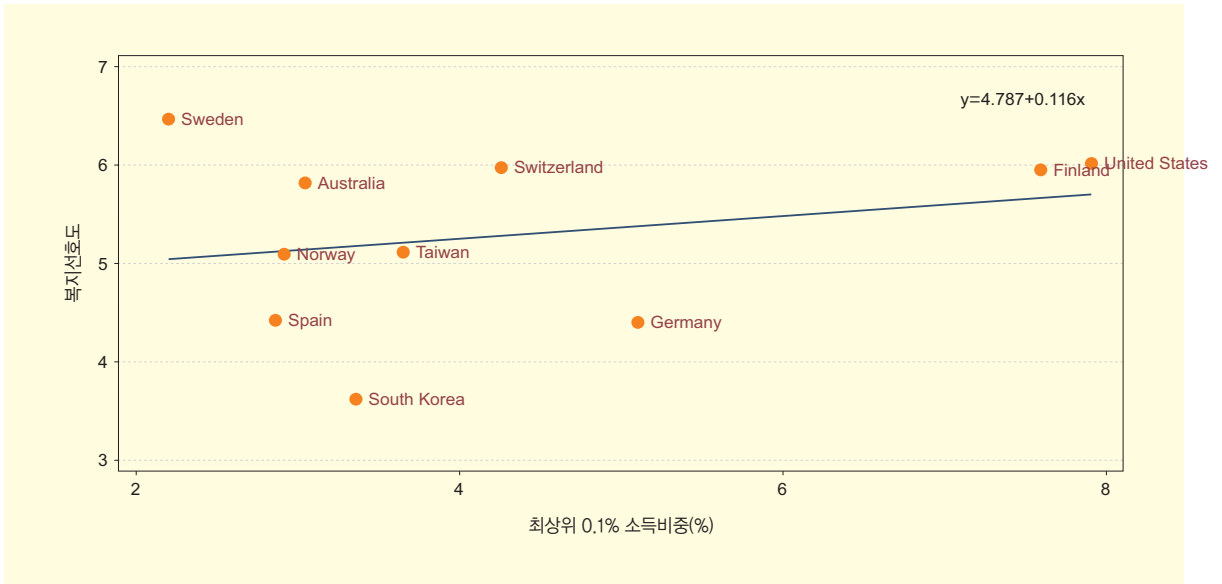
[그림 2]는 최상위 0.1%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와 국민들의 복지선호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국민들의 평균적인 복지선호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그림 1]에 비해 자료가 존재하는 국가 숫자가 적어 통계적인 신뢰성은 다소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관관계의 크기를 살펴보면 소득 상위 0.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증가할 때 1에서 10 사이에서 측정된 복지선호도가 0.1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Gini계수와 복지선호도



[그림 2] 최상위소득비중과 복지선호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복지선호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에 사용된 국가 숫자가 많지 않고, 상관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에 향후 좀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소득불평등도가 복지선호도를 증가시킨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추세대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향후 국민들의 복지선호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복지선호가 반드시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는 빈부 사이, 그리고 국민과 정부 사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인구 고령화이다.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노인을 위한 복지지출이 늘어나며, 그 비용은 젊은세대 또는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다 보니 세대간 갈등 또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표 5>는 주요국들의 노년부양비, 즉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현재 노년부양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지 않지만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게다가 노인빈곤율 또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노인을 위한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출의 증가는 증세 또는 부채 발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젊은세대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표 5〉 주요국의 노년부양비

(단위: %)

	1980(A)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B)	B/A
한국	6.21	6.60	7.18	8.31	10.24	12.97	15.24	16.68	2.69
미국	17.07	17.93	18.94	19.19	18.65	18.38	19.47	21.00	1.23
일본	13.42	14.96	17.13	20.69	25.19	29.91	36.02	40.53	3.02
영국	23.30	23.02	24.06	24.46	24.24	24.17	25.19	26.94	1.16
독일	23.69	20.63	21.74	22.58	24.00	28.38	31.63	32.14	1.36
프랑스	22.03	19.60	21.40	23.30	24.62	25.26	25.91	27.94	1.27
스웨덴	25.41	26.69	27.66	27.42	26.85	26.45	27.88	30.31	1.19

출처: World Bank

[그림 3]은 세계가치관조사 5차 조사(2005~09)에 서 나타난 국가별 국민들의 평균 복지선호도와 해당 조사년도(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2005년) 노년부양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¹³⁾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변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복지선호도 사이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인구집단 별로 상반되는 복지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다 보니 통계적인 관계가 희석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시간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4]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 3차 조사(1995~99)와 5차 조사(2005~09) 기간 사이의 노년부양비 변화와 복지선호도 변화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¹⁴⁾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3차 조사년도인 1996년과 5차 조사년도인 2005년 사이의 변화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 3]보다는 좀 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관관계의 방향이다. 인구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국가에서 국민들의 평균적인 복지선호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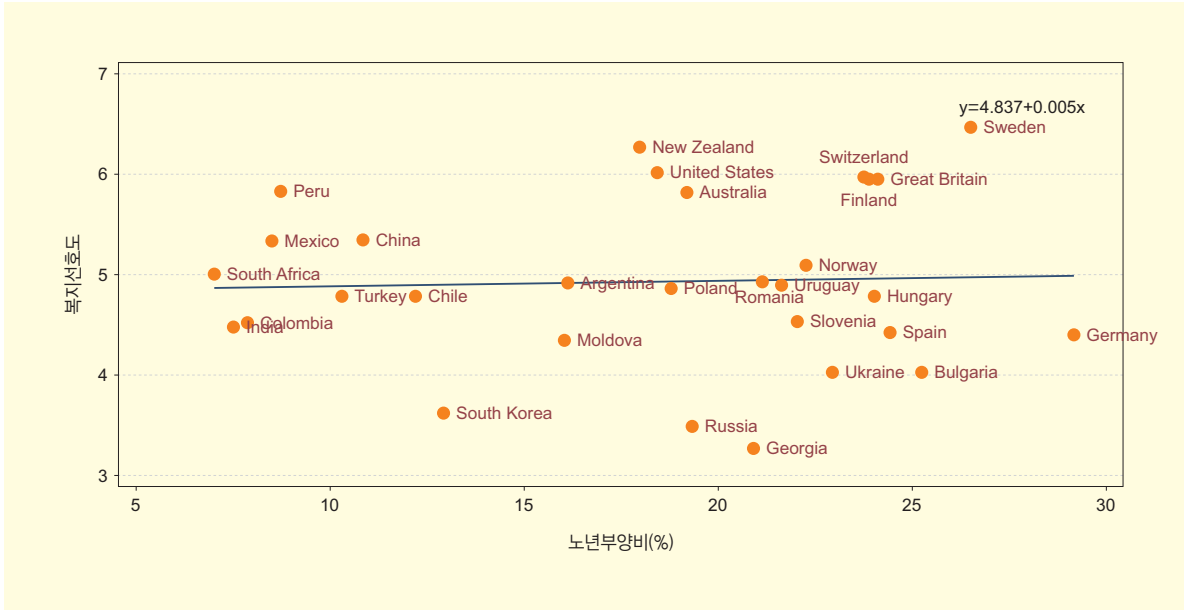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진 않지만, 인구가 고령화되어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노인들 중 상당수는 빈곤을 겪고 있기에 이는 노인들의 선호도가 좀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젊은세대에서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복지정책을 더 강력히 원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분석은 국가별 국민들의 복지선호도 평균치만을 이용한 분석이기에 세대별 복지선호도의 차이는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 노인세대는 복지정책의 확대를 원할 수도 있지만 이를 부담해야 하는 젊은 층은 복지정책의 축소를 원할 수도 있다.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확대될 경우 본인들을 위한 연금, 의료보험 등의 축소를 우려하여 노인들이 더욱더 복지정책 확대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¹⁵⁾ 따라서 세대별 선호도 차이를 좀 더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계가치관조사의 전체 샘플, 즉 국가별 평균치가 아닌 응답자 개개인을 포함시킨 원자료를 사용하여 좀 더 엄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 앞서 설명한 소득분포 분석과 마찬가지로 인구분포 분석에서도 세계가치관조사 6차 조사(2010~14)를 사용할 경우 인구분포 자료, 특히 이민자의 최근 연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많아 6차 조사 대신 5차 조사 자료와 국가별 5차 조사년도의 인구변수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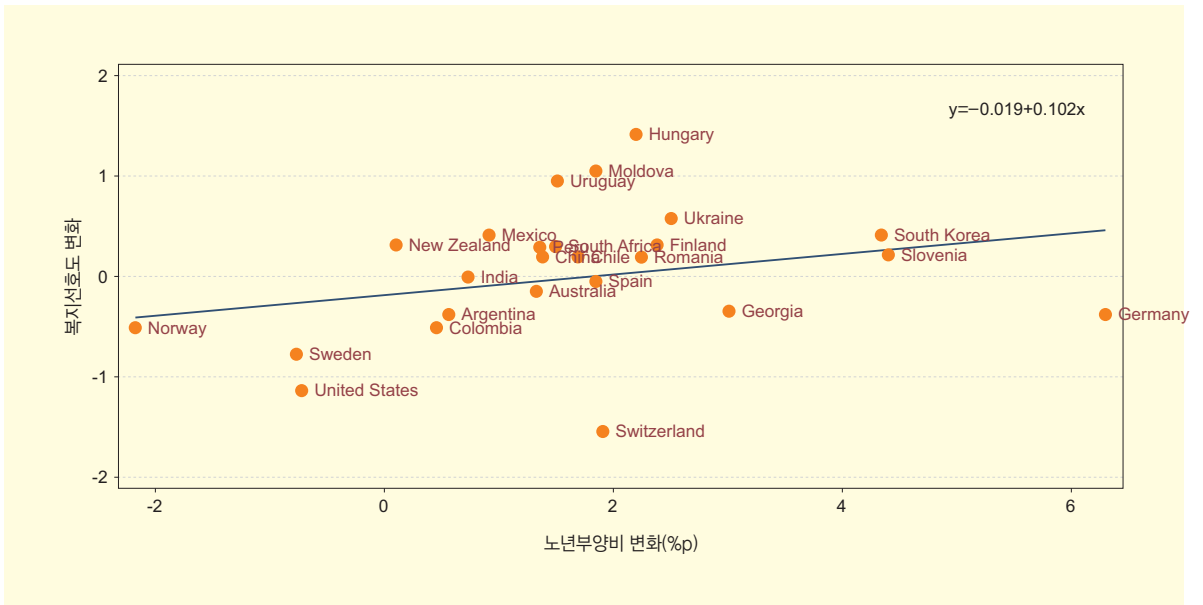
14) 세계가치관조사 5차 조사와 비교하기 위해 3차 조사를 이용한 이유는 1, 2차 조사의 경우 조사국가 수가 너무 적으며, 4차 조사의 경우 5차 조사와 시간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15) 이 점에 대해서는 Ashok, Kuziemko, and Washington(2015) 참고

[그림 3] 노년부양비와 복지선호도



[그림 4] 노년부양비 변화와 복지선호도 변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민자 및 외국인 인구의 증가이다. 이민인구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비중이 높은 이민자들을 위한 지출이 커질 확률이 높지만 이에 대한 기존 내국인들의 반감 또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에 대한 반감이 원인이 된 2011년 노르웨이 테러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표 6>은 주요국의 연간 신규 이민자·외국인 유입(flow) 및 총 이민자·외국인 숫자(stock)를 나타낸다.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총 이민자·외국인 숫자 또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최근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급속히 늘면서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이민인구 규모가 커지면서 잠재적인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림 5]는 국가별 총 인구 대비 신규 이민자·외국인 유입 비율과 복지선호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다. 그림에서는 신규 이민자·외국인 유입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복지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이민자 수가 많을수록 복지선호도가 높아진다고보다는 이민자들이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복지국가로 이민갈 확률이 높다는 뜻일 수도 있다. 따라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그림 6]에서는 세계 가치관 조사 3차 조사년도(1995~99)와 5차 조사년도(2005~09) 사이 신규 이민자·외국인 비율의 변화와 복지선호도 변화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민자 및 외국인 인구의 증가가 클수록 복지선호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과 [그림 8]에서는 인구 대비 총 이민자·외국인 비율을 이용하여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규 이민자·외국인 비율과 마찬가지로 총 이민자·외국인 비율의 경우에도 5차 조사 시기만을 놓고 보면 이민자와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복지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3차 조사년도와 5차 조사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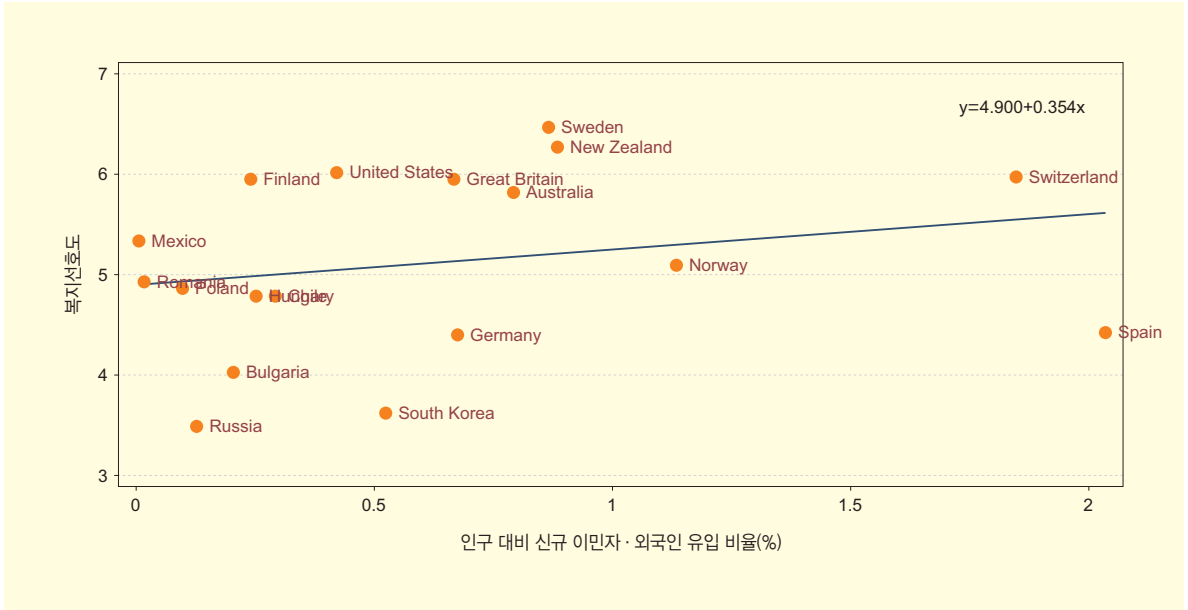
<표 6> 주요국 연도별 신규 이민자·외국인 유입 및 총 이민자·외국인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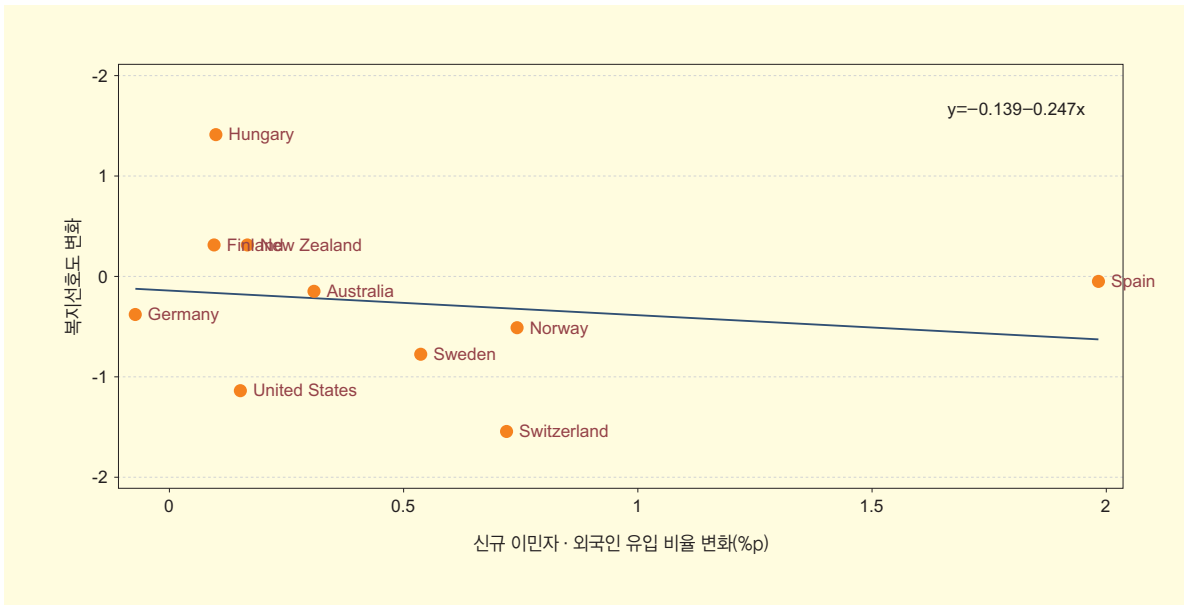
		2000(A)	2004	2008	2012(B)	B/A
한국	신규유입(flow)	173.071	178.53	302.174	300.177	1.73
	총숫자(stock)	210.249	491.409	895.464	932.983	4.44
미국	신규유입(flow)	841.002	957.883	1107.126	1031.631	1.23
	총숫자(stock)	17757.696	21115.672	21835.714	21359.07	1.20
일본	신규유입(flow)	345.779	371.983	344.509	303.926	0.88
	총숫자(stock)	1686.444	1973.747	2215.901	2033.656	1.21
영국	신규유입(flow)	260.424	434.322	456	383	1.47
	총숫자(stock)	2342	2857	4186	4788	2.04
독일	신규유입(flow)	648.846	602.182	573.815	965.908	1.49
	총숫자(stock)	7296.817	6717.115	6727.618	7213.708	0.99
프랑스	신규유입(flow)	91.875	141.554	153.331	163.446	1.78
	총숫자(stock)			3773.236	4036.029	
스웨덴	신규유입(flow)	42.216	46.746	81.954	82.597	1.96
	총숫자(stock)	472.35	457.771	555.385	667.232	1.41

출처: OECD Migration datab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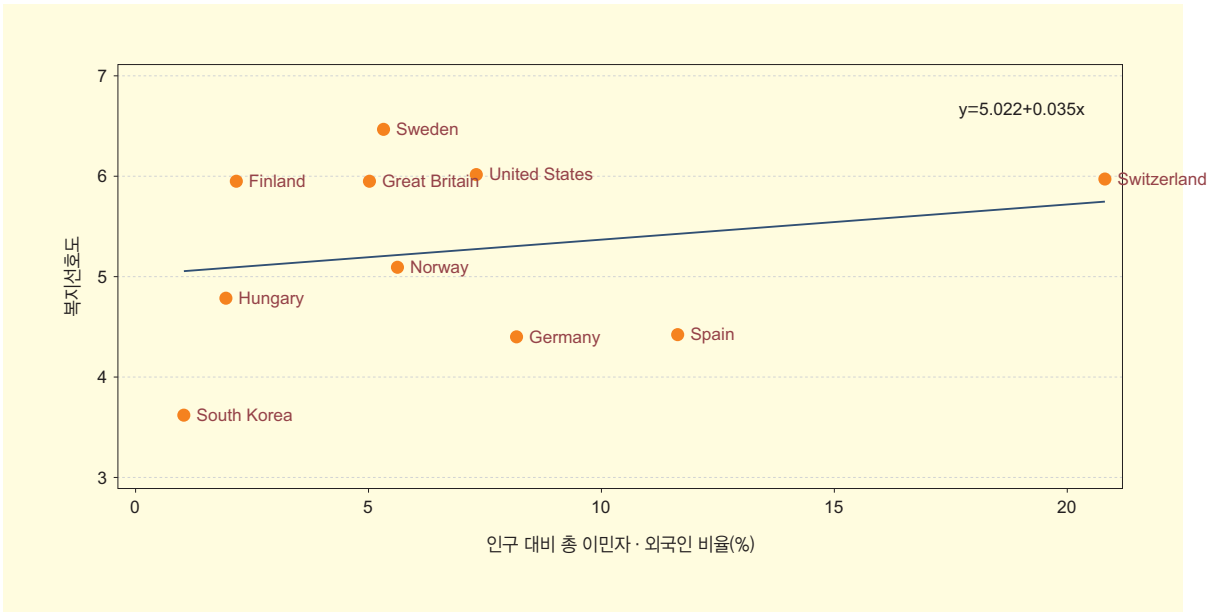
[그림 5] 인구 대비 신규 이민자·외국인 유입 비율과 복지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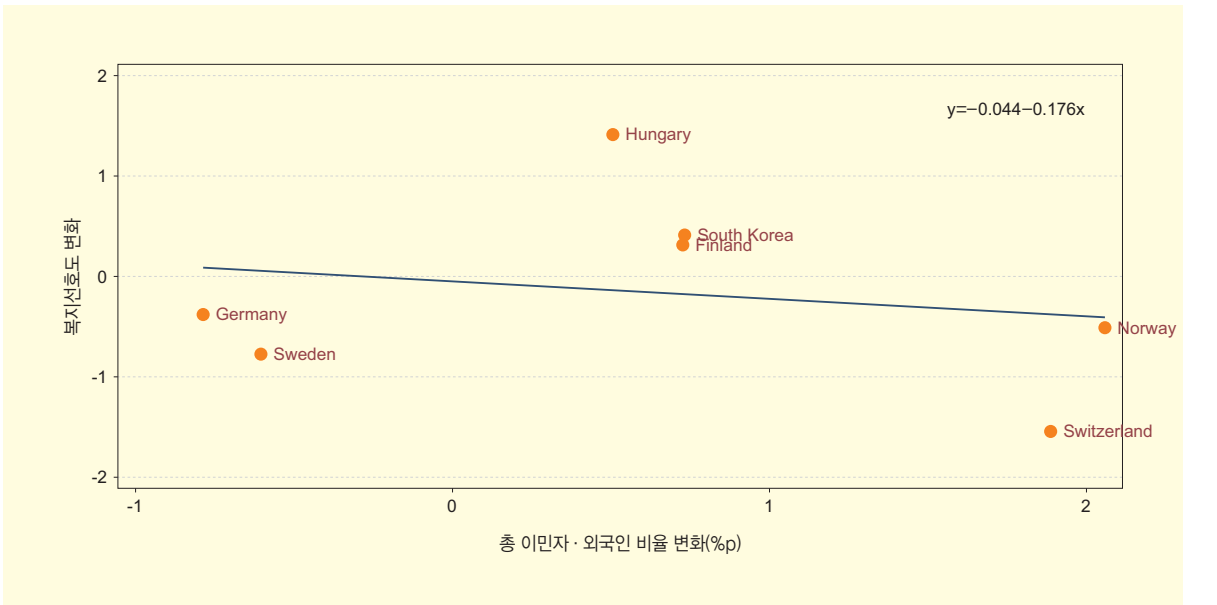
[그림 6] 인구 대비 신규 이민자·외국인 유입 비율 변화와 복지선호도 변화



[그림 7] 인구 대비 총 이민자·외국인 비율과 복지선호도



[그림 8] 인구 대비 총 이민자·외국인 비율 변화와 복지선호도 변화



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 이민자·외국인 비율의 증가가 큰 나라에서 복지선호도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 역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반드시 인과관계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민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나라에서 복지선호도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은 분명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이다.

다. 종합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의 변화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소득분포의 변화는 소득불평등도,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구 고령화 및 이민자·외국인 인구 증가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고령화 속도가 빠를수록 복지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민자·외국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빠를수록 복지선호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슈별로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할 경우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장점은 있지만 제3의 다른 변수가 둘 중 하나 또는 두 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표 7>은 앞선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와 더불어 거시경제 변수를 추가한 패널회귀분석(panel regression)의 결과를 나타낸다. 자료는 세계개발원조사 1차~6차 자료 및 해당 조사년도의 국가별 소득분포·인구·거시경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상위소득비중이 커질수록 복지선호도는 높아지며 이민자·외국인 인구가 커질수록 복지선호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위의 분석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노년부양비는 복지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는 세대별로 복지선호도의 변화에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평균치를 사용하면서 세대별 차이가 희석되었

“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고령화 속도가 빠를수록
 복지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민자·외국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빠를수록 복지선호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국가별 평균이 아닌, 설문응답자 개개인을 포함하는 원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에서는 복지선호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복지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복지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복지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대체로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패턴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모두 가진 국가 및 시기가 많지 않아 자료상의 한계가 분명 존재하며, 향후 더욱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표 7〉 패널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복지정책 선호도)

	회귀분석 계수	표준오차	p-value
최상위1% 소득 비중	0.135511**	0.0646309	0.036
노년부양비	0.0007538	0.0439528	0.986
log(신규 이민자)	-0.2600789*	0.1432143	0.069
log(1인당GDP)	1.250762**	0.5535928	0.024
GDP성장률	-0.1444171***	0.0486558	0.003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0.0063185*	0.0033274	0.058
wave fixed effect	포함		
Number of countries	16		
Number of observations	37		
R ² (overall)	0.6446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패널회귀분석(panel regression)이긴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분석에 포함된 국가 및 시기 숫자가 많아 통계적으로 강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움. 특히 소수의 이상치(outlier)가 전체 결과를 크게 바꿀 가능성이 존재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노인과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노인 및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조사하는 문항이 있다. 노인에 관한 문항은 노인들을 사회의 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으며,¹⁶⁾ 외국인에 관한 문항은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들 중 외국인 노동자·이민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¹⁷⁾ 〈표 8〉은 주요국의 노인 및 이민자·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인은 사회의 짐이라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은 다른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전에 급격히 고령화

가 진행되고 이민인구가 늘어난다면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은 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노인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스페인	중국	싱가포르
노인은 사회의 짐이라는 인식(1~4)	1.88	1.69	1.73	1.78	1.75	1.70	1.92	1.99
이민자·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0~1)	0.44	0.14	0.36	0.21	0.04	0.08	0.12	0.36

III.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분포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민들의 복지선호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불평등이 심해질수록 국민들은 더 많은 복지를 선호하게 되며, 이민자 및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국민들의 복지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와 복지선호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진 않지만 최소한 젊은 세대들은 노인을 위한 복지지출 확대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에 향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복지선호도의 변화가 정부지출의 변화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복지정책 요구는 늘어나는데 정부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빈


16) 노인에 관한 문항은 “노인들은 사회의 짐이다(Older people are a burden on society)”라는 표현에 동의할수록 1, 동의하지 않을수록 4에 가까운 숫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 숫자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반감이 적다는 것을 뜻한다. 표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5에서 해당수치를 뺀 값을 이용해 숫자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반감이 크도록 재설정하였다.

17) 외국인·이민자에 관한 문항은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이민자를 체크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

부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이민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비중이 높은 이민자들을 위한 정부지출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내국인들이 이 같은 복지정책에 대해 반발이 거세진다면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해 불만과 더불어 이민자에 대한 반감 역시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불평등 심화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존 내국인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이들도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의 일부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정부 또한 다양한 직업과 출신 국가를 가진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민자·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이들에 의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입국심사 및 불법이민자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해결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적 해결책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복지선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지 않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 역시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의 결실을 모든 국민이 나누어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세기 후반 국가와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되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했고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문화마저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

“
**아직 우리 사회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갈등이 심각한 사회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빈부간, 세대간, 인종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에 이를 미리 예상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

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외면했던 사회적 문제들이 하나둘씩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이전 세대에서 겪어보지 못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좋은 시절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경제적·사회적 갈등이 점점 더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사례를 교훈 삼아 재정여력이 남아있을 때 재정개혁을 이루고 경제성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킨다는 말처럼 경제도 여력이 있을 때 체질개선을 통해 다가올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이다. 이는 사회적 갈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직 우리 사회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갈등이 심각한 사회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빈부간, 세대간, 인종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에 이를 미리 예상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최승문,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Alesina, A. & Giuliano, P.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Handbook of Social
Economics*, A Bisin and Benhabib, J,
North Holland, 2011, pp. 93–132.

Ashok, V., Kuziemko, I., & Washington, E.
“Support for Redistribution in an Age of
Rising Inequality: New stylized facts and
some tentative explanati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15.

Meltzer, A. H., & Richard, S. F.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1, pp.
914–927.

정책토론회 리포트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주제발표 요약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특징

-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제도임
 - 일정 기간 동안에만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조세휴일제도임
 - 장치산업과 같이 고정설비·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아서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야 하는 업종보다는 이동성이 큰 업종이 유리하며,
 - 감면기간 동안에는 다른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혜택이 적은 업종이 유리함
 - 지원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조세감면 항목이 12개나 되며, 각 항목별로 감면이 허용되는 업종과 업종별 기준금액, 지원규모(기간)가 다름
 - 최근에 고용을 조건으로 하는 감면한도가 설정됨

- 고용기준 한도는 고용기준 한도는 최대 외국인 투자 누계액의 20%까지 인정됨

2.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실적과 실효 감면액

- 2008~2013년 감면 실적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가 적용되는 외투감면의 규모가 3천 6백억원(2013년)~8,200억원(2011년)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받는 감면 전체의 31~47%를 차지함(〈표 1〉 참조)
 - 외국인 투자 기업 중 2% 내외의 소수의 기업만 혜택을 받음
 - 외투감면제도는 계속 확충되었으나 감면 대상 기업의 비중과 감면혜택의 규모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표 1〉 외국인 투자법인의 조세감면액 비교

(단위: 개, 십억원, %)

	외투법인 전체			외투감면 법인		D/A	E/B	E/C
	법인 수 (A)	산출세액 (B)	공제감면액 (C)	법인 수 (D)	공제감면액 (E)			
2008	6,542	7,432	1,314	146	517	2.21	7.0	39.3
2009	7,545	7,039	1,554	137	729	1.83	10.4	46.9
2010	7,682	6,008	1,268	135	567	1.74	9.4	44.7
2011	7,624	8,770	1,896	163	820	2.10	9.3	43.2
2012	7,699	8,755	1,411	141	438	1.79	5.0	31.1
2013	7,931	6,082	885	134	361	1.69	5.9	40.8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3, 2014.

- 외투기업과 일반기업의 공제감면율 격차가 외투감면을 통해 외투기업이 받는 순혜택에 따른 것이 라면, 그 격차(순외투감면율)를 외투기업의 산출세액에 곱함으로써 순외투감면액을 산출할 수 있음(〈표 2〉 참조)



- 2008~2011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 순외투감면액은 640억원(2010년)에서 3,540억원(2009년)으로 법인세 신고서에 나타난 외투감면액의 11.2~48.5% 수준임
 - 2012년과 2013년에는 외투기업의 공제감면율이 일반기업의 공제감면율보다 낮아서 순혜택이 음수로 나타남
 - 2008~2013년 평균 순혜택률은 11.7%임
 - 2005~2012년 평균 순혜택률 25.1%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음
- 금액으로 보면 2008~2013년에 연평균 5,270억원의 외투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이 있었는데, 그 중 4,366억원은 외투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제도가 없었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공제받았을 금액으로 추정됨
 - 외투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제도의 순혜택은 연평균 906억원 수준임
 - 2005~2012년 연평균 순혜택은 1,450억원임

<표 2>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순혜택

(단위: %, %, %, 십억원)

	외투기업 공제감면율 ¹⁾	일반기업 공제감면율 ²⁾	공제율격차 (순외투 감면율) ³⁾	순외투 감면액 ⁴⁾	순혜택률 ⁵⁾
2008	17.7	15.2	2.4	181	35.0
2009	22.1	17.0	5.0	354	48.5
2010	21.1	20.0	1.1	64	11.2
2011	21.6	19.7	1.9	164	20.0
2012	16.1	19.1	-2.9	-258	-58.9
2013	14.6	20.3	-5.7	-347	-96.2
평균('08~'13)	19.6	18.1	11.5	9.1	11.7
평균('05~'12)	20.2	17.9	2.4	145	25.1

주: 1) 외투기업 공제감면율=외투기업 공제감면액/외투기업 산출세액
 2) 일반기업 공제감면율=일반기업 공제감면액/일반기업 산출세액
 3) 공제율 격차(순외투감면율)=외투기업 공제감면율-일반기업 공제감면율
 4) 순외투감면액=외투법인 산출세액×순외투감면율
 5) 순혜택률=순외투감면액/외투감면액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외투감면액을 감면항목별로 보면, 증자에 대한 감면이 대략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신규투자에 대한 감면이 나머지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음
 - 2013년 신규투자의 경우,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업에 대한 감면이 32%, 외국인 투자 지역에 대한 감면이 11.7%,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이 0.2%를 차지함
 - 그 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기구 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 입주기업,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등 다른 항목의 실적은 전 구간에 걸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함

3. 세부담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

- Tavares-Lehmann, Coelho, and Lehmann(2012)은 조세가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함
 - 정성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조세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 분명함
 - 조세는 외국인 투자를 결정하는 다른 요소들과 비교해 볼 때 '한계적(marginal)'인 역할을 할 뿐임
 - 정량분석 결과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면 종합적으로 세부담의 완화가 외국인 투자 유입을 증대시키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
 -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책담당자들은 조세가 외국인 투자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 것은 퍼즐임



- 2014년의 심층평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하여 세부담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에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함
 - KisValue를 통해서 재무제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2008~2013년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함
 - 종속변수인 투자규모로는 고정자본 총액과 유형고정자본 총액을 사용하였으며, 각 지표의 로그값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
 - 설명변수로는 세전 기대이익률 지표, 법인세 부담 지표, 조세감면 더미, 기업의 규모를 대변하는 지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산업더미 변수를 사용함
- 추정결과 기업의 이익률과 세부담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설문조사

- 2014년의 심층평가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세무담당자들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4대 대형 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9개의 조세 및 비조세요인을 열거하고 항목별 중요도를 물어보았음
 - 외국인 투자기업 세무담당자와 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 모두 거래쳐 확보나 질 좋은 노동력, 원재료 확보, 우수한 사회간접시설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들었음
 - 조세요인은 9개 요인 중 3~5위 정도에 분포하

여 중상위에 위치함

- '낮은 세율'은 대체로 중간 정도 순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문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은 부정적 의견을 보였음
- 외국인 투자 감면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감면기업들조차도 중간값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감면과 투자유입과의 관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함
 - 다만 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 결정요인으로서 조세의 중요성과 외국인직접투자자와 지원세제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이는 세무전문가들이 조세 문제에 집중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조세 이외 다른 요인을 비교적 가볍게 보고 있음을 시사함

4.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가. 장기 정책방향

- (내외국인 차별 폐지) 관련 연구나 저서는 거의 예외 없이 내·외국인 간 차별을 폐지할 것을 주장함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과세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내국인 투자를 외국인 투자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제적으로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는 조세지원 혜택을 부당한 조세경쟁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폐지됨



-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편)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은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효과가 크므로, 장기적으로 국가경제가 처한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른 지원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조세지원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 최기호(2014), 이성봉(2010), 김군수 외(2012) 등은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장함
-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축소) 현 시점에서 세금을 감면해 가면서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편)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새만금사업지역,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특정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조세감면 실적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됨
 - 외국인에 대한 특혜만으로 특정 지역의 개발·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외국인 동등 지원 요구가 강함
 - 제도가 매우 복잡함
 - 다양한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다 보니 특정성이 약화되고, 지원효과가 약화됨
- 이런 문제점을 고려할 때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은 일정한 기준(예, 지역소득 일정 수준 이하)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단기 개편방안

- (조세감면 기간의 조정) 외국인 투자 조세지원제도는 7년형(5년 전액, 2년 50% 감면)과 5년형(3년 전액, 2년 50% 감면)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7년을 5년형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국내 일반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감면기간이 5년 이하임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내국인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효과를 고려한 조세지원)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고용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조세감면 한도에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 조세감면 한도는 투자규모 한도와 고용기준 한도로 구성되는데, 고용기준 한도는 외국인 투자 누계액의 20% 내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함
 -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투자규모에 의한 한도를 축소하고 고용기준에 의한 한도를 확대하면 고용촉진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고용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창업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남용 억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내국인을 차별하는 제도이므로, 내국인이 외국기업을 통해 국내에 투자함으



로써 부당하게 조세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유혹을 갖게 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지분을 내국인이 10% 이상 보유하면 내국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조세감면 배제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면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남용을 억제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토론 요약

재정적자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 억제해야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모토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이었다. 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할 때,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관련 정책들도 많이 제안되었다. 자유무역지역이 추가 지정되고, 경제자유지역이나 경제특구와 같은 경제적인 예외지역들이 많이 생겨난 것도 그즈음이다. 어떤 유인정책을 줘야 우수한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 국가인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냐를 모색했다. 발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은 정확하고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다. 제도의 목적이 외국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업이 투자를 판단할 때 중시하는 것은 세후 수익률이다. 따라서 세제를 통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견해였다고 생각한다. 과세당국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왜 해주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투자 여건들이 대동소이하다면, 추가적인 조세정책을 통해 투자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의 기능은 제한적인 것이다.

올해도 세계개편안이 발표될 것인데, 그간의 경협을 반추해 보면 조세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소득 재분배, 내수 활성화, 고용 창출 등 여러 가지 정책목적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조세정책을 통해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기대를 담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조세정책이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세정책을 가다듬어서 가처분소득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소득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정책이 소득재고 및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일 것이다.

한편, 해석하는 입장의 차이 때문이라고 사료되지만, 해외의 실증분석 결과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정책이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토론자는 조세감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발제문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대부분의 정책은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키는데,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책의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의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은 실제로 편익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제도는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이 그리 호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정부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성장기조가 가시화되고 있고

경기침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세입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결국 나가는 돈은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돈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적자의 심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분간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형편이 좋을 때는 넉넉하게 지출할 수 있겠지만, 형편이 나빠지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경제생활의 기본적인 이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는 절약하는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경제에 미칠 충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일정을 사전에 미리 밝혀 시장이 이에 대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적인 정책추진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국가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물론, 외국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갖는 신뢰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내·외국인 투자 동등하게 만드는 방법 고민해야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계량분석 과정을 보면서 반대의 정책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책의지에 따라 통계분석도 다른 방향으로 수행되고, 또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 문제는 명확히 결론을 내



리가 어렵다는 의미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므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성급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계량분석을 보완하는 설문조사도 그렇다. 질문내용을 바꾸면 대답이 더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조세요인이 여전히 중요 요인의 하나로 꼽힌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감면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효성 문제라기보다는 입지 등 다른 요인이 더 작용했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등이 그렇다. 이 역시 조세지원액이 미흡하다고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는 이유다.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기술수준이 선진화됐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역차별 문제가 언급될 수 있지만, 또 국내기업 중 이들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인 기업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에 진입할 시 이점이 적지 않다고 본다. 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넘어 경쟁 촉진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 연구개발 촉진 등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외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하자는 주장에 찬성을 하지만, 동등하게 만드는 방법이 문제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감면혜택을 없애서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감면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과 동등하게 맞추는 방법도 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지금처럼 국내 투자가 절박하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후자가 역차별 해소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실효성 높여야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에 대해서는 IMF 전부터 외국보다 더 호의적이고 차별적인 혜택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때도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IMF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서 방향이 바뀌어서 외국인 투자가 절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은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되었으며 범위가 늘어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 외국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신호를 내놓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본인은 과거 8년 동안 민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데,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은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바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기술수준과 시장을 보고 결정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투자를 결정한 이후에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가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모든 감면액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감면을 해주더라도 자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에서의 감면액만큼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조세감면



이 투자가 입장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감면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에 세후수익률을 예상한 만큼 거둘 수 있는지, 즉,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더 중시한다.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조세감면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세감면을 축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조세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부정적 신호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대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소개한다면, 첫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것이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란 사전에 국세청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은 대로만 거래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문제는 동 제도의 적용범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와 ‘어떤 소득이 한국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원천징수가 된다면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사전답변제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 개선해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한국의 투자 여건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진국들은 상호합의제도에 중재제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앞으로 국제적인 기준이 이중비과세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나아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무분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기업들과 과세당국들 간 과세분쟁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투자환경의 악화와 함께 다국적 기업들은 세후 기대순이익률 확보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현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합의절차가 이용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상호합의가 원만히 타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만일 상호합의가 제대로 안되면 2년 안에 중재로 가서 분쟁이 조속히 해결된다면 투자자들에게 그 부분이 조세감면보다 더 반가울 수도 있다. 따라서 OECD 모델 조세조약에도 소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호합의 제도에 중재제도를 추가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내지 폐지해야



이재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금감면이 없었다면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가에 관하여 세금감면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실증연구가 다수 있는데, 그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주의국납부세액공제와 participation exemption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주의국납부세액공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 법인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면 그만큼 배당재원이 늘어나게 되고,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해 주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 몫이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배당에 대하여 그들의 거주지국에서 그 나라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면, 우리나라가 부여한 세금감면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결국 투자자들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에서 감면된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participation exemption도 관련이 있다. Participation exemption은 원천지과세주의가 배당에 대하여 적용된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로 인한 비과세효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된다.

결국, 투자자들이 그 거주지국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participation exemption 중 어느 하나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가 투자수익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승요인이 투자의 가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이론적으로는 투자안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도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는 투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운용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그리고 고도기술수반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이렇게 3가지 감면제도를 각기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이렇게 3가지 감면제도를 각기 따로 떼어내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각 제도가 갖는 정책목표의 내용을 각기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우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에 정책목표를 둔다면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굳이 차별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즉,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것이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대규모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라든가 환율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화 유동성이 풍부하여 해외투자를 장려하여 환율을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굳이 조세감면의 혜택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대규모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축소 내지 폐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고도기술수반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본래 tax holiday라는 것이 세금감면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자본수입국의 조세정책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GDP 기준 세계 11위라는 우리나라의 경제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폐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런 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면,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tax holiday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국내 투자와 달리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transaction cost가 추가로 생기게 되므로 이를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는 제도 존속의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그 수준이 자본이나 노동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에는 한계점에 도달하여 기술진보에 의한 경제성장을 추



구해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기술로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기술에 한하여서는 조세혜택을 통해서라도 기술도입을 장려하는 것을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기술로 그 범위를 좁혀서 조세감면제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기술 진보의 추진은 비효율로 인한 한계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제한적인 기술의 범위 내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한시적인 제도로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율이 아닌, 세금의 불확실성 문제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세제라는 것이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보다 외부적으로 부정적 신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 세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의 불확실성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고 감면제도도 없는 지역보다 매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5천억원에 가까운 세수손실을 감수

하고 세제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것은 행정 등 곳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유 개념이 많지만,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자회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월급을 받는 경영자이다. 그들은 세금을 얼마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기대한 만큼 세금을 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과세당국을 바라보는 문화적 차이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보다 불확실성에 대해 더욱 민감하다. 예를 들어 실제로 그들이 국제 로펌에서 자문을 받고 많은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경영자문료 배분방식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부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특정산업에서 세무조사를 나온 사람들이 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무리한 과세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다국적 기업은 자본을 배분하면서 이자를 내부적 방식으로 공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한국 세무당국은 국세청에서 말하는 고시이자율을 고집함으로써 마찰이 일어난다고 한다.

한 외국인 투자기업 담당자는 우리나라 세율은 경쟁국에 비해 굉장히 낮고 매력적이지만, OECD의 지침을 한국의 세무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기대보다 유효세율이 훨씬 높은 경우가 빈번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한국 과세당국 간의 신뢰를 해치고 우리나라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OECD의 2007년 보고서에도 외국인 직접투자자와 세율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세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무행정에 대한 불만은 납세자들이 통상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넘



어갈 수도 있겠지만, 개선할 방식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담당 직원이 너무 자주 교체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 있다. 또, 외투기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시각,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조세회피를 많이 할 것이다 하는 근본적인 시각이 있다. 항상 과세당국이 의심하고 조세회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세율이 낮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소득을 이전시킬 유인도 있다고 보여진다. 유효세율을 조사하면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우리나라보다 세부담률이 더 높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조세회피를 1차적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목적, 거래목적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낮은 세율에 엄격한 법 집행으로 마찰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세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부담을 가져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시적인 면에서는 행정을 개선하는 조치가 있으면 세율을 제대로 걷으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KIPF**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5-06

요약

- 벨기에는 2015년 5월 21일에 해외에 설립된 조세회피를 위한 특정한 법률적 조직을 이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원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함
 - 동 제도는 해외에 설립된 특정한 법률적 조직이 배분하는 저세율을 적용받은 소득이 벨기에 국내로 유입될 때, 해당 소득에 대해 벨기에 국내의 세율을 적용하고 세금을 다시 산출하여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
 - 대상이 되는 법률적 조직은 법적인 인격 없는 신탁과 분리된 법인격이 있는 법률적 조직이지만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조직임
- 핀란드 조세당국은 2015년 5월 27일에 공동증여(shared gift) 시 증여세 부과에 방법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은 공동증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세표준 산정 및 적용 세율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임
- 네덜란드 정부는 주요 조세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담은 서한을 2015년 6월 19일자로 의회에 송부함
 - 소득세 세율 경감, 투자소득에 대한 간주소득세 조정 및 부가세 경감세율 적용 대상 축소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인세제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2015년 6월 17일자로 발표함
 - 공통의 단일 과세기준 도입, 실제 소득 발생지에서의 과세 강화, 역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조세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개괄하고 있음
- OECD는 2015년 6월 8일자로 BEPS Action Plan 13과 관련하여 국가별 이전가격 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국가별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모델규정 및 다수 과세당국 간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협약 문안을 제시함
- 대만 입법원은 2015년 6월 5일 부동산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 신설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되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였으나 2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1. 벨기에 - 특정한 법률적 조직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제도 발표¹⁾

■ 벨기에 내각은 2015년 5월 21일 벨기에 거주자가 해외에 설립된 특정한 법률적 조직을 이용하여 소득에 저세율을 적용받은 후 해당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는 조세회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승인함

- 동 제도는 실질적으로는 벨기에 국내 세율을 적용 받아야 하지만 해외에 설립된 특정 법률적 조직을 이용하여 설립자의 저세율만 적용받은 후 추가적인 과세 없이 국내로 유입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함
- 그리고 적용대상 소득이 벨기에 국내로 유입될 때, 해당 소득에 대해 벨기에 국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다시 산출하여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 단,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음
- 수동적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잡수입, 전문적인 활동에 의한 수입 등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적용됨
- 벨기에에는 동 제도를 ‘케이먼세(Cayman Tax)²⁾’로 부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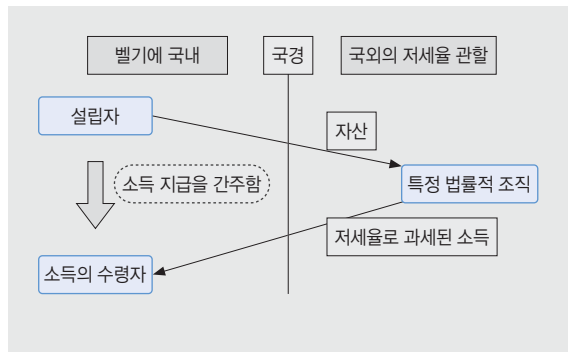
■ 본 제도에 따라 저세율 관할을 이용하는 법률적 조직으로부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저세율로 과세된 소득을 벨기에 국내에서 수령한 때에는, 동 소득은 벨기에 국내에 거주하는 조직의 설립자(founders)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것임

- 적용대상 소득을 벨기에 거주자인 설립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적용

되는 세율은 해외의 저세율이 아니라 벨기에 국내의 세율이 되어 조세회피를 차단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

- 설립자는 설립자의 지배에 있는 법률적 조직의 수입 및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배분하는 자로 간주될 수 있음
- 설립자(founders)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벨기에의 법적 실체로서 벨기에 세법을 적용받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림 1] 새로운 조세회피 방지제도의 도해



- 본 제도의 대상이 되는 법률적 조직은 법적인 인격이 없는 신탁과 분리된 법인격이 있는 법률적 조직이지만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조직임
- 법률적 조직이지만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됨
 - 회사, 협회, 단체, 기관 또는 기타 실체들이 설립된 곳의 법에 따라서 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을 것

1) www.ibfd.org 참조

2) 'Cayman Tax'는 벨기에의 'Transparency Tax'의 별칭으로 부르는 것이며 'Transparency Tax'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 권리,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구체화시킨 것임

- 설립된 관할에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거나, 벨기에에서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제도³⁾로부터 생긴 이익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경우여야 함

- 그러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벨기에 내에서 수령한 소득이 EEA⁴⁾ 회원국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 또는 조세정보교환 조약이 있는 다른 조세 관할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다시 지급될 경우에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EEA 회원 국가들 및 조세정보교환 조약이 있는 관할은 벨기에 정부와 소득세 및 기타 조세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2. 핀란드 - 핀란드 조세당국은 공동증여(shared gift) 시 증여세 부과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⁵⁾

- 2015년 5월 27일 핀란드 조세당국은 공동증여(shared gift) 시 증여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발표함
- 공동증여는 한 개의 재산 증여 시 증여자가 대상 자산이 여러 수증자들이 해당 자산을 공유할 것을 언급하고, 그것이 성립되면 인정되는 증여임
- 단, 공동증여라는 언급이 없이 한 개의 재산에서 각자 지분을 나눠서 수증하게 되는 증여는 공동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임

- 예를 들어 한 채의 집을 두 딸이 각각 50%의 지분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증여가 이루어질 시에는 공동증여가 아닌 각자 분리된 일반 증여임

- 증여에 적용되는 세율은 2종류의 범주가 있으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적용 세율이 달라지게 됨
- 수증자들이 증여세법상 1범주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질 경우 세율은 1범주의 세율로 적용됨
- 그러나 수증자 중 1명이라도 증여세법상 2범주의 사람이 있으면 세율은 2범주로 매겨짐

〈표 1〉 핀란드의 증여세를 적용 범주 구분

범주	증여자와의 관계	적용 세율
1범주	- 배우자 또는 등록된 파트너 - 증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 동거자 - 증여자와 결혼 전력이 있거나 등록된 파트너였던 동거자 - 증여자의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또는 등록된 파트너의 직계 존비속	8~20%
2범주	- 1범주 이외의 친척 또는 친척 관계가 아닌 자	21~36%

- 공동증여에 대한 과세 대상 가치의 결정과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공동으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증여 대상 재산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됨
- 공동증여자는 증여에 대해서 한 번의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됨
 - 각각 따로 할 필요가 없으며 각각 신고하는 경우는 공동증여가 아니게 됨
- 공동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들은 연대하여

3) 현저하게 유리한 제도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15% 이하로 적용되는 조세제도를 의미함

4)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5) 핀란드 국세청, [https://www.vero.fi/en-US/Individuals/Gifts/Gifts_designated_as_a_shared_gift\(37392\)](https://www.vero.fi/en-US/Individuals/Gifts/Gifts_designated_as_a_shared_gift(37392))



증여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짐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3. 네덜란드의 조세 개정안 의회 제출⁶⁾

■ 네덜란드 정부는 2015년 6월 19일자로 조세 개정안 (the planned tax reform)을 담은 서한을 의회로 송부함

- 이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여러 세목에 걸쳐 세율 조정 등 조세 개정 방향을 개략적으로 정리·발표한 것임

■ 법인세 분야에서는 자본 조달방식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지 등의 개략적 개정 방향을 천명함

-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경우와 부채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 경우 간에 법인세 부담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조치할 예정임
 -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원은 향후 법인세율 인하를 위해 사용될 것임

■ 소득세 분야에서는 관련 세율 경감 등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도록 개정할 계획임

- 두 번째 및 세 번째 과세구간에 해당하는 세율(현행 10.85% 및 42%)을 각각 2% 포인트씩 인하
- 52%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시작점을 상당히 올릴 예정임(현행은 57,585유로 이상부터 52% 세율이 적용됨)
- 저임금 실업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

-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 증대

■ 부가가치세의 경우 특별 경감세율의 정상화를 통한 세수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 6%인 특별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중 상당부분을 일반 세율(현행 21%)이 적용되도록 조정할 예정임
 - 특히 노동집약 서비스, 서적 등의 품목에 대한 특별 경감세율 혜택을 폐지할 것임
 - 다만 기본적인 음식품 종류에는 현행 특별 경감세율이 여전히 적용될 것임

■ 이 외에도 투자소득 간주세율 변경 및 자동차세 조정 등의 기타 개정 사항을 담고 있음

- 투자소득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주소득세(deemed yield tax)를 조정할 계획임
 -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일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에, 당해 투자 순자산의 4%에 해당하는 간주소득(deemed yield)에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간주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해당 4%의 간주소득률은 과도한 수준으로 보아 이를 하향 조정할 계획임
 - 저축,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 실제 시장에서 관측되는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간주소득률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됨
 - 간주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30%의 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임
- 친환경 자동차 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세

6) www.ibfd.org 및 www.ey.com 등 참조

(motor vehicle tax)를 개편할 예정임

- 회사 임원 및 주주 등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계획임
- 지방정부의 세원 확충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함
 - (i) 자가소유 주택 및 사업용 건물 사용에 따른 부동산세 및 (ii) 주민세(residence tax) 도입 등의 세원 확보 방안을 계획 중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4. EU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인세제 운용을 위한 실천 방안을 발표⁷⁾

-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15년 6월 17일 자료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인세제 운용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한 보고서⁸⁾를 발행함
 - 동 보고서에서는 조세회피 방지, 지속적 세원확보, EU 내 사업활동에 대한 공통의 과세기준 도입 등을 위한 일련의 실행계획(initiatives)을 개괄하고 있음
- EU 내의 사업활동에 대해 공통의 단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방안(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CCCTB’)을 다시금 재조명함
 - CCCTB는 2011년 EU 집행위원회에서 제기한 바 있으며, EU 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공통의 단일 기준에 따라 과세소득을 결정함으로써 국가 간 상이한 세법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임
 - CCCTB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별 상이한 세법체

계를 이용하여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클 것임

- 또한 CCCTB를 통해 단일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여러 국가에 걸쳐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조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CCCTB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동 제도의 효과적 도입 방안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실천 방안을 2016년 초반에 발표할 계획임

-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Eusuring effective taxation where profits are generated) 법인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함
 - EU 내 사업체들이 관련 소득을 창출하는 곳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국적 기업들이 실제 소득 창출과는 관련이 낮은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가 빈번함
 - CCCTB 이외에도 여러 관련 수단을 동원하여 실제 소득 발생지에서의 과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이전가격제도(transfer pricing system)를 정비하여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 이전을 방지
 - 조세특혜(preferential tax regime)를 부여하는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련 요건을 강화

7) www.ibfd.org 및 http://ec.europa.eu 참조

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 Fair and Efficient Corporate Tax System in the European Union: 5 Key Areas for Action,"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17.6.2015 COM(2015) 302 final.



- 역외 국가와의 협력 등을 통해 조세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함
 - EU 집행위원회는 조세협력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리스트(list of third country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를 발표해 오고 있음
 - 향후 상기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재검토·갱신할 예정이며, 해당 국가들이 과세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5. OECD는 BEPS Action Plan 중 국가별 보고(Action 13)에 대한 실행보고서를 발표⁹⁾

- OECD는 2015년 6월 8일자로 BEPS Action Plan 13과 관련하여 국가별 이전가격 자료 제출의 실행방안에 대한 보고서¹⁰⁾를 발표함
 - 이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BEPS Action Plan 13 (country-by-country reporting)과 관계된 것임
 - BEPS Action Plan 13은 다국적 기업의 사업 활동 내역에 대한 각 국가 과세당국의 이해 증진을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OECD에서 2014년 9월에 발표한 Action Plan 13 관련 보고서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각 관련 국가별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양식을 제시한 바 있으며, 후속 작업을 통해 국가별 보고의 작성 주체, 기한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해 왔음

- 이번에 발표된 국가별 자료 제출 실행방안 보고서에는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보고를 법제화하는 데 참고할 모델규정(model legislation) 및 과세당국 간 합의문 예시(mode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s) 안을 제시함

- 국가별 보고에 대한 모델규정에서는 보고서 제출 주체 및 관련 의무사항 등에 대한 법조문을 제시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당해 소재지 국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동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각 국가에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 세전손익, 납세액, 자본 및 이익 잉여금, 종업원 수, 유형자산 및 현금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당해 모델규정은 특정 국가의 헌법, 법률 체계 및 조세규정 등을 감안한 것은 아니며, 각 국가들은 당해 모델을 자국의 법 체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과세당국 간 합의에 대한 예시 문안은 국가별 보고서를 과세당국 간에 교환하는 것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됨
 - 동 합의문안은 국가별 보고서 관련 과세당국 간에 자동적으로 교환(automatically exchange)하기 위한 규정 및 절차를 다루고 있음
 - 다국적 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해당 소재지 과세당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은 이를 다국적 기업이 사업활동을 영위

9) www.ibfd.org 및 www.oecd.org 참조

10) "Action 13:Country-by-Country Reporting Implementation Package," the OECD, 2015.

하는 모든 국가의 과세당국들에게 제공하게 됨
 • 이를 위하여 동 합의문안은 기본적으로 다수 과세 당국간 합의(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의 형식을 취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6. 대만 -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¹¹⁾

- 대만 입법원(Legislative Yuan)은 2015년 6월 5일 부동산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보유기간에 따른 다른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 기존에는 개인의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고 있었으며,¹²⁾ 건물은 다른 소득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있었음
 - 이러한 과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산부터 적용되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였으나 2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¹³⁾
- 과세대상은 대만 국내의 토지와 건물이나 일부 예외가 존재함
 - 가구가 영업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거주목적 등으로 6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4백만대만달러까지 과세를 면제하고 초과금액은 10%의 단일세율로 과세함

- 관련 법에 따른 농업을 위한 토지, 몰수되는 토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등은 과세면제함
-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에게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본소득세가 과세됨¹⁴⁾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의 시장가치에서 취득원가, 기타 비용 및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稅, Land value incremental tax)가 과세되는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세율은 보유기간 및 거주자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보유기간이 길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됨
 - 거주자 개인은 15~45%, 비거주자 개인 및 법인은 35~45%로 과세됨
 - 법인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상의 경상소득으로 간주되어 17%의 법인세율로 과세됨

〈표 2〉 자본소득세율

(단위: %)

보유기간	거주자 개인	거주자 법인	비거주자 개인 및 법인
1년 미만	45	17 ¹⁾	45
1년 이상~2년 미만	35		35
2년 이상~10년 미만	20		-
10년 이상	15		-

주: 1)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됨
 출처:立法院 國會圖書館(<http://npl.ly.gov.tw/do/www/newRecord>) 표로 재구성

11) 立法院 國會圖書館(<http://npl.ly.gov.tw/do/www/newRecord>), 增訂所得稅法第四條之四、第四條之五、第十四條之四至第十四條之八、第二十四條之五、第一百零八條之二及第一百二十五條之二條文；並修正第一百二十六條條文。
 12) 양도차익이 아닌 별도로 산정된 토지가치증가분에 대해 10~40%의 토지증치세가 과세되고 있었음(Y. Lin, Taiwan-Individual Taxation sec. 4., Country Surveys IBFD).
 13) Ernst & Young, "Taiwan amends capital gains tax provisions," *Global Tax Alert*, 11 June 2015, p. 1.
 14) Ernst & Young, op. cit.



- 단, 직장 이직 및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내 처분하더라도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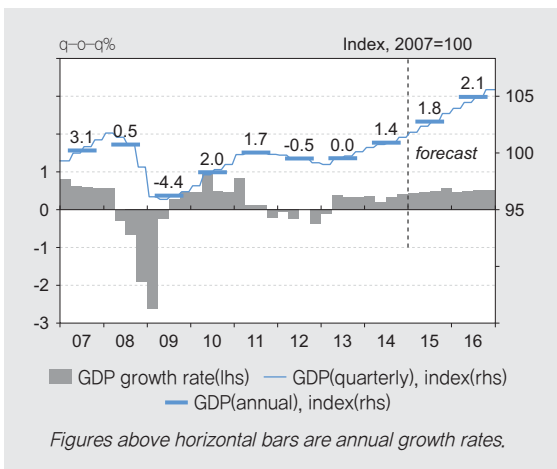
〈자료 수집 및 정리: 정훈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경제전망¹⁾(2015 봄) 발표(2015.5.5.)²⁾
 - (성장률) 저유가, 안정된 세계 경제성장, 유로화 약세, EU 내 경기부양 정책, 양적 완화 영향 등의 요인으로 유럽의 경제 회복이 강화될 전망
 - 2015년 실질GDP 성장률은 유로지역 1.5%(겨울 전망 대비 0.2%p 증가), EU 회원국 1.8%(겨울 전망 대비 0.1%p 증가)로 전망
 - 2016년 GDP 성장률은 유로지역 1.9%, EU 회원국 2.1%(겨울 전망과 동일)로 전망

[그림 1] EU 실질GDP



출처: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15*, 2015, Graph I.1.

- (물가) 2015년 상반기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거의 0을 유지하다 하반기부터 개선되어 2016년은 더욱 상승할 전망
 - EU 및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은 2015년 0.1%, 2016년 1.5%로 예상
 - 내수 강화, 생산갭 축소, 원자재가 하락 영향 축소,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입 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부터 소비자 물가는 상승할 전망
- (실업률)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동시장이 서서히 개선될 전망
 - 2015년 실업률은 EU 지역 9.6%, 유로지역 11.0%로 하락할 전망
 - 특히 노동시장 개혁을 시행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업률 하락이 계속되어 2016년 실업률은 EU 지역 9.2%, 유로지역 10.5%로 전망
- (재정수지) 재정건전화 노력, 경기 회복, 채무 이자 감소 등으로 EU 지역 재정 상황 개선이 계속될 전망
 - (재정기준) EU 국가들의 재정기준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임
 - (재정수지)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EU 회원국이 2015년 2.5%, 2016년 2.0%, 유로지역 또한 2015년 2.0%, 2016년 1.7%로 계속 감소할 전망
 - (채무비율)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14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로 감소하여 2016년에 EU 회원국은 88.0%, 유로지역은 94.0%를 기록할 전망
- (주요 리스크)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지만 상방 및 하방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룰 전망
 - (하방 리스크 요인) 우크라이나, MENA³⁾ 지역

1) EU는 매년 3회(2월, 5월, 11월) "Economic Forecasts"를 통해 경제 전망을 발표함

2) EU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eu/forecasts/2015_spring_forecast_en.htm

3)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등의 지정학적 긴장, 예상보다 빠른 유류 생산 조정, 금융 시장 변동성, 4) 구조개혁 이행 지연 등
 - (상방 리스크 요인) 유가 하락, ECB의 양적완화, EU의 투자 계획 등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거나 오

래 지속될 경우
 - (인플레이션 관련 리스크) ECB의 양적완화와 경제성장률 전망 개선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완화됨

〈표 1〉 유로 지역 및 EU 국가의 2015년 경제전망

(단위: GDP 대비 %)

국가	실질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¹⁾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벨기에	0.3	1.0	1.1	1.5	1.2	0.5	0.3	1.3	8.4	8.5	8.4	8.1	-2.9	-3.2	-2.6	-2.4
독일	0.1	1.6	1.9	2.0	1.6	0.8	0.2	1.8	5.2	5.0	4.6	4.4	0.1	0.7	0.6	0.5
에스토니아	1.6	2.1	2.3	2.9	3.2	0.5	0.2	1.9	8.6	7.4	6.2	5.8	-0.2	0.6	-0.2	-0.1
아일랜드	0.2	4.8	3.6	3.5	0.5	0.3	0.4	1.5	13.1	11.3	9.6	9.2	-5.8	-4.1	-2.8	-2.9
그리스	-3.9	10.8	0.5	2.9	-0.9	-1.4	-0.5	0.8	27.5	26.5	25.6	23.2	-12.3	-3.5	-2.1	-2.2
스페인	-1.2	1.4	2.8	2.6	1.5	-0.2	-0.6	1.1	26.1	24.5	22.4	20.5	-6.8	-5.8	-4.5	-3.5
프랑스	0.3	0.4	1.1	1.7	1.0	0.6	0.0	1.0	10.3	10.3	10.3	10.0	-4.1	-4.0	-3.8	-3.5
이탈리아	-1.7	-0.4	0.6	1.4	1.3	0.2	0.2	1.8	12.1	12.7	12.4	12.4	-2.9	-3.0	-2.6	-2.0
키프로스	-5.4	-2.3	-0.5	1.4	0.4	-0.3	-0.8	0.9	15.9	16.1	16.2	15.2	-4.9	-8.8	-1.1	-0.1
라트비아	4.2	2.4	2.3	3.2	0.0	0.7	0.7	2.2	11.9	10.8	10.4	9.4	-0.7	-1.4	-1.4	-1.6
리투아니아	3.3	2.9	2.8	3.3	1.2	0.2	-0.4	1.7	11.8	10.7	9.9	9.1	-2.6	-0.7	-1.5	-0.9
룩셈부르크	2.0	3.1	3.4	3.5	1.7	0.7	0.8	2.1	5.9	5.9	5.7	5.4	0.9	0.6	0.0	0.3
몰타	2.7	3.5	3.6	3.2	1.0	0.8	1.3	1.9	6.4	5.9	5.9	5.9	-2.6	-2.1	-1.8	-1.5
네덜란드	-0.7	0.9	1.6	1.7	2.6	0.3	0.2	1.3	7.3	7.4	7.1	6.9	-2.3	-2.3	-1.7	-1.2
오스트리아	0.2	0.3	0.8	1.5	2.1	1.5	0.8	1.9	5.4	5.6	5.8	5.7	-1.3	-2.4	-2.0	-2.0
포르투갈	-1.4	0.9	1.6	1.8	0.4	-0.2	0.2	1.3	16.4	14.1	13.4	12.6	-4.8	-4.5	-3.1	-2.8
슬로베니아	-1.0	2.6	2.3	2.1	1.9	0.4	0.1	1.7	10.1	9.7	9.4	9.2	-14.9	-4.9	-2.9	-2.8
슬로바키아	1.4	2.4	3.0	3.4	1.5	-0.1	-0.2	1.4	14.2	13.2	12.1	10.8	-2.6	-2.9	-2.7	-2.5
핀란드	-1.3	-0.1	0.3	1.0	2.2	1.2	0.2	1.3	8.2	8.7	9.1	9.0	-2.5	-3.2	-3.3	-3.2
Euro area	-0.4	0.9	1.5	1.9	1.4	0.4	0.1	1.5	12.0	11.6	11.0	10.5	-2.9	-2.4	-2.0	-1.7
불가리아	1.1	1.7	1.0	1.3	0.4	-1.6	-0.5	1.0	13.0	11.4	10.4	9.8	-0.9	-2.8	-2.9	-2.9
체코	-0.7	2.0	2.5	2.6	1.4	0.4	0.2	1.4	7.0	6.1	5.6	5.5	-1.2	-2.0	-2.0	-1.5
덴마크	-0.5	1.1	1.8	2.1	0.5	0.3	0.6	1.7	7.0	6.6	6.2	5.9	-1.1	1.2	-1.5	-2.6
크로아티아	-0.9	-0.4	0.3	1.2	2.3	0.2	0.1	1.3	17.3	17.3	17.0	16.6	-5.4	-5.7	-5.6	-5.7
헝가리	1.5	3.6	2.8	2.2	1.7	0.0	0.0	2.5	10.2	7.7	6.8	6.0	-2.5	-2.6	-2.5	-2.2
폴란드	1.7	3.4	3.3	3.4	0.8	0.1	-0.4	1.1	10.3	9.0	8.4	7.9	-4.0	-3.2	-2.8	-2.6

4)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은 예상했던 자본조달 비용 개선을 위협할 수 있음

〈표 1〉의 계속

(단위: GDP 대비 %)

국가	실질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¹⁾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루마니아	3.4	2.8	2.8	3.3	3.2	1.4	0.2	0.9	7.1	6.8	6.6	6.4	-2.2	-1.5	-1.6	-3.5
스웨덴	1.3	2.1	2.5	2.8	0.4	0.2	0.7	1.6	8.0	7.9	7.7	7.6	-1.4	-1.9	-1.5	-1.0
영국	1.7	2.8	2.6	2.4	2.6	1.5	0.4	1.6	7.6	6.1	5.4	5.3	-5.7	-5.7	-4.5	-3.1
EU	0.0	1.4	1.8	2.1	1.5	0.6	0.1	1.5	10.9	10.2	9.6	9.2	-3.2	-2.9	-2.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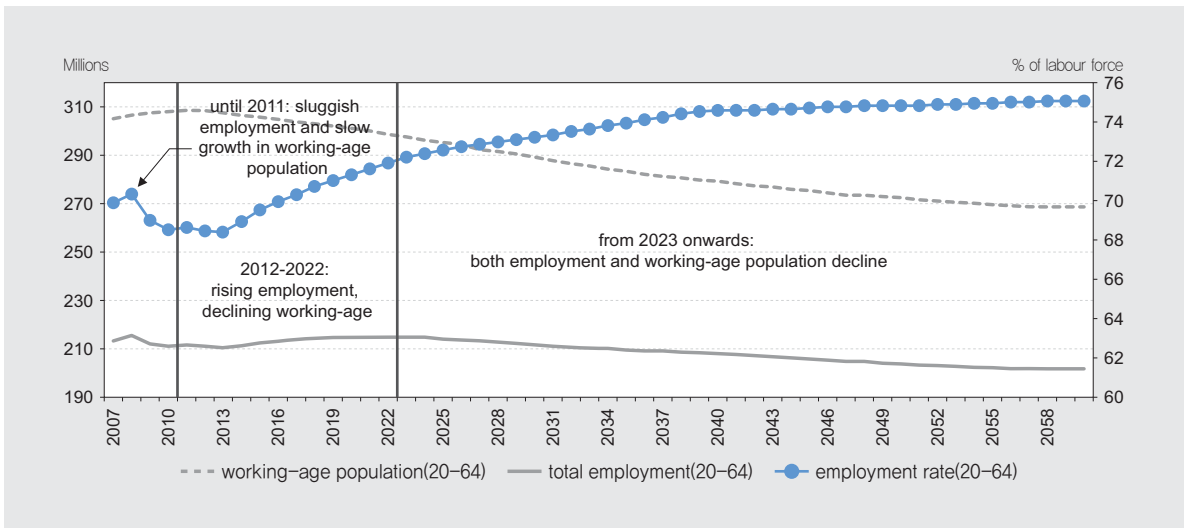
주: 1) 일반정부 재정수지(net lending(+), net borrowing(-))
출처: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15*, 2015.

- EU 집행위원회, 2015 Ageing Report⁵⁾ 발표(2015.5. 12.)⁶⁾
 - (인구 전망) 출산율, 기대수명, 인구 이동 등의 변화로 EU 지역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전망됨
 - (인구수) EU 지역 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2050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할 전망
* 2013년: 5억 7백만명 → 2050년: 5억 2,600만명(2013년 대비 5% 증가) → 2060년: 5억 2,300만명(2013년 대비 3% 증가)
- (기대수명) 2060년에 기대수명은 남성이 77.6세

[그림 2] 인구 및 고용자 수 변화(EU)

(단위: 백만명)



출처: EU 집행위원회, *The 2015 Ageing Report*, 2015, Graph 1.

5) Ageing Report는 EU 지역의 인구 변화가 경제 및 재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분석한 보고서로 3년마다 발표됨.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6) EU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uropean_economy/2015/ee3_en.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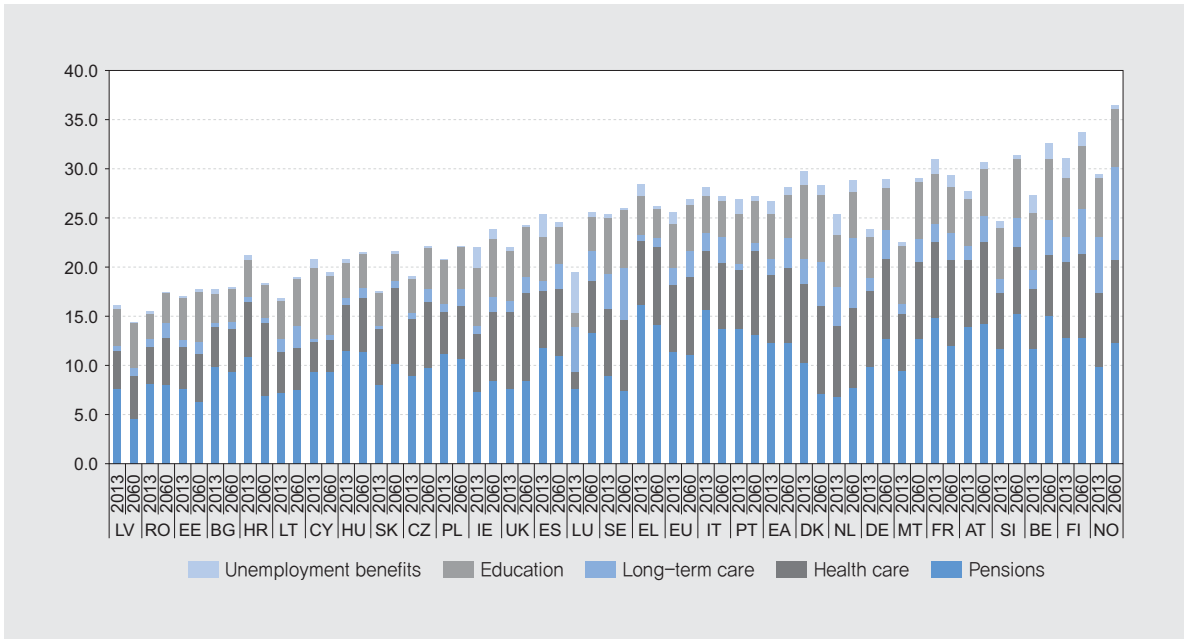
- 에서 84세로, 여성이 83.1세에서 89.1세로 증가
- (출산율) EU 지역 출산율은 2013년 1.6%에서 2060년 1.76%로 소폭 증가
- (노년부양비)⁷⁾ EU 지역 노년부양비는 2013년 27.8%에서 2060년 50.1%로 증가
- (노동인구 전망)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 노동공급은 감소하고 고용률은 더욱 증가할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경제활동참가율(20~64세)은 2013년 76.5%에서 2060년 80.1%로 증가. 특히 연금개혁의 영향으로 5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두드러짐
 - (노동공급) EU 지역 노동공급(20~64세) 수준은 2013년~2023년까지는 안정적이나 2023~2060년은 8.2% 감소할 전망
 - (고용률) EU 지역 고용률(20~64세)은 점차 증가해 2013년 68.4%, 2023년 72.2%, 2060년 75%로 예상됨
 - (취업자 수) EU 지역 취업자 수(20~64세)는 2022년(2억 1,500만명)까지 증가하여 정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할 전망(2060년 2억 2백만명)
- (거시경제 가정) 잠재 GDP 성장률(기준선 전망 기준)은 2013~2060년에 연평균 1.4%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2013~2060년 EU 지역의 고령화 관련 총지출*은 GDP의 1.4%p 증가(실업급여 제외 시 1.8%p 증가)해 2060년 27%를 기록할 전망(기준선 전망 기준)
 - * 고령화 관련 총지출(total age-related expenditure)은 연금, 보건 의료, 장기요양, 교육, 실업급여 지출을 포함하며 협의의 고령화 관련 지출(strictly age-related expenditure)은 이 중

- 실업급여를 제외함
- (분야별 지출 변화) 고령화 관련 총지출 증가는 주로 보건의료지출과 장기요양지출 증가에서 비롯됨
 - ☞ (보건의료지출) EU 지역 보건의료지출은 2013년 GDP 대비 6.9%에서 2013~2060년에 0.9%p 증가
 - ☞ (장기요양지출) EU 지역 장기요양지출은 2013년 GDP 대비 1.6%에서 2013~2060년에 1.1%p 증가
 - ☞ (교육지출) EU 지역 GDP 대비 교육지출 비율은 2013년 GDP 대비 4.7%에서 2060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을 전망
 - ☞ (연금지출) EU 지역 공적연금 지출은 2013년 11.3%에서 2040년까지 0.4%p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3~2060년에 0.2%p 감소
 - ☞ (실업급여지출) EU 지역 실업급여지출은 2013년 GDP 대비 1.1%에서 2013~2060년에 0.8%p 감소
- (국가별 지출 변화) 공적 연금 방식, 연금 개혁 효과 등에 따라 회원국별로 지출 변동의 차이를 보임

7) old-age dependency ratio: 16~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그림 3] 국가별 고령화 관련 지출(2013년, 2060년)

(단위: % of GDP)



출처: EU 집행위원회, *The 2015 Ageing Report*, 2015, Graph 3.

- (리스크 시나리오) 전망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변화는 다음과 같음
 - ☞ (TFP 리스크 시나리오)⁸⁾ 주로 연금지출에 영향을 미쳐 고령화 관련 총지출은 기준선 전망 대비 GDP의 3분의 1%p 더 증가
 - ☞ (AWG 리스크 시나리오)⁹⁾ 주로 보건의료지출과 장기요양 지출에 영향을 미쳐 고령화 관련 총지출은 기준선 전망 대비 GDP의 2.1%p 더 증가
- (2012년 전망과 비교) 연금, 의료 등 최근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개혁 등의 영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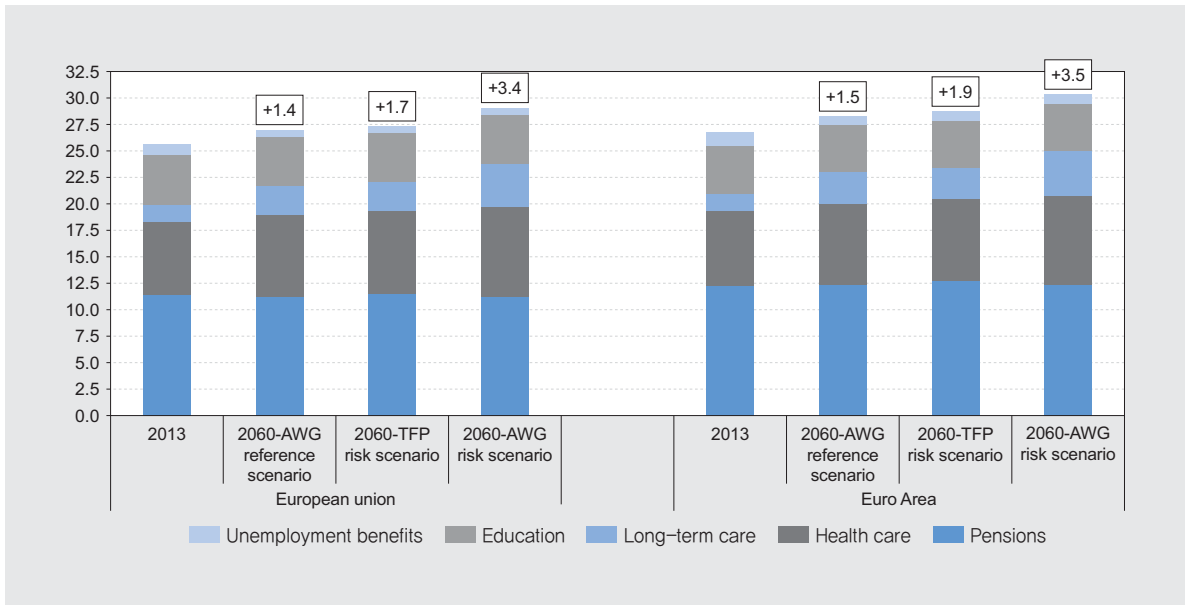
2012년 보고서 대비 전망 기간의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 폭은 감소

8)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선 전망보다 낮은 0.8%로, 2060년까지 평균 잠재GDP 성장률을 기준선 전망 대비 하락한 1.2%로 가정
 9) 기술 발전 등 인구 외적 요인이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분야 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를 가정



[그림 4] 시나리오별 고령화 관련 총지출(2013~2060)

(단위: % of GDP)



출처: EU 집행위원회, *The 2015 Ageing Report*, 2015, Graph 5.

- EU 재무장관회의 개최, 거시경제 불균형 및 구조 개혁, *2015 Ageing Report*, 유럽 투자계획 등 논의 (2015.5.12.)¹⁰⁾
 - (거시경제불균형) 거시경제불균형 관련 『2015 심층 검토보고서(IDR: In-Depth Review)』¹¹⁾를 채택하고 구조 개혁을 위한 강력한 책임의 필요성 강조
 - (*Ageing Report*)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고령화 관련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금, 의료, 장기요양 시스템 개혁 등 진행 중인 정책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
- (유럽 투자계획)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기금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 EFST) 관련 유럽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 대해 논의
- 유로그룹 회의, 그리스 구제금융, 유로지역 경제상황 등에 대해 논의 (2015.5.11.)¹²⁾
 - (그리스 관련) 그리스 당국과 채권단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고 남은 이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10) Council of the EU: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colin/2015/05/12/>

11) 심층검토보고서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15년 3월 2호 참고

12) Council of the EU: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5/05/11-eurogroup-jd-remarks/>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5/05/11-eurogroup-statement-greece/>

- 유로지역 경제
 - (경제전망 관련) 경기 회복이 계속되려면 더 많은 투자와 고용,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장친화적 구조개혁과 건전한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임
 - (건전 재정) 대부분 유로 국가에서 재정 체계가 강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체계가 건전한 재정성과 실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함
 - (경제 거버넌스 강화) European Semester 합리화, 이행 강화, 구조 개혁에 대한 영향력 제고 등 유로 지역 경쟁력 및 회복력 증대를 위한 EMU 경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해란 연구원)

 호주

1. 예산 · 결산 등

- 연방정부, FY2015-16 예산안 발표(2015.5.12.)¹³⁾
 - (경제) FY2015-16 실질GDP 성장률 2.75%, 실업률 6.5%, 물가상승률 2.5% 전망
 - FY2014-15 MYEFO 전망¹⁴⁾ 대비 FY2015-16 및 FY2016-17의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철광석 가격 급락, 임금성장 약화, 실업률 증가 등의 요인에 기인
 - 반면 초저금리, 낮은 석유 가격, 낮은 환율 및 글로벌 경제 회복세와 같은 요인들은 향후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표 2〉 주요 경제 변수

(단위: %)

	Forecasts			Projections	
	2014 -15	2015 -16	2016 -17	2017 -18	2018 -19
실질GDP 성장률	2.5	2.75	3.25	3.5	3.5
고용률	1.5	1.5	2	2	2
실업률	6.25	6.5	6.25	6	5.75
소비자물가지수	1.75	2.5	2.5	2.5	2.5
명목GDP 성장률	1.5	3.25	5.5	5.25	5.5

주: 경제성장률, 고용률, 소비자물가지수,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실업률은 6월 분기(June Quarter) 기준
출처: Budget 2015-16 No. 1, 2015. 5.

- (재정) FY2015-16 재정수입 4,054억호주달러, 재정지출 4,345억호주달러 편성, 재정수지 및 예산수지는 각각 330억호주달러, 351억호주달러 적자 예상
 - 예산수지는 FY2014-15 MYEFO 전망과 동일하게 FY2019-20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함
 - 순채무는 FY2016-17에 GDP 대비 18.0%로 정점에 다다른 후 FY2025-26 GDP 대비 7.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13) 출처: 예산안 홈페이지, <http://budget.gov.au/index.htm>

14)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MYEFO: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5), 2014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IX. 호주 참고



〈표 3〉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단위: 십억호주달러, %)

	Actual	Estimates			Projections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재정수입 (Revenue)	373.9	384.1	405.4	433.4	466.2	501.3
GDP 대비 비율	23.6	23.9	24.5	24.8	25.4	25.9
재정지출(Expenses)	413.8	420.3	434.5	452.7	471.8	499.4
GDP 대비 비율	26.2	26.2	26.2	25.9	25.7	25.8
재정수지 (Fiscal balance) ¹⁾	-43.7	-39.4	-33.0	-23.4	-9.2	-3.2
GDP 대비 비율	-2.8	-2.5	-2.0	-1.3	-0.5	-0.2
예산수지 (Underlying cash balance) ²⁾	-48.5	-41.1	-35.1	-25.8	-14.4	-6.9
GDP 대비 비율	-3.1	-2.6	-2.1	-1.5	-0.8	-0.4

주: 1)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2) 현금주의기준,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출처: Budget 2015-16 No. 1, 2015.5.

- (예산 기초 및 우선순위) 호주의 이번 예산안은 더 강한 경제(stronger economy)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성장, 기회의 창출과 더불어 재정적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초점
- (중소기업¹⁵⁾ 지원 정책)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 시행 (55억호주달러)
 - ☞ 예산안 발표시점~2017.6월 사이에 구입한 2만호주달러 이하 자산에 대한 세금 공제(17.5억호주달러)
 - ☞ 30%→28.5%로 1.5%p 법인세율 감소(14.5억호주달러)
 - ☞ 비법인(unincorporated)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간 1천호주달러까지 5% 감세 혜택(18억호주달러)

- ☞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창업 지원 등
- (가족 지원 정책) 노동참여율을 높이고 질 높은 조기교육 제공을 위한 정책 시행(44억호주달러)
 - ☞ 향후 5년간 보육 지원(child care assistance)을 위해 35억호주달러 추가 지원¹⁶⁾
 - ☞ 아동 조기교육을 위해 2016-17 2년간 preschool programme에 8억 4,300만호주달러 투자
 - ☞ 일반적 보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모지원 시범사업(nannies trial) 시행에 2억 5천만호주달러 지원
 - ☞ 취약 및 장애아동 등을 위한 보육 안전망에 8억 6,900만호주달러 지원 등
- (조세 및 급여의 공정성 확보)
 - ☞ 다국적 기업 탈세 방지법(multinational

15) 중소기업 기준: 연매출 200만호주달러 이하
 16) 2017.7월부터 기존의 보육료 지원(Child Care Subsidy)은 가구소득 단일기준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경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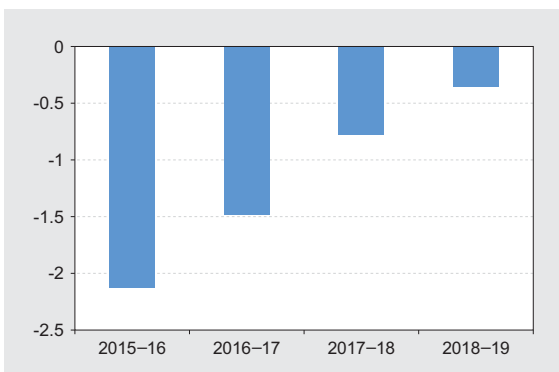
anti-avoidance law)을 통해 약 30개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디지털 다운로드에 대한 부가가치세(GST)를 부과할 방침

- ☞ 2016.7월부터 육아휴직급여(parental leave pay) 중복 수혜 금지: 고용주로부터 받는 수당과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 동시 신청 불가
- ☞ 복지급여 부정수급 단속 등을 통한 15억호주 달러 절감 계획
- ☞ 노인연금에 대한 자산심사 기준 및 taper rate 변경¹⁷⁾ 등

- (국가 안보 강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에 12억호주달러 투자
- (예산 회복) 예산 적자는 전년 대비 60억호주달러 감소한 351억호주달러가 될 전망이며, FY2018-19까지 70억호주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

[그림 5] 향후 4년간 예산수지 전망

(단위: % of GDP)



출처: Budget 2015-16 Overview, 2015.5.

<표 4> FY2015-16 예산안의 기능별 지출

(단위: 십억호주달러)

	Estimates			Projections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일반 공공서비스	25.2	22.2	22.9	22.2	22.5
국방	24.6	26.3	26.1	27.6	28.8
공공질서 및 안전	4.6	4.9	4.9	4.7	4.8
교육	31.2	31.9	33.1	34.1	35.1
보건	67.0	69.4	71.6	74.1	77.0
사회보장 및 복지	149.1	154.0	160.0	170.7	186.9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4.9	5.3	5.2	5.0	4.6
문화	3.5	3.5	3.4	3.3	3.3
에너지·연료	7.0	6.7	6.7	6.9	7.2
농림·임업·수산	2.7	3.1	2.9	2.8	2.4
광업·건설·제조	3.2	3.1	3.1	3.1	3.1
교통·통신	6.5	8.6	11.2	9.3	6.3
기타 경제부문	10.7	9.8	8.9	8.9	9.0
기타	80.0	85.7	92.9	99.1	108.5
총지출	420.3	434.5	452.7	471.8	499.4

출처: Budget 2015-16 No. 1, 2015.5.

2. 기타

- 호주 중앙은행(RBA), 기준금리 2.0%로 0.25%p 하향 조정(2015.5.5.)¹⁸⁾
 - 2015.2월 2.25%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¹⁹⁾한 이후 3개월 만의 조정이며, 이번 금리 추가 인하로 사상 최저를 기록
 -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되며 인플레이션 전망 또한 향후 1~2년 동안은 목표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17) 자세한 노인연금 개혁 관련 내용은 기타의 "노인연금 개혁 시행방안 발표"를 참고
 18) 출처: 호주중앙은행(RBA), <http://www.rba.gov.au/media-releases/2015/mr-15-08.html>
 19) 「재정동향」 제2월 2호 참고



- 반면 기준금리 인하로 이미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주택시장 거품붕괴가 우려되며,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규제기관들과 공조할 것임을 언급

■ 호주 연방정부, 노인연금 개혁 시행방안 발표(2015. 5.7.)²⁰⁾

•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사회서비스부 장관은 노인연금 수급 자격 기준을 변경하는 노인연금 개혁안을 발표

- (배경)

☞ 연금제도의 공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수급자의 자산 심사 강화 등을 통한 고소득 은퇴자의 연금 혜택 제한

- (주요내용)

☞ 전액연금 수급자(full pensioners)에 대한 자산 기준 완화

* 주택소유자(주택제외): (독신) 202,000 → 250,000호주달러, (부부) 286,500 → 375,000호주달러
무주택자: (독신) 348,500 → 450,000호주달러, (부부) 433,000 → 575,000호주달러

☞ 부분연금 고소득 수급자(part pensioners)에 대한 자산 기준 강화

* 주택소유자(주택제외): (독신) 775,000 → 547,000호주달러, (부부) 1,150,000 → 823,000호주달러
무주택자: (독신) 922,000 → 747,000호주달러, (부부) 1,298,000 → 1,023,000호주달러

☞ taper rate 재변경²¹⁾: 전액연금 수령 최소 기준(minimum threshold for a full pension)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000호주달러당 연금수령액 3호주달러씩(기존에는 1.5호주달러) 감소하도록 변경

- (효과)

☞ 동 개혁을 통해 17만명의 전액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2주당 30호주달러 증가하고, 5만명의 부분연금 수급자들이 전액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될 전망

☞ 부분연금의 경우 9만 1천여 명의 현 수급자들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고, 23만 5천명의 연금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노인연금 제도 변경은 2017.1월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4년간 24억호주달러가 절감될 전망

■ 호주 중앙은행(RBA), 2015년 경제전망 하향 조정(2015.5.8.)²²⁾

• RBA는 “Statement on Monetary Policy”²³⁾에서 2015년 및 향후 전망기간 동안의 호주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변화를 발표

- (경제) 호주 경제는 지속적인 저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1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월 전망(2.75%)보다 하락한 2.25%로 전망

☞ 경제성장률 둔화는 호주의 최대 수출품목인 철광석 가격 폭락이 가장 큰 요인이며, 중국 경제 부진, 실업률 상승 등에 기인

20) 출처: 호주 사회복지서비스부, <http://scottmorrison.dss.gov.au/media-releases/fairer-access-to-a-more-sustainable-pension>
<http://scottmorrison.dss.gov.au/transcripts/press-conference-sydney-1>

21) 소득이 연금수령 기준소득에서 1,000호주달러가 넘을 때마다 감소하는 소득을 의미. 1,000호주달러당 3호주달러가 감소하였으나, 하워드 정부 당시(2007년) 1.5호주달러로 taper rate가 낮아진 바 있음

22) 출처: 호주중앙은행(RBA), <http://www.rba.gov.au/publications/smp/2015/may/html/index.html>

23) 연간 4회(2월, 5월, 8월, 11월) 발표되며, 세계경제 및 환율 시장, 국내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경제전망을 수정발표

〈표 5〉 경제성장률 전망(연평균)

(단위: %)

	2014	2014/15	2015	2015/16	2016	2016/17
실질GDP 성장률	2.7	2.25	2.25	2.0-3.0	2.5-3.5	2.5-4.0

출처: RBA,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May," 2015(2015.5.8).

- (인플레이션) 자동차 연료 가격 하락 및 탄소세 폐지의 영향으로 2015년 중반까지 물가상승률은 2%를 밑돌 것으로 전망
- (실업률) 2015.4월 현재 6.2%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은 2016년 중반 6.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우려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전문연구원〉

〈표 6〉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2014 Q2	2014 Q3	2014 Q4	2015 Q1	2014 연간실적	2015 연간전망
GDP 성장률	-0.1	0.2	0.0	0.6	0.2	0.7
가계소비	0.5	0.3	0.1	0.8	0.6	1.2
정부소비	0.4	0.5	0.5	0.4	1.5	1.1
총고정자본형성 (GFCF)	-0.6	-0.5	-0.4	-0.2	-1.2	-0.9
수출	0.2	0.9	2.5	0.9	2.4	3.2
수입	0.9	1.8	1.5	2.3	3.9	4.6
GDP 기여도	국내수요	0.2	0.2	0.1	0.5	0.5
	재고투자	-0.1	0.3	-0.3	0.5	0.2
	대외무역	-0.2	-0.3	0.2	-0.5	-0.5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2015.5.13.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프랑스

1. 기타

-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 발표(2015.5.13.)²⁴⁾
 - 2015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로 2014년 4분기(0.0% 성장률)보다 강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가계 소비지출 증가와 운송장비에 대한 재고투자 증가로 내수부문과 재고투자 부문의 GDP 기여도는 각각 +0.5%p씩을 기록한 반면, 수출둔화와 수입증대로 대외무역의 GDP 기여도는 -0.5%p로 하락

24) 통계청, http://www.insee.fr/en/indicateurs/ind26/20150513/doc_idconj_26.pdf

25) 재무부, Presse Aktuelles 2015.5.7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5/05/2015-05-07-PM19-Steuerschaetzung.html>

재무부, Presse Aktuelles 2014.11.6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4/11/2014-11-06-PM46-steuerschaetzung.html>

독일

1. 예산 · 결산 등

- 연방재무부,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결과 발표(2015.5.7.)²⁵⁾
 - 2015년 총세입은 6,665억유로로 전년 대비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상황의 호전으로 2019년까지 매년 3.5% 이상의 증가율이 기대됨
 - 금번 추계치는 지난 11월 대비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용, 가구소득, 기업수익 증가로 GDP 성장률 등의 거시경제 수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
 - 지난 11월 추계에서는 2015~2019년 총세입을 각



각 2,780억유로, 2,900억유로, 2,993억유로, 3,110억유로, 3,223억유로로 전망
 - 지난 11월 추계에 활용된 실질GDP 성장률은 2013~2015년 각각 0.1%, 1.2%, 1.3%

〈표 7〉 세수추계 결과¹⁾

(단위: 억유로,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방정부	2,707 (4.2)	2,803 (3.5)	2,930 (4.6)	3,024 (3.2)	3,147 (4.1)	3,263 (3.7)
주정부	2,543	2,626	2,720	2,815	2,922	3,020
기초자치단체	876	913	948	983	1,012	1,048
EU ²⁾	310	323	316	334	346	355
총세입	6,436 (3.9)	6,665 (3.6)	6,914 (3.7)	7,155 (3.5)	7,427 (3.8)	7,687 (3.5)

주: 1) ()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며, '15~'19년 해당수치는 추정치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출처: 재무부, Presse Aktuelles 2015.5.7.

〈표 8〉 거시경제 주요 기본수치

(단위: %, 백만명)

	2013	2014	2015	2016
실질GDP 성장률	0.1	1.6	1.8	1.8
소비자물가 상승률	1.5	0.9	0.5	1.4
유급활동인구(국내)	42.3	42.7	43.0	43.1
실업인구(국내)	2.95	2.90	2.79	2.77

주: '13~'14년 해당수치는 통계청 자료('15.2월 기준)

출처: 경제에너지부, Pressemitteilung 2015.4.22.

5대 경제연구소,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의 재무부들, 기초자치단체 전국연합회가 참여

- 연방재무부는 간사 역할을 하며, 연방경제 에너지부는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여 거시경제의 기본수치(GDP 성장률, 실업인구 등)를 발표(통상 4월, 10월)

- 5대 경제연구소는 독일경제연구소(DIW), 뮌헨대학교 경제연구소(ifo), 쾰른대학교 세계경제연구소(IfW), 할레 경제연구소(IWH),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RWI)

• (세수추계) 작업반 구성 기관 중 5대 경제연구소,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연방재무부가 독립적으로 모두 각 세목에 대해 추정안을 제시

- 작업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추정방법이나 모형은 존재하지 않음

• (작업반 회의) 독립적 세수추계 결과를 기초로 작업반에서 논의를 통해 각 세목별로 합의에 도달(회의 기간은 통상 3일)

• (추계 발표) 작업반 회의 종료 후, 연방재무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세수추계 결과를 발표(통상 5월, 11월)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독일의 재정제도」, 2011.9.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참고 1 독일의 세수추계

- 독일의 세수추계는 연구능력을 갖춘 8개 기관들의 독립적인 추계 결과를 기초로 작업반 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방식을 취함
 - (작업반 구성) 연방재무부, 연방경제에너지부,

이탈리아

1. 기타

- 이탈리아 통계청, 경제전망보고서(Le prospettive per l'economia italiana) 발표²⁶⁾ (2015.5.7.)
 - 해당 보고서는 2015-2017년 이탈리아 경제 전망치를 제공함
 - 2015년 실질경제성장률은 0.7%를 기록하고, 이후 2016년에 1.2%, 2017년에 1.3%로 상승할 전망
 - 국내수요가 경기회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GDP 성장률에 각각 2015년 0.3%p, 2016년에

- 0.8%p, 2017년에 1.2%p 기여
- 유럽중앙은행(ECB)의 완화적 통화정책(accommodative monetary policy)과 경제전망 개선으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남
 - 국내수요는 2015년에 0.5%, 2016년에 0.7%, 2017년에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고용은 해당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으로, 실업률은 2015년에 12.5%로 감소하고 이후 2016년(12.0%)과 2017년(11.4%)에도 감소 추세를 이어갈 전망

〈표 9〉 이탈리아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질GDP	-1.7	-0.4	0.7	1.2	1.3
수입(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fob))	-2.3	1.8	2.8	3.8	5.0
수출(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fob))	0.5	2.7	3.7	4.6	4.9
국내 수요(Domestic demand (including inventories))	-2.5	-0.7	0.3	0.8	1.2
가계소비지출(Residential households consumption expenditure)	-2.9	0.3	0.5	0.7	0.9
정부지출(Government Consumption)	-0.2	-0.9	-0.8	-0.5	0.1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5.8	-3.3	1.2	2.5	2.8
GDP에 미치는 영향(Contribution to GDP)					
국내수요(Domestic demand)	-2.9	-0.6	0.3	0.8	1.1
국제수지(foreign balance)	0.8	0.3	0.4	0.4	0.2
재고(Inventories)	0.4	-0.1	0.0	0.0	0.0
가계소비지출 디플레이터(Households consumption expenditure deflator)	1.1	0.2	0.2	1.4	1.5
GDP 디플레이터(Gross domestic product deflator)	1.4	0.8	0.8	0.9	1.2
실업률(Unemployment rate)	12.1	12.7	12.5	12.0	11.4
무역수지(Trade balance: GDP 대비 비율)	2.3	3.2	4.1	4.7	4.9

출처: 이탈리아 통계청, *Le prospettive per l'economia italiana nel 2015-2017*.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26) 이탈리아 통계청, *Le prospettive per l'economia italiana nel 2015-2017*, <http://www.istat.it/it/archivio/159228>



일본

로 예상³⁰⁾

1. 기타

■ 일본은행, FY2015~2017 경제·물가전망 발표(2015. 5.1.)²⁷⁾

• FY2015~2017 실질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대를 유지할 전망

- (실질GDP 성장률) 2015년도 2.0%, 2016년도 1.5%, 2017년도 0.2%로 전망

☞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

☞ 2017년도는 소비세율 인상 전 갑작스러운 수요변동과 경기 순환적인 움직임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을 약간 밑도는 수준의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등락요인) 해외경제동향에 관한 불확실성, 2017년 4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기업과 가계의 중장기적인 성장기대²⁸⁾,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하락에 의해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 존재

-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0%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안정목표 2%를 향해 상승률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²⁹⁾

☞ 물가상승률은 2015년 0.8% → 2016년 2.0% → 2017년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 물가안정목표 도달 시기는 유가에 의해 좌우되지만, 현재 수준에서 완만한 상승을 전제로 2016년도 전반 무렵에 2%에 도달할 것

<표 10> FY2015~2017 정책위원회의 경제·물가전망

(단위: 전년 대비 %, < >안은 정책위원 전망의 중앙값)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소비세율 인상 영향 제외
2014	-1.0~-0.8 <-0.9>	2.8	0.8
1월	-0.6~-0.4 <-0.5>	2.9~3.2 <2.9>	0.9~1.2 <0.9>
2015	1.5~2.1 <2.0>	0.2~1.2 <0.8>	
1월	1.8~2.3 <2.1>	0.4~1.3 <1.0>	
2016	1.4~1.8 <1.5>	1.2~2.2 <2.0>	
1월	1.5~1.7 <1.6>	1.5~2.3 <2.2>	
2017	0.1~0.5 <0.2>	2.7~3.4 <3.2>	1.4~2.1 <1.9>

주: 1. 위 수치는 최댓값과 최솟값을 1개씩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 폭은 예측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2. 본 전망은 각 정책 위원이 이미 결정한 정책을 전제로 하여 향후 정책 운영에 대해서 시장 시세를 참고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한 것
 3. 유가(두바이)는 배럴당 55달러를 기준으로 전망기간 전반에 걸쳐 70달러대 초반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4. 이번 전망에서는 소비세율이 2017년 4월 10% 인상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각 정책 위원은 소비세율 인상 영향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전망계수를 작성하고 있음
 소비세율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전망은 세율 이 현행 과세 품목 모두에 전가된 것을 전제로 물가상승 기여를 계산한 후 +1.3%p를 정책위원회의 전망계수에 가산
 5. 2014년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3월은 전년도 2월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기여는 +2.0%p를 정책위원회 전망계수에 기계적으로 가산
 출처: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15年 4月)』, 2015.5.1.

27) 재무성,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15年 4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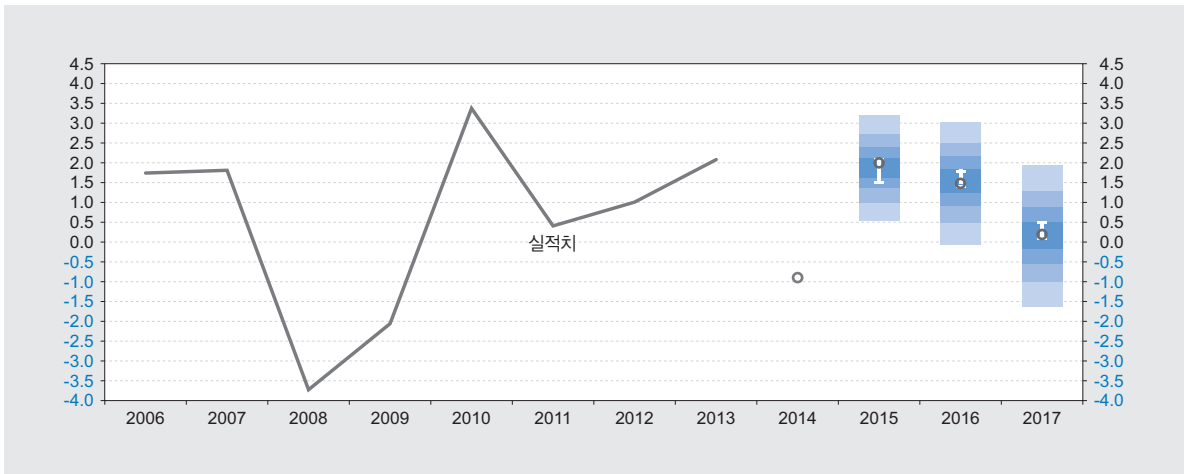
28) 규제·제도 개혁의 향후 전개방향과 기업 부문의 혁신, 가계의 고용 소득환경 등에 따라 상하 양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 존재

29) 소비세율 인상의 직접적 영향 제외를 기준으로 함

30) 이는 2% 물가상승률 목표달성 시기를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늦춘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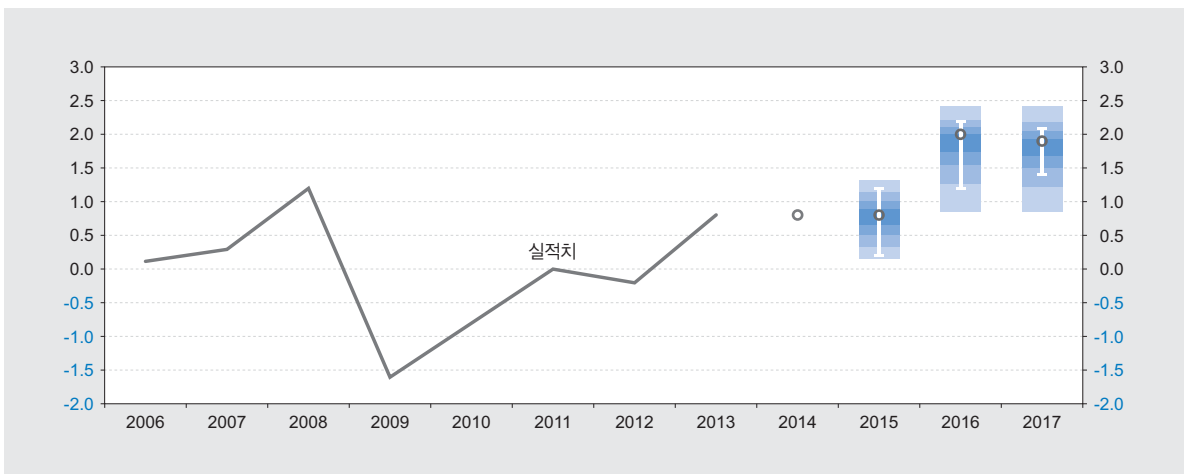
[그림 6] 실질GDP 전망

(단위: 전년대, %)



[그림 7]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전망

(단위: 전년대, %)



주: 1. 위 전망 분포는 각 정책위원이 제시한 확률분포에서 상위10%와 하위10%를 제외한 수치



- 은 정책위원 전망의 중간 값을 나타냄
2014년 소비자 물가지수(신선식품제외)는 전년도 2월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값
- 막대그래프의 수직선은 금융정책위원회의 전망을 나타냄
-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제외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스페인

1. 기타

- 내각, 2015~2018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a de Estabilidad) 발표³¹⁾ (2015.4.30.)
 - (경제 동향과 전망) 최근 7분기 연속 (+) 성장 등 스페인 경제의 강한 회복세에 힘입어 2015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
 - (경제성장률) 2014년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3년간의 광범위한 경제 개혁 이행에 따른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015년과 2016년 2.9%, 2017년과 2018년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고용) 2014년 50만개 이상(정규직 2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015년에도 5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
 - (실업) 실업자 수는 2014년 중 49만명이 감소하여 2002년 이래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 실업률은 2014년 24.4%에서 2018년 15.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

〈표 11〉 스페인 거시경제 시나리오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GDP	1.4	2.9	2.9	3.0	3.0
민간소비지출	2.4	3.3	2.9	2.7	2.5
정부소비지출	0.1	0.1	0.1	1.0	1.5
총고정자본형성	3.4	6.3	5.8	5.9	5.9
총수출	4.2	5.4	6.0	5.8	5.7
총수입	7.6	6.7	6.4	6.3	6.2
고용자 수 ¹⁾	1.2	3.0	3.0	2.9	2.9
실업률(%)	24.4	22.1	19.8	17.7	15.6

주: 1) 전일근로환산(full-time equivalent)

출처: Consejo de Ministros, *Actualización del Programa de Estabilidad(2015-2018)*, 2015.4.30.

- (재정 동향과 목표) 유럽 위원회의 안정화 목표인 GDP 대비 재정적자 3% 미만을 2016년에 달성할 계획
 - (재정수지) 수입을 유지한 채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반정부 적자를 2016년 2.8%에서 2018년 0.3%까지 감소시킬 계획
 - (공공채무)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93.2%에 도달할 전망

³¹⁾ 출처: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ferencias/Paginas/2015/refc20150430.aspx>
재무부, http://www.minhap.gob.es/Documentacion/Publico/GabineteMinistro/Varios/PE%202015-18%2030_04_2015.pdf

〈표 12〉 2015~2018년 안정화 프로그램 재정수지 및 공공채무 목표

(단위: GDP 대비 %)

	2014	2015	2016	2017	2018
중앙정부 (Administración Central)	-3.5	-2.9	-2.2	-1.1	-0.2
사회보장(Seguridad Social)	-1.1	-0.6	-0.3	-0.2	-0.1
자치지역 (Comunidades Autónomas)	-1.7	-0.7	-0.3	-0.1	0.0
지방정부(Entidades Locales)	0.5	0.0	0.0	0.0	0.0
일반정부 재정수지	-5.7	-4.2	-2.8	-1.4	-0.3
일반정부 수입	37.8	37.8	37.8	38.0	38.1
일반정부 지출	43.5	42.0	40.6	39.5	38.4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	-2.4	-1.1	0.1	1.2	2.2
일반정부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2.4	2.3	2.3	2.3	2.3
공공채무	97.7	98.9	98.5	96.5	93.2

출처: Consejo de Ministros, Actualización del Programa de Estabilidad(2015-2018), 2015.4.30.

■ 내각, 국가 개혁 프로그램 발표³²⁾ (2015.4.30.)

- 국가 개혁 2015 프로그램은 4개년 구조개혁 계획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초기 개혁을 마무리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개혁 추진 목표
- (유럽의회 수준 구조개혁) EU 재정통합(fiscal integration) 및 역내시장(internal market) 이행, 조세 회피 및 탈세 방지, Juncker Plan(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기금, EFSI) 등 투자 지원³³⁾
- (국가 수준 구조개혁) 일자리 창출과 성장 촉진, 행정 효율성 강화 정책을 추진

- (노동시장 개선과 실업 해소) 사회보장기여금 납입 감면, 영세 자영업 지원, 직업훈련 강화 등
-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 시장통합법에 따른 창업 취득 절차 간소화, 파산 비용 최소화와 재기 지원, 에너지 및 교통·인프라 등 부문의 경쟁력·효율성·지속가능성 강화 정책 도입 등
- (기업 투자환경 개선)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스페인의 투자 매력도 증가 정책 도입, 공공·민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 (공공행정 효율성 강화) 공공행정의 현대화, 투명화, 신속화를 위한 공공행정 개혁 시행. 2012년부터 시작해 222개 조치 중 2015년 4월 기준 68%를 완료했으며 203.52억유로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

- (재정건전화) 조세 개혁, 탈세 방지법 시행³⁴⁾ 등,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11~2014년 중 3.2%p 감소하였으며 특히 탈세 방지법으로 2012~2014년 중 347.85억유로가 추가 징수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32) 출처: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ferencias/Paginas/2015/refc20150430.aspx>

재무부, <http://www.minhap.gob.es/Documentacion/Publico/GabineteMinistro/Varios/SP%20PNR%20%202015%20FINAL.PDF>

33)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15년 3월 2호 참고

34)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15년 2월 2호 참고



영국

1. 기타

- 통계청, 2015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15.4.28.)³⁵⁾
 -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 증가하였고, 전년 동분기 대비 2.4% 상승³⁶⁾
 - 전분기 대비 산업별 산출량은 서비스업 부분의 증가(0.5%)를 제외한 농업(-0.2%), 제조업(-0.1%), 건설업(-1.6%)에서 감소
 - 산업별 GDP 기여도는 서비스업이 0.41%p, 농업이 0%p, 제조업 -0.01%p, 건설업 -0.1%p

<표 13> 전분기 대비 실질GDP 성장률

(단위: %)

	GDP Index (2011=100)	(% change on previous quarter)				
		GDP	Services	Agriculture	Production	Construction
2013 Q1	101.4	0.6	0.7	-4.5	0.1	-0.7
2013 Q2	102.0	0.6	0.5	1.0	0.7	2.4
2013 Q3	102.8	0.7	0.6	0.7	0.8	3.0
2013 Q4	103.2	0.4	0.6	0.7	0.3	0.3
2014 Q1	104.1	0.9	0.8	0.6	0.5	3.7
2014 Q2	105.0	0.8	1.0	0.0	0.3	1.3
2014 Q3	105.6	0.6	0.7	0.6	0.1	1.7
2014 Q4	106.2	0.6	0.9	0.4	0.2	-2.2
2015 Q1	106.6	0.3	0.5	-0.2	-0.1	-1.6

출처: 영국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Preliminary Estimate*, Quarter 1, 2015.4

- 영국 총선결과(5.7) 보수당이 과반수 득표하여 단독으로 내각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오스본 재무장관 유임 등의 내각구성 발표(2015.5.12.)^{37) 38)}
 - 보수당 공약인 임기 내 재정흑자 달성, 복지재원 축소, EU 탈퇴 국민투표 시행 등이 추진 예상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체 연구원)



미국

1. 예산·결산 등

- FY2016 예산결의안(S.Con.Res.11) 심사보고서 조정안 양원(상·하원) 본회의 최종 통과³⁹⁾ (2015.5.5.)
 - *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4월 30일에 찬성 226명, 반대 197명으로 결의안(budget resolution conference report)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찬성 51명, 반대 48명으로 통과
 - 이번 예산 결의안은 향후 10년간 5조달러 재정지출 절감이 포함된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Obamacare) 폐지·대체안을 규정
 - * 재정수지는 2023년까지 적자에서 2024년부터 흑자로(320억 달러) 전환 후 지속 유지
 - 또한, 이번 예산 청사진은 2017~2025년(FY) 동안 증세 없는 균형재정은 물론 향후 10년간 4천억달러의 추가 경제성장 유발과 120만개 일자리 창출 기대

35) 출처: 영국 통계청, <http://www.ons.gov.uk/ons/rel/gva/gross-domestic-product?preliminary-estimate/q1-2015/stb-gdp-preliminary-estimate?q1-2015.html#tab=Main-Points>

36) 참고: IMF는 *World Economic Outlook*(2015.4.)에서 영국의 2015년 GDP성장률을 2.7%, 2016년 2.3%로 전망

37) 출처: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election-2015-prime-minister-and-ministerial-appointments>

38) 개표결과 총의석 650석 중 보수당 331석, 노동당 232석, 스코틀랜드국민당 56석, 자유민주당 8석 등

39) <http://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room/record/cochran-votes-budget-plan-looks-toward-appropriations-process>

〈표 14〉 FY2016 예산 결의안 (조정안) 규모

(단위: 십억달러, %)

	2016	2017	...	2024	2025	2016-2025
Conference Levels						
지출	3,871	3,808	...	4,774	5,006	43,183
세입	3,471	3,602	...	4,806	5,030	41,750
재정수지	△400	△206	...	32	24	1,432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3,842	14,124	...	15,374	15,405	-
As a Share of GDP						
지출	20.6	19.4	...	18.0	18.1	18.8
세입	18.5	18.4	...	18.1	18.2	18.2
재정수지	△2.1	△1.0	...	0.1	0.1	△0.7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73.6	72.1	...	58.0	55.6	n.a

출처: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Budget
(http://budget.house.gov/uploadedfiles/summary_tables_fy2016.pdf)

2. 기타

- 미 백악관, ⁴⁰⁾ 2015년 1분기 경제실적 잠정데이터 분석자료 발표⁴¹⁾ (2015.4.29.)
 - 실질경제성장률은 0.2%로 잠정 집계, 민간소비 및 고정투자의 감소와 함께 주춤한 세계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은 대외무역수지(순수출)도 크게 악화
 - * 저유가에 영향을 받은 광석(mining exploration) 및 유정(wells) 사업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하락세도 주춤한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 한편, 변동이 심한 채고투자, 순수출지수, 정부지출 등을 제외한 민간국내총소비(PDFF, Private Domestic Final Purchases)는 1분기 동안 연간성장률 1.1%로 집계
 - 최근 20년 동안 3번째로 추운 날씨로 기록되는 등

유난히 혹독했던 1분기의 추위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유가하락으로 인한 대부분의 에너지 관련 소비 절감분이 소비가 아닌 저축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편 이를 통해 가계 재정상태 개선 및 향후 소비지출 증가 등에 대한 여지 기대
 - * 최근 4분기 동안 민간저축률 0.6%p 상승, 직전분기(2015년 1분기)에만 저축률 0.9%p 상승
- 미국의 대외수출이 세계경제의 주춤 속에 1분기 동안 7% 이상 하락하는 등 외국의 GDP 성장 등 대외수요에 민감 반응을 보이며 무역장벽 감축의 중요성 표출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연구원〉

주요보고서

1. OECD,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2015.2.26.)⁴²⁾

- (개요) OECD 회원국 청년 니트족(NEET youth)의 금융위기 전후 특징과 생활여건,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 폭넓게 분석
 - 청년층 연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29세를 의미하며, 금융위기 전후는 2007년과 2012년을 비교
 - NEET는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약자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 니트족(Unemployed NEET)과 그렇지 않은 비구직

40) <https://www.whitehouse.gov/blog>

41) 출처: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제공, http://www.bea.gov/newsreleases/national/gdp/2015/gdp1q15_adv.htm

42) <http://www.oecd-ilibrary.org/docserver/download/5js6363503f6.pdf?expires=1425342101&id=id&accname=guest&checksum=0C7D91E91BF873EAF1FAD89E58DFE7B6>



니트족(Inactive NEET)으로 분류

- 분석은 노동력조사(Labor force survey), 가계조사(Household income survey) 데이터를 주로 활용
- (금융위기 전후 청년층 노동시장)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시장 참여율과 고용자 수가 감소하였고, 니트족 비율은 구직 니트족이 늘면서 증가
 - (노동시장 참여율)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평균 $\Delta 2\%p$)하였고, 특히 아일랜드($\Delta 11\%p$), 스페인($\Delta 10\%p$), 덴마크($\Delta 8\%p$)가 큰 폭으로 감소
 - 2012년 OECD 평균은 56%, 스위스·아이슬란드·네덜란드·호주는 70% 이상, 한국·이탈리아·일본은 45% 이하로 국가별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남
 - (니트족 비율)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평균 $2.3\%p$)하였고,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은 $10\%p$ 이상, 덴마크, 이탈리아는 $5\%p$ 이상 증가
 - 대부분 국가에서 니트족 중 비구직 니트족 비중이 구직 니트족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만, 위기 이후 니트족 비율의 증가는 구직 니트족 증가에 기인
 - (고용자 수)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평균 $\Delta 9\%p$)하였고, 특히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이 큰 폭으로 감소
 -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로 분해해 보면, 초·중등교육 수준에서 고용자 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국가도 존재
- (청년 니트족 횡단분석(2012년)) 교육수준, 연령, 성별, 건강, 부모학력 등에 따라 청년 니트족 특성들이

상이하므로 특성에 맞는 정책 설계가 중요

- (교육수준)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등교육 비중(평균 36%)이 높고 고등교육 비중(평균 15%)이 낮게 나타나지만, 2007년 대비 고등교육 비중이 평균 $2.4\%p$ 증가
- (연령) 대부분의 청년 니트족은 20대이고(25~29세, 평균 45%), 10대 비중은 평균 16%로 위기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 정책적 관심 필요
- (성별)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평균 $5\%p$ 높게 나타나고, 특히 터키($30\%p$), 멕시코($27\%p$), 칠레($16\%p$)가 두드러지거나 가사, 육아 등 국가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
- (건강)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청년 니트족 중 건강상 문제가 있는 비율(평균 5%)이 전체 청년층에서의 비율(평균 3%)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부모학력) 청년 니트족의 부모학력이 비니트족의 경우보다 더 낮게(평균 $\Delta 0.4$) 나타나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므로 일반화에는 한계
- (가구유형) 대부분 1명 이상의 어른(30세 이상)과 함께 살고 있으며, 청년 니트족 중 한부모 가정 비중이 전체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청년 니트족 종단분석) 이행경로 분석결과, 니트 상황은 청년층 중 소수가 경험하였으나 그 지속기간이 상당하여 기간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분석개요) 2008~2010년의 EU-SILC 데이터에서 2005~2007년 당시 16세였던 청년을 대상으로 48개월 동안 학교-노동시장 간 이행경로를 역추적(코호트분석)

- 유럽 12개국에 대해 2,434명의 표본을 구성하고, 매월 개체별 상황을 학업/취업/구직니트/비구직니트의 네 가지 중 하나로 표현
- 48개월의 전체적인 이행경로는 학업 → 학업/학업 → 취업/취업 → 취업, 니트 상황이 존재하는 학업 → 구직니트/학업 → 비구직니트/구직니트 → 구직니트/비구직니트 → 비구직니트의 7가지로 분류
- (이행경로) 학업 → 학업 70%/학업 → 취업 14%/취업 → 취업 2%, 학업 → 구직니트 9%/학업 → 비구직니트 2%/구직니트 → 구직니트 1%/비구직니트 → 비구직니트 2%로 나타남
- 성별로 분해해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학업 → 학업의 경우가 훨씬 많고, 또한 학업 → 비구직니트의 경우도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부모학력으로 분해해 보면, 부모학력과 이행경로 간에 강한 상관관계 존재
 - ☞ 부모학력이 고등교육 수준이면 해당 청년들은 학업 → 학업일 경우가 88%이나, 초등교육 이하 수준이면 52%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 부모학력이 고등교육 수준이면 해당 청년들은 니트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가 5%이나, 초등교육 이하 수준이면 30%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니트 지속기간) 이행경로에서 구직니트 → 구직니트, 비구직니트 → 비구직니트 비중은 3%로 매우 적으나, 니트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총 니트 지속기간의 27%를 차지
- 또한, 청년의 약 4분의 1은 최소 1년 이상의 니트 상황에 있었고, 이 중 4분의 1은 최장 지속기간이 1년 이상으로 나타남
- (소득지원(2012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실업자는 모든 유형의 소득지원 대상에는 포함되나 생활여건을 고려한 선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
 - (유효성) 노령연금을 제외하고는 고용이력의 유무, 가구유형 등에 따라 실업급여, 주거급여, 가족급여, 장애급여 등 모든 유형의 소득지원 대상이 될 수는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이력이 최대 1년이면 고용보험 수혜자격이 부여되나 대부분 수혜 지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짧음
 - 고용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아닌 주거급여, 가족급여 등의 일반적인 사회부조 형태로 소득지원 대상에 포함
 - (수급률) 개인기반의 실업급여, 장애급여 수급률은 각각 OECD 평균 7%, 2%로 낮게 나타난 반면, 가족급여와 같은 가구기반의 소득지원 수급률은 약 50%로 나타남
 - (빈곤율) 가구 소득수준이 빈곤선(가처분소득 중앙값의 60%) 이하인 비중은 비니트측보다 니트측에서 훨씬 크게 나타남
 - 전체 청년층에서의 빈곤율은 OECD 평균 약 20%이고, 니트측에서는 3분의 1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니트측과의 격차는 18%p에 이름
- (정책) 청년층의 극빈탈출을 위한 소득지원이 필요하며, 극취약 청년층의 경우 기술향상을 위해 교육·건강·노동시장 연계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
 - (회귀분석*) 인지적(Cognitive) 기술뿐 아니라 비인지적(Non-cognitive) 기술 또한 학업성과, 고용성과, 사회적 성과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설명변수로 인지적 기술은 학력검사와 적성검사 결과를, 비



인지적 기술은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의 'Big Five' 성격요인 측정결과를 활용

- (정책분석) 취약 청년층의 기술 향상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각 프로그램에 있어 성공적인 측면과 한계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또한 존재
 - (특수학교) 학업중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학급 크기를 줄이거나 대안학교의 형태를 취하는 맞춤형 특별 교육과정이 개발되었으나, 충분한 규모 확보에 한계
 - (일반학교) 低성취 학생과 같은 특정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인지적/비인지적 기술향상에 효과적이나, 1인당 소요비용이 매우 큰 것이 한계
 - (멘토링) 가정 내 롤모델이나 가이드가 부재한 경우 건강, 자신감, 복지 면에서 효과적이나, 멘토와의 친밀도, 멘토의 훈련정도나 질 등에 따라 영향력 상이
 - (견습생제도)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습득,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의 융합으로 직업탐색 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고 동기부여도 부족
 - (고용보조금) 고용효과뿐 아니라 자존감, 기술 향상에 효과적이나, 대상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Tight targeting) 그룹 간 대체효과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효과가 제한됨
- (정책제안) 취약 청년층에게 필요한 보다 일반적인 다음의 정책들을 제안
 - (조기선별) 정기적인 검정을 통해 성취도 격차를 측정하여 어려움에 처한 청년층을 조기에 선별하고 학교와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
 - (선별적 지원) 재정건전화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거나 저성장의 국가에서는 특정한 집단·지역·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이 가장 효과적

- (가구지원) 자녀들은 부모나 기타 가정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부모 또는 가구단위(참여)프로그램으로 교육 서비스나 사회적 서비스 효과를 증진
 - (청년보장; Youth guarantee) 니트 상황에 있는 일정기간 내에 구체적인 일자리 또는 견습과정, 상담, 현장실습, 교육지속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정책 흐름



- 2015년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회 확정
- 공공기관 2분기까지 9,500여 명 채용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및 경영애로 최대한 지원
-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국세청, 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 강력 추진

2015년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회 확정

* 본 자료는 2015년 7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회 확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메르스·가뭄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2015년 추경예산이 7.24(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세입조정 5.6 → 5.4조원(△0.2조원), 세출확대 6.2 → 6.2조원(△0.06조원)
- 총수입은 2천억원 수준 국세수입 조정, 총지출은 감액범위(△4,750억원) 내에서 증액(4,112억원) 반영
 - 총수입: (정부안)△4.9 → (최종)△4.7조원(+0.2조원)
 - 총지출: (정부안)+9.3 → (최종)+9.2조원(△0.06조원)
 -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개선, 국가채무도 △0.3조원 감소

(단위: 조원, %, %p)

	'14년	'15년	'15년 추경		증감 (B-A)
			정부안(A)	확정(B)	
◇ 총수입	369.3	382.4	377.5	377.7	0.2
◇ 총지출	355.8	375.4	384.7	384.7	△0.06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25.5 (△1.7)	△33.4 (△2.1)	△46.8 (△3.0)	△46.5 (△3.0)	0.2 (0.02)
■ 국가채무 (GDP 대비, %)	530.5* (35.7)	569.9 (35.7)	579.5 (37.5)	579.2 (37.5)	△0.3 (△0.02)

주: * '14년 국가채무는 정부 결산 기준

주요 증액내역

- ①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지원 +1,500억원
 -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208억원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950억원
 - ※ 전통시장·자영업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자체변경으로 온누리 상품권 1천억원 추가발행 수수료(+70억원)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지원(+100억원) 등 총 300억원
 - 의료인력양성 적정수급 관리 +50억원
- ② 가뭄 및 장마대책
 - 지방하천 정비 +100억원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0억원
- ③ 서민생활 안정
 -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등 충원 +168억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61억원
 - 시·도 가축방역 +29억원
- ④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 도시철도 내진보강 +100억원
 -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50억원

특징 및 향후 계획

- 금번 추경은 경기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 간 조기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 결과, 단기간 내 국회심의 마무리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조속한 시일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
 - 8월 초부터 추경예산이 집행되어 추경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배정하고,
 -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첨부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구 분	'15년 본예산 (A)	'15년 추경확정 (B)	증감 (B-A)
◇ 총 지출	375.4	384.7	9.2*
1. 보건·복지·노동	115.7	120.4	4.7
2. 교육	52.9	52.9	-
3. 문화·체육·관광	6.1	6.4	0.3
4. 환경	6.8	6.9	0.1
5. R&D	18.9	18.9	0.0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	18.1	1.7
7. SOC	24.8	26.1	1.3
8. 농림·수산·식품	19.3	19.8	0.5
9. 국방	37.5	37.6	0.1
10. 외교·통일	4.5	4.5	-
11. 공공질서·안전	16.9	17.1	0.1
12. 일반공공행정	58.0	58.2	0.2

주: * 메르스 피해병원 지원 목적예비비(+1,500억원)는 12대 분야에는 미포함(총지출에는 포함)

공공기관 2분기까지 9,500여 명 채용

* 본 자료는 2015년 7월 16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정보과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2분기까지 9,500여 명 채용, 올해 채용 목표의 55% 달성」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공공기관은 금년 2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9,482명을 신규채용하였고, 금년 말까지 당초 목표(1.7만명)를 상회하여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2분기 경영정보를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였음
 - ※ 37개 공시항목 중 임직원 수,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현황, 노동조합 관련현황 등 5개 항목은 분기별로 공시

【'15년도 2분기 경영공시 주요내용】

- ① **(신규채용)** 금년도 2분기까지 신규채용은 9,482명으로 전년 동기(8,714명) 대비 증가했으며, 계획 대비 상반기 채용실적은 작년(50%)보다 증가한 55% 수준으로 나타남
- * 11,093명('10) → 14,615명('11) → 16,523명('12) → 17,285명('13) → 17,863명('14)

- ② **(임직원 수)**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15년도 2분기의 경우 전년 대비 7,063명 증가한 28.7만명임
- * 24.7만명('10) → 25.4만명('11) → 26.3만명('12) → 27.1만명('13) → 28.0만명('14)

- 공공기관별 임직원 수는 50명 이하부터 2만명 이상의 대규모 기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 분포

(단위: 개)

	50명 이하	51~100명	101~500명	501~3,000명	3,000명 이상
기관 수	49	59	118	69	21

- 유형별로는 공기업(30개) 평균 3,452명, 준정부기관(86개) 평균 896명, 기타공공기관(200개) 평균 498명으로 나타남
 - 임직원 수가 가장 적은 기관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13명)이고, 1만명이 넘는 기관은 한국철도공사(27,981명), 한국전력공사(20,693명), 국민건강보험공단(12,857명), 한국수력원자력(11,116명) 등 4개 기관임
 - * 여성인권진흥원(정원 1명)은 상임임원 1인을 제외하고 전 직원을 매년 공모를 통해 운영하고 있어 제외
- ③ **(유연근무)** 금년도 2분기까지 총 42,455명이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였음
- 유연근무 활용인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활용인원도 전년 동기(33,925명) 대비 25% 증가하였음
 - * 2,541명('10) → 15,851명('11) → 28,747명('12) → 39,907명('13) → 48,431명('14)
 -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등

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 주5일 미만으로 출퇴근하는 재량근무형, 집약근무형 등은 아직 활용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유연근무제 종류 및 '15년도 활용현황

	정의 (주40시간 근무 기준)	인원
시간선택제	▪ 주40시간보다 짧은 근무	5,323명
사차출퇴근형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 출근시간 자유롭게 조정	29,983명
근무시간선택형	▪ 주5일 근무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 자율조정	5,317명
집약근무형	▪ 주5일 미만 근무	328명
재량근무형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99명
재택근무형	▪ 자택에서 근무	761명
스마트워크근무형	▪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644명

참고 2분기 공시 주요 통계

1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4분기
전체	11,093	14,615	16,523	17,285	17,863	9,482
공기업	1,370	2,693	4,272	4,041	4,157	1,394
준정부	2,348	4,114	3,915	4,005	5,198	2,164
기타	7,375	7,808	8,337	9,239	8,509	5,924

2 임직원 수 현황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4분기
전체	247,287	254,474	262,816	271,390	279,788	286,851
공기업	93,215	94,369	97,390	99,847	102,017	103,571
준정부	67,463	70,235	72,319	74,435	77,161	78,528
기타	86,609	89,870	93,107	97,108	100,610	104,752

3 유연근무 현황

(단위: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4분기
전체	2,541	15,851	28,747	39,907	48,431	42,455
공기업	0	4,040	8,649	14,033	17,000	14,046
준정부	1,370	8,366	8,912	11,229	14,301	12,787
기타	1,171	3,445	11,186	14,645	17,130	15,622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및 경영애로 최대한 지원

* 본 자료는 2015년 7월 13일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발표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및 경영애로 최대한 지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425만명(개인 일반 355만, 법인 70만)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개인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됨

- 이번 신고시에는 업종별·규모별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대폭 확대(70개 항목)·제공(67만명)하였음

- 특히, 수입금액 추정 등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자 스스로 사전검증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14.2기 확정 26개(45만명) → '15.1기 확정 70개(67만명)

- 홈택스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스마트폰 앱) 전자신고를 개시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전)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별도 가입 → (변경) 주민번호로 한 번만 가입

- 또한, 경기회복 지원,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사업자가 경제활력을 찾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조기 지급,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세정지원뿐 아니라

- 매출부진에 따른 일시적 재고과다로 인한 일반환

급신고자도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8.26. ⇒ 8.15.까지)할 계획임

* 2014년 2기 일반환급신고자 37만명, 1조 4천억원

- 아울러,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임

1 신고·납부 개요 및 편의 제공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해당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일반과세자 1.1~6.30(6개월), 법인사업자 4.1~6.30(3개월)

- 이번 신고대상자는 425만명(일반 355만, 법인 70만)으로, '14.1기 확정신고(401만) 때보다 24만명 증가하였음

-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예외적인 경우* 선택적으로 예정신고 가능함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전자신고는 7.1부터 시스템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예정고지세액 등을 채워주는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
 -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 전자납부 가능
 - ** 금년부터 신용카드 납부 국세한도액(종전 1천만원) 폐지됨
-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1회 가입으로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홈택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 업종별* '신고서 작성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전자신고하는 납세자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 건설, 도·소매, 부동산임대, 음식, 제조업 구분 게시
 - 사업개시 전 등록, 실질적 휴업 등 실적 없는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는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도 개시하였음

2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성실신고 지원자료 제공

- 이번 신고 시에는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확대(70개 항목)·제공(67만명)하였음
 - * '14.2기 확정 26개 항목(45만명)→'15.1기 확정 70개 항목(67만명)
- 대사업자 및 고소득전문직 등 취약업종은 주로 과거 신고내용 분석 결과에 의한 불성실혐의사항*을 시정 안내하고
 - * 매출누락·부당환급 혐의자,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공제혐의자 등
- 기타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대상기간(1.1~6.30)의

자료를 수집·분석 후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였음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내역 등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자료 등

- 앞으로도 안내항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분석방법을 더욱 과학화하여 제공자료의 실효성을 높여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할 것임

사전안내항목 예시

업종별	▶ 외부기관 등 수집·분석 자료
	- (서비스) 스크린골프장, PC방 수수료 지급액 분석자료
	- (소매) 휴대폰 판매점, 외국인 면세판매장 자료
	▶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대 사업자 취약업종	- (부동산) 임대업자 면세 전용 사용 등 부당환급 안내자료
	- (전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분석자료 등
	▶ 사후검증 적출·조사 사례
	- (임대) 사업용부동산 공익법인 출연시 담보채무액 승계자료
기타	- (임대) 임차인 사업자등록사항 기준 임대수입 분석자료
	▶ 외부기관 등 수집·분석자료
	- (건설) 산재보험 가입자료, 전기·가스공사 시공자료
	- (서비스) 법무사 등 수수료 수입금액 자료
기타	-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수수료 지급자료
	▶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 (현금수입업종) 현금수입 매출누락 혐의 분석자료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기타	- 매입세액 공제한 주거용 임대건물 면세전용 자료
	- 부적격자 수취 매입세액 부당공제 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부당공제 자료
	- 매출·매입 신고오류 혐의자료

3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 사후검증

- 국세청은 지난 1월 '14.2기 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다공제,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 이번 신고의 경우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검증할 계획임
-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70종, 67만명)에 대하여,
 - 8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임
 - 특히, 대사업자,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임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 등
- 아울러,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나
 - 부당환급에 대하여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정할 것임

(부당환급검색시스템) 부실거래처와의 거래 등 주요 부당공제혐의 사업자 추출·분석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혐의거래를 추출·분석

4 메르스 피해 등 경영애로 사업자 세정지원

-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사업자가 활력을 찾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있음
 - 특히,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피해 지역·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확진환자나 격리되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 피해지역, 피해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 *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

(피해지역) 확진자 발생 경유병원 소재 시·군·구(42개)
(피해업종)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전세버스
(영세사업자) '14년 연간매출액 : 도·소매 20억원, 음식·숙박 10억원, 서비스 5억원 미만

납세담보 면제기준

지원대상자	면제금액	면제기간
■ 확진환자·격리자, 환자발생 경유병원	전액	9개월
■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영세납세자	1억원까지	3개월
■ 피해지역 또는 피해업종	5천만원까지	3개월

- 아울러, 피해사업자 등이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 6월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 : 2천명, 5,300억원

5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에게 법정 지급기일보다 10일 이상 빨리 신고월에 조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14년 26천명의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지급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경색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 이번 신고 시에도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예정임
-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매출부진 등 일시적 재고과다로 인한 일반환급 대상 사업자에게도,
 - 법정 지급기일(8.26)보다 10일 이상 빠른 8.15.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약 40만명 사업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14.2기 확정신고 시 일반환급 37만명, 1조 4천억원

6 최선의 절세전략은 성실신고

-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세정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확고히 정착시켜
 - 사전 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함
-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은 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함으로써 사후에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 최고 40%의 가산세, 사후검증, 세무조사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제공 안내

- 전자신고 · 전자납부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365일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한, 상호저축, 경남

- 신용카드납부 :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www.cardrotax.or.kr) ▶ 00:30~22:00(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 홈택스 가입 간소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이중가입 폐지,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만 회원 가입하도록 간소화



■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이용방법

- 대상 : 일반과세자(개인·법인) 중 무실적자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무실적 신고’ 선택 ▶ 전송



■ 기한연장 등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근 경로

- 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신청에서 입력·신청

■ 국세청 누리집 등 안내

- 일반과세자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
 - 건설, 도·소매, 부동산임대, 음식, 제조업 구분 게시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개정 사항, 쟁점사례, 작성요령을 ‘(126)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게시

접근 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126)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 세목별 정보 > 부가가치세 > (126)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붙임 2 사후검증 추정사례

No	주요 사후검증 사례 요약
1	스크린골프장 운영사업자가 현금결제하는 고객을 상대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 신용카드 매출액만을 신고하였다가 적발된 사례
2	공익법인(의료재단)에 임대건물을 출赁하고 건물에 설정된 담보채무를 의료재단에 승계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나 신고를 누락한 사례
3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에게 인테리어 시공을 해 주고, 현금결제를 유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사례
4	모텔 신축 후 주거용(원룸)으로 임대한 사실을 적발하여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매입세액을 추정한 사례

【사례 1】 스크린골프장 사업자가 현금매출분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사후검증에 적발된 사례

〈성실신고 사전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가맹 본사로부터 사용자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자 지급액에 해당하는 매출 신고 누락 혐의가 있는 해당 업종 사업자들에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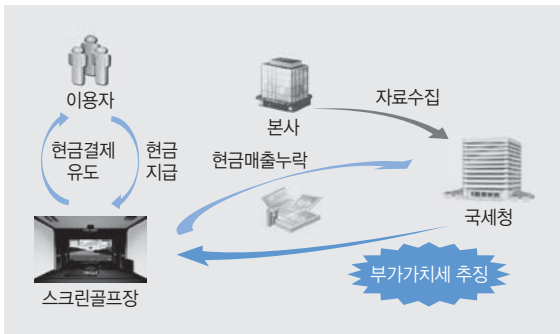
〈사후검증〉

-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A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현금매출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금액 외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함

〈조치결과〉

- 신고 후 사전안내자료 신고여부 검증 결과 신고누락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추징조치함



【사례 2】 사업용 부동산을 담보된 채무와 함께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검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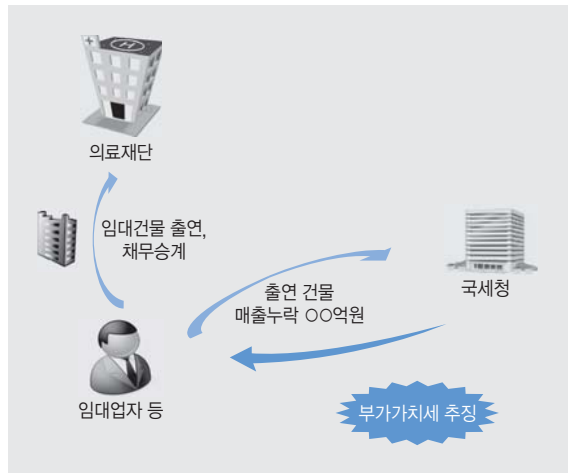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B는
 -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하던 중 의료재단에 임대건물을 출연하면서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채무액을 의료재단에 승계
- 채무인수 조건부로 사업용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함

〈조치결과〉

- 공익법인에 사업용자산을 출연 시 담보된 채무를 승

계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추징하고,

- 같은 유형의 사업자들에게 신고 전 성실신고 사전안내함



【사례 3】 병원 등에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대금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등 탈루

〈성실신고 사전안내〉

-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건설공사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자별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성실신고 자료로 사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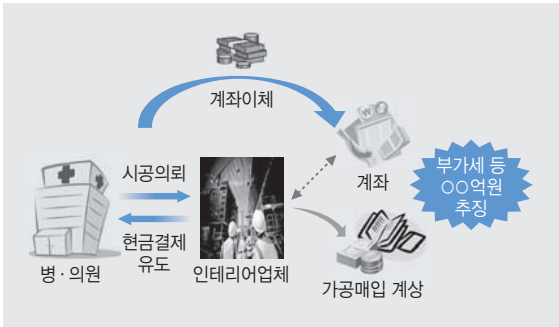
〈사후검증〉

-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C법인은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 굳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공사대금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결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조치결과〉

- 신고 후 사전안내 내용에 대한 신고여부를 검증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추징



【사례 4】 모텔 신축 후 주거용(원룸)으로 면세전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신축에 따른 부가세 부당환급 추징

〈성실신고 사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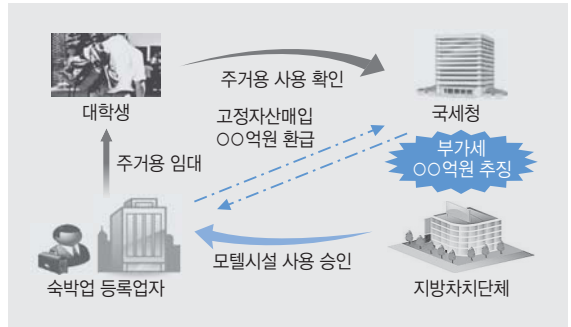
- 모텔 운영사업자가 영업부진 타개책으로 대학생 등에게 원룸으로 임대하는 등 주거시설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정보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숙박업소 운영실태 정보를 추가수집하여 해당 업종 사업자들에게 성실신고 사전안내함

〈사후검증〉

- 대학교 인근에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D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당초 모텔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주거용(원룸)으로 임대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함

〈조치결과〉

- 신고 후 사전안내자료 신고여부 검증 결과 신고누락 사실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추징조치함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본 자료는 2015년 7월 10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에서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단장 : 김정훈 조세연 재정연구본부장)은 사업 수를 약 10%(140개), 사업 규모를 약 1.8조원 감축하는 내용의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음

- 이번 평가는 종전에 3분의 1씩 실시하던 평가를 전 사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성과나 실적행렬이 저조한 사업, 관리 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평가 대상) 32개 부처, 1,422개 사업('14년 예산 기준 44,9조원)

- 의무지출(18조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량지출은 26조원 규모

(단위: 개, 억원)

	보조사업 수	보조금 규모('14년 예산)
■ 전체 국고보조사업	1,828	525,392
■ 평가 제외 사업 ¹⁾	406	76,814
■ 평가 대상 사업	1,422(100%)	448,578(100%)
- 재량 지출	1,401(98.5%)	262,131(58.4%)
- 의무 지출 ²⁾	21 (1.5%)	186,447(41.6%)

주: 1) 평가 제외 사업: 완료사업, 타기관에서 평가 실시 사업(R&D사업, 포괄보조사업 등)

2) 의무 지출: 기초노령연금(5,2조원), 의료급여(4,4조원), 영유아보육료(3,3조원) 등

■ (사업 수) 즉시 폐지 65개(4.6%), 단계적 폐지 75개(5.3%) 등 보조사업 수를 140개(약 10%) 감축

※ 일몰이 예정된 사업(149개)까지 포함할 경우 289개 감소

(단위: 개, %, 억원)

판정결과	사업 수		'15년 예산	
	사업 수	비율	예산	비율
■ 정상 추진	734	51.6	328,143	66.8
일몰예정 사업	149	10.5	30,942	6.3
■ 즉시 폐지	65	4.6	1,213	0.2
■ 단계적 폐지	75	5.3	2,833	0.6
■ 단계적 감축	275	19.3	67,091	13.7
■ 통폐합	71	5.0	13,337	2.7
■ 사업방식 변경	202	14.2	78,763	16.0
합계	1,422	100.0	491,380	100.0

■ (사업 규모) '16년 0.8조원, '17년 이후 1.0조원 등 총 1.8조원 감축

※ 일몰이 예정된 사업(3.1조원)까지 포함할 경우 약 5조원 감축

- 폐지 및 감축 대상 사업의 '15년 예산 대비 21.7%를 감축

(단위: 억원, %)

	'15년 예산(A)	감축규모			감축 비율 (B/A)
		'16년	'17년 이후	총규모(B)	
■ 즉시 폐지	1,213	1,213	0	1,213	100.0
■ 단계적 폐지	2,833	160	2,673	2,833	100.0
■ 단계적 감축	67,091	6,492	7,208	13,700	20.4
■ 통폐합	13,337	243	338	581	4.4
합 계	84,474	8,109	10,219	18,328	21.7

주: 감축규모는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 단계적 감축, 통폐합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효과로 산정

■ 정비 기준 및 주요 폐지·감축 사업 예시

- 지자체가 자기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

(단위: %, 억원)

부처명	사업 내용	국고보조율	'15년 예산	평가 결과
행자부	광역도로표지판 설치 지원	100	5.5	즉시폐지

- 국고보조율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

(단위: %, 억원)

부처명	사업 내용	국고보조율	'15년 예산	평가 결과
국토부	광역BIS 지원	30~40	35.0	단계적 감축
교육부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100	13.1	단계적 감축

-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사업

(단위: %, 억원)

부처명	사업 내용	국고보조율	'15년 예산	평가 결과
새만금청	새만금 방조제 공연 지원	50	16.5	단계적 폐지

- 민간이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단위: %, 억원)

부처명	사업 내용	국고보조율	'15년 예산	평가 결과
해수부	해외양식업투자 사전조사 용역	100	0.7	즉시폐지
중기청	외국전문인력 채용 시 체제비 등 지원	100	22.3	즉시폐지

-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성고가 저조한 사업

(단위: %, 억원)

부처명	사업 내용	국고보조율	'15년 예산	평가 결과
문체부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100	20.0	단계적 감축

- 소요비용 검토 미흡, 사업계획 부실로 실행행렬이 저조한 사업

(단위: %, 억원)

부처명	사업 내용	국고보조율	'15년 예산	평가 결과
보훈처	지방보훈회관 건립	정책지원	30.0	단계적 폐지

- 성과에 비해 관리비용 등 행정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단위: %, 억원)

부처명	사업 내용	국고보조율	'15년 예산	평가 결과
환경부	환경관리우수지자체 포상 (격년제 사업)	100	'14년 0.5억원	즉시폐지

- (향후 계획) 평가 결과는 '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 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는 국회제출시(9.10.)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공개할 계획

국세청, 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 강력 추진

* 본 자료는 2015년 7월 6일 국세청에서 부서 공동으로 발표한 「국세청, 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 강력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7.6.(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

① 고액·상습 체납 철저히 징수

- 체납자 재산은닉 분석시스템 가동, 범칙처분 강화, 질문·검사권 확대 추진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에 그 어느 때보다 엄정 대응

②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강력 추진

- 현재 시행 중인 직원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별도로 「비정상적 세무대리 행위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실천

*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세무사법 의무위반 관리 강화, 조사팀-납세자 직접 설명제, 클린 신고 제도(가칭) 도입 등

③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완전 정착

- 업종별·규모별 차별화된 사전 안내 등을 통한 사전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신고편의 장치를 마련

I. 회의 개요

- 국세청은 7월 6일(월)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83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음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 조직과 업무체계 정비를 통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통한 서비스 혁신, 조사운영 방식 개편과 송무조직 재정비를 통한 조사역량 강화 등
 - 그간 세정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변화와 혁신 방안들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함
 - 또한, 비상한 각오와 끈기 있는 실천력으로 세수, 체납, 탈세 대응 등 세정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 특히,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준법·투명·청렴’의 가치가 국세청장부터 일선 직원까지 확고히 체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을 주문함

-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업무도 관리자가 구심점이 되어 일체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세정'으로 '투명한 국세청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함

II. 2015년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

- 이날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연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하반기 중점 추진할 5대 과제와 세부 실천계획을 담고 있음
 - 앞으로, 국세청은 세정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 관리 강화와 세무부조리 근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세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세정 생태계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1 고액·상습 체납 철저히 징수

-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정리를 중점 추진해 나갈 것임
 - 체납발생 즉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금정리실적*을 높이고 정리 중인 체납액을 축소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겠음
 - * 연도별 현금정리 현황(조원) : ('12년) 8.5 → ('13년) 8.9 → ('14년) 9.4
- 아울러,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크게 저하시키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음

- 특히,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국세청은,
 -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 현장추적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 팀, 121명 배치
 -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 고가주택 거주자, 소비지출 과다자 등 재산은닉 혐의자를 매월 신속히 선정, 거주지 수색·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기에 국세채권을 확보해 나갈 것임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 분석하여 호화 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매월 1회 전산분석을 실시하여 체납자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또한, 질문·검사권 행사범위를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은닉재산 추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악의적 체납자와 이에 동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범칙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엄단할 것임
 - *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건수 : '14년 179건
- 아울러, 국세청 보유 소득, 재산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FIU 금융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 행정자치부, 관세청 등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15.5월 행자부, 관세청과 국세·지방세·관세 환급금 전산연계 시스템 구축·활용 중

- 출국규제,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조치도 강력히 집행하여 체납 발생 심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임

■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 지하철 광고, 온라인 홍보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

* 연도별 신고포상금 지급액(백만원) : ('12년) 82 → ('13년) 48 → ('14년) 226

■ 다만, 경기회복 지연,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 징수유예,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경영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겠음

2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강력 추진

■ 국세청은 범정부적인 부정부패 근절 의지와 노력을 적극 실천하고, 공정·투명한 세정을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 제도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임환수 청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

1. 감찰담당관실을 「청렴세정담당관실」로 개편, 서울·중부청 「청렴세정계」 신설
2. 본청에 「정보수집 전담팀」과 「기동감찰반」 신설하여 선별적·예방적 감찰 실시
3. 조사과장 면담계 전면 시행 등 관리자 중심의 조사체계 구축
4. 조사팀의 토론키 보고 의무화, 조사팀 순환제 등을 통한 상호 견제
5.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6. 청렴교육 강화, 국세청장 명의 청렴편지 발송, 청렴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해 자발적인 청렴문화 조성

■ 그러나, 세무행정의 동반자로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세무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위 직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 금품제공 및 탈세방조 등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와 관련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세청은 그간 추진해 오고 있는 「세무부조리 근절 대책」에 추가하여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특히, 금품제공·수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임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금

번 대책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세청은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을 협업과제로 추진 중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 대책

1.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2. 세무사법 의무위반 관리 강화 등

- 성실신고 허위확인, 부실기장 등의 비정상적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
- 세무사법에 규정된 성실신고 확인, 성실기장 등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징계 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세무사법 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을 배제시키도록 할 계획임

3. 금품제공 사전 억제를 위한 조사관리 강화

- 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비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팀-납세자 직접 설명제*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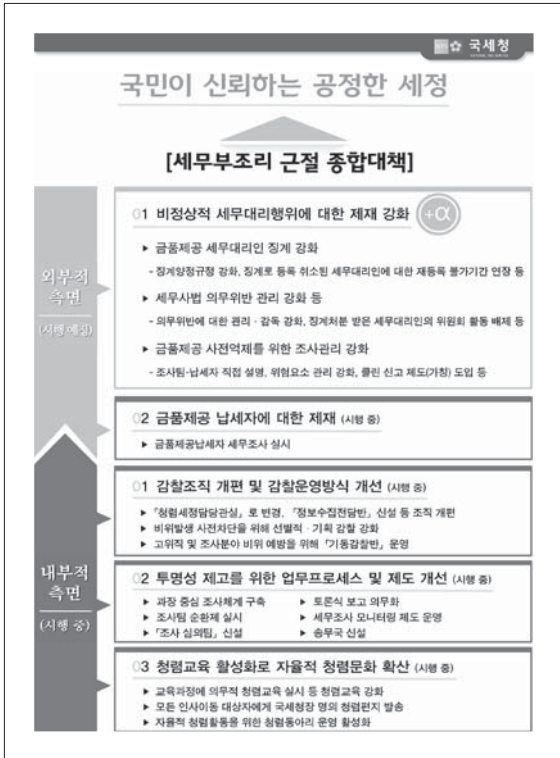
하여 세무대리인과의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 조사과장·팀장이 세무대리인을 배제시킨 1:1 면담시간을 통해 조사쟁점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사실 여부 등을 점검

- 위임장 없는 대리, 조사 진행 중 대리인 교체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사후관리(risk management)를 철저히 할 계획임
- 금품 제공 등을 권유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 신고한 납세자를 ‘클린 신고 납세자(가칭)’로 선정하여 우대혜택을 제공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임

⇒ 국세청은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과 새롭게 마련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 대책’을 포함하는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

참고 1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요약)



-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신고 전 안내 자료 현황

구 분		'14년	'15년
부가가치세	종류	2종	40종 ¹⁾
	대상	5천명	5만 5천명
종합소득세	종류	4종	40종
	대상	1만 5천명	53만명
법인세	종류	5종	15종
	대상	(공통참고자료)	16만명

주: 1) '15.1기 예정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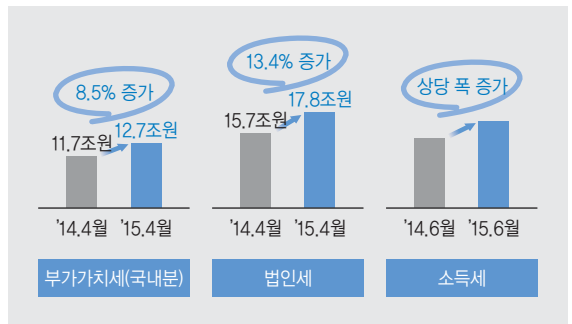
- 다각적인 노력으로 안정화시킨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신고서비스*도 크게 확충하였음
- * 8개 대민사이트 통합, 간편신고(Pre-filled) 서비스 제공, 신고 부속서류 전자제출 확대 등
- 그 결과, 상반기 자납세수가 상당 수준 증가하는 등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음

3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의 완전 정착

-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위해 그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한 조직과 확충된 현장 인력을 토대로

- ▶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
- ▶ 세무서 현장인력을 보강하여 일선의 서비스 역량 강화
- ▶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하여 납세편의 향상

금년도 세목별 신고세수 증가현황



-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세정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할 것임
 - 무엇보다, 사전 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를 위해, 업종별·규모별 차별화*된 사전 안내, 사전 안내 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사후검증 등을 통해 사전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것임
- * 대사업자·취약업종: 구체적 혐의사항이 기재된 개별분석 자료 제공, 소규모 사업자: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유의사항 안내
- 또한, 차세대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고서비스의 편의성을 한층 향상시키고,
 - 「126 세미래 콜센터」 상담체계 개선*을 통한 전화상담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할 것임
- * 자동응답시스템(ARS) 멘트 간소화, 주요 세목 상담 집중 시기(Peak time)에 복수세목 상담제 및 민간 위탁(Outsourcing) 상담 도입 등

Ⅲ. 차세대 시스템 공식명칭 선포식 등 기념 행사 개최

- 국세청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차세대 시스템의 새로운 이름을 '엔티스(NTIS)*'로, 로고는 **NTIS**로 확정하고, 공식명칭 선포식을 가졌음
- * NTIS : Neo Tax Integrated System
 - 엔티스(NTIS)는 기존 국세행정통합시스템(TIS)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면서 TIS가 새롭게 탄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새 로고는 새로움을 나타내는 'N'을 강조하여 역동적인 정보 흐름과 상승 발전하는 시스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음

- 또한, 그간의 시스템 구축과정과 직원들의 노력 등을 담은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일체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음
- 차세대 시스템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역점 추진한 사업으로,
 - 2011년 시작하여 4년 6개월에 걸쳐 30여 종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한 번에 전면 개편(Big-bang 방식)한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였음
 -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은 전자서고 시스템 구축, 우편물 자동 발송 등을 통해 내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쉽고 빠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히, 차세대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전자신고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음
- 회의에 참석한 각급 관서장들은,
 - 혁신적 서비스와 고차원의 분석기능을 갖춘 차세대 시스템 개통으로 국세청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음을 인식하고,
 -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였음

참고 2

기존 TIS와 차세대 시스템 '엔티스(NTIS)' 비교

TIS		엔티스(NTIS)	
대민 서비스			
통합 시스템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개 사이트 독립적 운영 사이트별 회원가입·로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운영 한번의 가입·로그인 	
신고 편의성 향상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부속서류 수동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제출 가능 간편신고(Pre-filled) 서비스 확대 	
MY-NTS 강화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신고 등 34종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종으로 확대 우편물 조회·출력 등 기능 추가 	
온라인 민원접수 확대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명 등 20종 발급 일요일·공휴일 미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39종으로 확대 365일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개선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앱 7종 등 독립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운영 부가가치세 모바일 간편신고 등 서비스 확대 	
내부 업무			
전자서고 구축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가 제출한 일부 문서 전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문서 전자화 	
해명안내 전자관리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명안내 발송 및 검토내역 일부 전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자료의 전자관리 	
우편물 자동 발송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등 일부 우편물 수동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우편물 자동 발송 	
국세공간정보(GIS)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정보와 국세정보를 연결·제공함으로써 세원관리 지원 강화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부처별로 쪼개진 복지 자원 통합관리 필요

고령화, 재정 지속가능성 위협...노동 稅부담 증가
미래 일정시점에 증세·사회보장기여금 인상 불가피

고령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복지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증세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나왔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노동에 대한 세 부담을 증대시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정부의 자원 조달 기능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정책세미나에서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 단계가 증세를 할 시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증세나 사회보장부담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미래 자원 조달 수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만 반영한다 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큰 폭으로 악화된다는 게 최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된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60년에는 28.9%까지 상승하게 된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 고령화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성장과 분배의 합리적인 조화를 정책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생산인구가 줄어 생산을 늘리지 못하는 특성과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서 시작된다는 측면에서도.

이에 최 연구위원은 현재 구조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조세부담률은 4~5%p, 국민부담률은 6~7%p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1년 동안 낸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국민연금 급여도 삭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기여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노동에 대한 부담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원 조달과 관련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복지 자원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세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료는 보건복지부, 연금은 복지부와

연금관리기구,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부분의 세율이나 요율 조정도 해당 분야에 국한돼 제각각 이뤄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조세 외에도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만큼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합해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2015-07-22〉

“법인세 지금 올리면 세수만 감소, 기업은 투자 안 한다”

[국책경제연구원장 인터뷰]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추경은 타이밍, 경기회복 위해 속도감 중요”

9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The-K)서울호텔에서 열린 ‘기업과세 및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이날 공청회에선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다뤄졌다. 대기업들의 비과세·감면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였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박형수(48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과 세액공제는 그동안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상관없이 불필요한 것들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올해 반드시 결정하고, 집행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 원장의 취임 후 첫 대외 행사였다.

박 원장이 공식 외부행사 데뷔전에서 재정건전성을 외친 이유는 뭘까.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때문이다. 올해도 세수가 부족해 4년 연속 ‘세수핑크’가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벌써 나온다. 정치권에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세입경정(5조 6,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당시 정부는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세입추경을 했다. 그리고도 8조 5,000억원의 세수부족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엔 역대 최대인 10조 9,000억원의 세수결손으로 결국 올해 5조 6,000억원의 세입추경을 요구한 것이다. 야당은 이런 세입추경안을 모두 빼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 탓이란 게 이유다. 그러면서 세입추경을 하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빨리 집행돼도 경기가 살아날지 의문인 상황에서, 정치권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조세재정 전문가인 박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15일 오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있는 조세재정연구원 본원에서 박 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이날은 공교롭게 연구원 개원 23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 원장과 나는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정부의 추경안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 정부의 이번 추경안을 보면, 정부가 경제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가용한 자원을 모두 경기 활성화에 쏟아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추경은 위급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단행하는 응급 처방으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기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추경 규모를 재정건전성과 연결해서 보면 어떤가요.

▶ 단순히 규모만 보면 지난 2009년 수퍼 추경보다 작지만, 지금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마지노선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가용한 돈을 끌어모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과 많이 다릅니다. 과거엔 도로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시간이 걸리는 아이টে들이 많았지만, 이번엔 당장 필요한 항목들이 포함됐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수치가 나빠지는 것보다 재정 규율이 얼마나 정해져 있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5년 내 소화가 돼야 합니다. 미래의 돈을 지금 앞당겨 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입니다. 부채가 계속 누적돼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언제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 일각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 여러 공청회를 통해 확인된 건 그나마 세액 부담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법인이란 겁니다. 그런 공감대가 많아요. 특히 일부 정치권에선 법인세를 많이 깎아줬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직접 움직이는 건 기업들의 투자 의지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법인세율을 올려봐야 세입은 안 늘고, 기업들은 그것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차라리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세율을 올리면 타격이 큼니다. 어쩌면 기업들은 이미 법인세율이 과거 수준으로 원상복귀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 조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종류별로 세 부담 차이가 너무 큼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득 증가율 자체도 떨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전통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을 추구합니다. 우리 경제와 소득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면서 세

제가 그런 것들을 쫓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대놓고 과세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안하면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소득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합쳐서 파악하면 그런 수평적 불균형은 사라질 겁니다.

- 올해 세입여건 어떻게 보시나요?

▶ 올해 세수가 얼마나 부족하든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세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잘 포착해야 합니다. 정부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세금이 계속 줄어드는 요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과거엔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더 작아졌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세원이 과세가 덜 되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세상이 변한건지, 세원이 바뀌었는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세원이 바뀌었다면 돈이 움직이는 쪽으로 세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인구감소 문제도 앞으로 세수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 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1995년 기준으로 증가율을 나타내는 기울기가 꺾입니다. 2010년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인구는 계속 증가하지만, 2030년쯤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노령인구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 노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인구를 젊은 세대들이 떠받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199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인구정책을 바꿨어야 하는데, 10년 이상의 기간을 그냥 놓쳤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 성장잠재력과 세수 부족 등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거죠.

- 일본이 그런 과정을 겪은 거 아닌가요?

▶ 맞습니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각종 분석 그래프를

보면 일본과 정확히 20년 격차를 두고 경제지표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일본처럼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잘 안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20년 전 일본의 성장률과 지금 우리 경제의 모습을 대입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 시기에 일본도 갑자기 확 주저앉은 때가 있습니다. 버블이 꺼져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잘 안 되는 때였죠. 우리경제도 3%대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라앉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을 닮아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 현재 우리 경제의 모습을 진단한다면...

▶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4%대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이제 3%대로 조정했어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성장률이 떨어진 다음 반등해서 완전히 회복될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건 회복이 안됐습니다. 세수도 참 답답합니다. 올해 세수가 상당히 좋을 줄 알았는데 내리 3년 연속 세입결손이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비롯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세정책은 일반 경제정책과 다릅니다. 국가 전체를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세제는 단기적으로 어느 한 정책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없어요. 방향과 목적에 맞춰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큰 방향에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 과세 문제만 부각시킬 게 아니라 지금 세금을 안내고 있는 면세 부문도 신경써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2015-07-21)

세수확보 다급한 정부, 대기업 R&D 세액공제 확대

정부, R&D 조세제도 대폭 손질...대기업 공제율 40% → 30%

정부가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 관련 조세제도를 대폭 뜯어고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독차지했던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고 전년에 비해 R&D투자를 크게 늘린 기업에 더 많은 조세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공제 등으로 보전받던 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R&D 지원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손질

20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R&D예산 지원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이고, 관련 조세지출은 3위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질적 전환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액(잠정치)은 R&D비용 세액공제가 3조 561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가장 많다. 이를 포함한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의 총지출액만 26조원이다. 전체 국세감면액(33조원)의 약 79%에 달한다. "증세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한 이상 조세지출 규모가 큰 이들 항목부터 줄여야 세수부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셈이다.

조세지출이란 당초 거뒀어야 하는 세금을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통해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경우 법인세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기업 연구소의 직원 인건비, 연구용 물품비 등을 지원해주는 R&D비용 세액공제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현재 이는 기업이 2개 중 하나를 선

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해연도 관련 지출액×25%[중견기업 8~15%, 대기업 2~3%]’로 계산하는 당기분 방식과 (‘당해연도 지출액—직전연도 지출액’)×50%[대기업 40%]로 산출하는 증가분 방식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제도에선 대기업이 R&D투자액을 전년보다 5.3% 이상만 늘려도 증가분 방식을 선택해 ‘증가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5.3%’는 당기분 방식에서 증가분 방식으로 넘어가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셈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최근 3년간 대기업의 R&D 평균 증가율이 13.9%인 상황에서 기준점 ‘5.3%’는 너무 낮다. 이는 R&D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대기업 대부분은 증가분 방식을 택해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R&D투자를 더욱 크게 늘린 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에 맞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높이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기업의 공제율을 40%에서 30%로, 또는 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준점이 7~8% 또는 10% 정도로 높아져 전년 대비 해당 숫자만큼 투자를 늘리지 못한 기업은 증가분 방식을 선택해도 메리트가 없어진다.

앞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가분 방식의 계산식에서 기존 중소기업 50%, 대기업 40%이던 공제율을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10%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축소’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R&D 유효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공제율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이달 초 열린 ‘기업과세 및 투자지원 제도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도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던 것을 대기업만 1~2%로 낮추거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다소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몰은 기업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등을 막기 위해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파이낸셜뉴스, 2015-07-20)

메르스 추경, 세월호 실패를 되돌아보라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아!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내 처지가 더 나아졌을 텐데”라며 후회할 때가 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되풀이한다”는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경고는 국정 운영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는 내수 경기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했다. 조세수입도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 이를 방치할 경우 연말에 ‘지출 절벽’을 초래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확실시됐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세입 경정을 결단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분기 1.1%에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분기엔 0.5%로 푹 떨어졌다. 이후 경제팀이 교체되면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8%를 기록해 반등의 기미를 보였으나 4분기 세수 부족으로 재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해 성장률이 다시 0.3%로 급락했다.

다행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8%로 회복됐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겨우 살아난 내수 경제가 다시 위축됐다. 많은 경제전문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보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전국 2000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설문·면접 조사한 결과 50.4%가 “메르스가 지난해 세월호 사고보다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메르스 충격과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5%까지 인하했다. 경기 부양과 가계부채 안정화 사이에서 고민하던 한은이 예상보다 강력한 메르스 파장에 금리인하 카드를 뽑아 든 것이다.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춰 잡으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지켜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도 메르스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출한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13일부터 시작됐다. 추경은 전체적으로 메르스 및 가뭄 피해 지원액과 민생지원액 6조 2,000억원, 세입부족분 5조 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메르스와 가뭄 피해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0.3%p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급한 추경사업들이다. 또 세수 부족을 보완하지 않으면 지난해와 같은 연말 지출 절벽을 초래해 추경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추경은 위급한 경제 상황에서 단행하는 응급 처방으로 타이밍이 생명이다. 따라서 국회도 비상한 각오로 추경 심사에 임해야 한다. 추경 편성을 결정하고 추경사업을 선정하는 데 이미 시간을 소모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기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을 만큼 여유를 부릴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 더욱이 그리스 디폴트 사태와 중국 증시 폭락 등 세계경제 불안

감이 커진 상태다. 물론 일부 추경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해야 한다. 경기회복과 민생에 보다 효과적인 예산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여야가 서로 경쟁할 필요도 있다. 구조적인 세입부족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이는 정기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인 추경이 편성되면 일시적인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경제가 무너진다면 국가재정만 독야청청 그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경제가 살아야 국민소득도 늘고 세입이 확보돼 재정건전성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11조 8,000억원의 추경 규모는 상당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요구한 규모보다 작다. 관리대상 재정적자 규모를 국제사회의 마지노선인 GDP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규모를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재정이 지속 가능하도록 재정의 원칙과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재정지출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을 경우 재정지출을 늘릴 수 없도록 하는 ‘페이고(Pay-Go)’ 법률안이 통과되면 재정건전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정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경기에 대응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 둘은 상호 배타적이지 아니라 병행 가능한 것이다. 지금은 경기에 대응해 재정이 경제 살리기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힘을 보태줄 때다.

〈중앙일보, 2015-07-15〉

재정포럼

2015년 7월호 통권 제229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최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5년 7월 15일 발행 / 제19권 제7호(통권 제229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 414-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17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